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석을 통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연구

- 2023. 11.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임동완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석을 통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연구

2023. 11월

책임연구원 임동완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석을 통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임동완(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연구 원: 허형조(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현지우(단국대학교 박사과정)

보 조 원: 김정식(서울대학교 석사과정)

2023년 11월

임 동 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의안 비용추계 제도의 의의와 현황	5
제1절 의안 비용추계제도 개관	5
1. 비용추계의 의의	5
제2절 비용추계제도 실적 및 현황	9
 제3장 비용추계제도 정보 현황 및 한계	14
제1절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14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분석	14
제2절 의안 비용추계 정보의 한계	21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한계 분석	21
제3절 미국 의회예산처(CBO) 비용추계 제도	26
1. CBO	26
2. 비용추계분석 유형	34
3. 미국 CBO와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비교분석	55
 제4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안	60
제1절 의안 비용추계 체계화 방법론	60
1. 비용추계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검토	60
2. 비용추계 유형화 고려사항	65

제2절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검토	68
1. 정책수단을 고려한 비용추계서 유형화 검토	68
2. 유형별 추계/미첨부3호 현황 및 지원사업 세부 유형화 검토	71
3.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도출	73
제5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분석	77
제1절 토픽 유형별 비용추계 특성 분포 분석 결과	77
1. 의안 대상 특성 분포 분석 결과	77
2. 비용추계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결과	88
3. 미첨부3호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10
제2절 기존 분류 유형 및 토픽 분류 유형의 정합성 분석 결과	133
1. 전체 의안명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33
2.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36
3.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44
제6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152
제1절 토픽 유형을 통한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152
1. 정책수단별 정합성 분석 결과	152
2. 정부업무기능별 정합성 분석 결과	155
3. 토픽 유형을 통한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결과	158
제2절 유형별 의안 비용추계 방법론 적용 전략	161
제7장 요약 및 결론	163
제1절 주요 결과	163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164

표 목 차

[표 1] 법률안 제출 추이	9
[표 2] 비용추계서 첨부 추이	10
[표 3]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 대상법률안	11
[표 4]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 회답 실적	12
[표 5]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공식추계율	12
[표 6] 제20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16
[표 7] 법률안 제출추이	24
[표 8] 재정수반법안의 지출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	25
[표 9] CBO의 주요임무	27
[표 10]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 비교	59
[표 11] Political Goods	61
[표 12] 정책수단의 분류	64
[표 13] 정책수단과 비용추계서 유형 매칭(안)	69
[표 14] 유형별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요인 현황	72
[표 15] 비용추계 유형 분류와 LDA 토픽모델링	76
[표 16] 전체 의안명 특성 분포 분석 대상	78
[표 17] 위원회별 전체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82
[표 18] 전체 법안명 특성 분포 분석 대상	83
[표 19] 위원회별 전체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87
[표 20] 비용추계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88
[표 21]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91
[표 22]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92
[표 23]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94
[표 24]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96
[표 25]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98
[표 26]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99
[표 27] 비용추계 대상 법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100
[표 28]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103
[표 29]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106

[표 30]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109
[표 31] 미첨부3호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110
[표 32]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113
[표 33]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114
[표 34]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116
[표 35]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117
[표 36]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120
[표 37]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121
[표 38] 미첨부3호 대상 법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122
[표 39]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125
[표 40]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129
[표 41]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132
[표 42]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33
[표 43] 기능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35
[표 44]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37
[표 45]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39
[표 46] 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41
[표 47] 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43
[표 48]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45
[표 49]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47
[표 50] 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49
[표 51] 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51
[표 52]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대상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52
[표 53]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53
[표 54]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54
[표 55]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대상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55
[표 56]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56
[표 57]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157
[표 58] 비용추계 및 미첨부3호 대상 토픽 비교·분석 결과	159
[표 59] 토픽 유형을 통한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결과	160

그 림 목 차

[그림 1]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	8
[그림 2] 연도별 재정소요점검에 따른 수입, 지출 비용추이	13
[그림 3] 비용추계요구의 처리	15
[그림 4] 입법 절차 단계에서 CBO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지원 및 비용추계안	31
[그림 5] 비용추계 준비를 위한 CBO의 4단계 프로세스	33
[그림 6] 비용추계서 구성요소1	36
[그림 7] 비용추계서 구성요소2	38
[그림 8] 비용추계서 구성요소3	40
[그림 9] 비용추계서 구성요소4	41
[그림 10] 2023년 10월 20일 비용추계서 예시	43
[그림 11] 2023년 9월 14일 비용추계서 예시	45
[그림 12] 2023년 9월 26일 비용추계서 예시	47
[그림 13] 2023년 10월 16일 비용추계서 예시	49
[그림 14] 2023년 11월 3일 비용추계서 예시1	51
[그림 15] 2023년 11월 3일 비용추계서 예시2	53
[그림 16] 2023년 10월 30일 비용추계서 예시	54
[그림 17]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연간 접수 건수	57
[그림 18] 미국 CBO 비용추계 연간 접수 건수	58
[그림 19] LDA 토픽모델링 분석	75
[그림 20] 전체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80
[그림 21] 전체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80
[그림 22] 전체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85
[그림 23] 전체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85
[그림 24]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89
[그림 25]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90
[그림 26]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93
[그림 27]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LDA 토픽 시각화 결과	93
[그림 28]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96
[그림 29]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LDA 토픽 시각화 결과	97

[그림 30]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01
[그림 31]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02
[그림 32]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04
[그림 33]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05
[그림 34]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07
[그림 35]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08
[그림 36]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11
[그림 37]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12
[그림 38]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15
[그림 39]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15
[그림 40]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18
[그림 41]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19
[그림 42]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23
[그림 43]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24
[그림 44]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26
[그림 45]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27
[그림 46]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130
[그림 47]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LDA 토픽 시각화 결과	13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비용추계제도(Cost Estimates on the Bills)는 재정부담을 국가에 지우는 법안을 제·개정할 때 법안이 당해 초래할 재정소요를 사전에 추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임(임동완, 2009)
-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추계 관련 제도는 1973년에 이미 도입되어 국회법에 반영되었으나 제16대 국회까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되지 않았음
- 의원발의법안 중 소요비용을 추산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한 법안의 비율은 제13대 국회 4.3, 제14대 4.8, 제15대 1.6, 제16대 4.6로 매우 저조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졌음(임동완, 2009)
- 이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설되고 비용추계서 첨부이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첨부율은 증대됨
- 또한, 2021년 국회법 개정(2022년 시행)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비용추계제도의 구조적인 틀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의안 비용추계로 법률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안 등의 시행으로 초래되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의안 비용추계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입법을 유도하여 예산 뒷받침 없는 입법을 방지하고, 사전 소요비용을 추계함으로 법률과 연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존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박재용, 2017)

- 의안 비용추계는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가 완전하지 않고 비용추계 정보의 체계성이 높지 않아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및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
 -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 미완으로 미발의 의안을 포괄하는 비용추계 식별 및 현황 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비용추계 특성 및 결과 정보의 체계성 부족으로 비용추계 유형화, 통합적 관리 및 효율화 방안 모색이 어려움

- 이에 비용추계 효율화 및 분석 강화를 위해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필요
 - 제21대 및 제20대 국회 등에서 발의된 의안과 비용추계서 등(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연계
 - 비용추계 내용 검토를 통한 비용추계 유형 등 특성 정보 체계화 및 특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안과 비용추계서 등의 연계와 비용추계 특성 정보 입력을 바탕으로 비용추계 유형 등에 따른 비용추계 정보의 통계량 산출 및 분석
 - 분석 내용에 바탕을 둔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및 체계화 방안 도출

- 의안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유형론에 근거하여 정책목적, 산출, 수단 등에 따라 유형할 필요가 있으며, 각 유형 중 의안 실체 규정과의 정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의안 비용추계제는 사회 공공서비스 수요의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하며, 비용추계 분석에 있어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용추계 정보 현황을 분석한 뒤, 의안 실체 규정에 대하여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유형 분류를 진행한 후, 유형별 전략적 방법론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파악

□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검토

-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분석
 - － 비용추계 처리결과, 국회 소관위원회 정보,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등
- 의안 비용추계 정보의 한계
 - －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의 연계 측면
 -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의 내용 측면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안 검토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법론 제시
 - － 의안-비용추계 간 연계 방법론
 - －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및 특성 정보 구축 방법론
- 문헌 검토 등을 통한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도출
 - － 정책목적 및 산출, 정책수단 등 정책유형론에 근거한 비용추계 유형화
 - － 의안 실체규정 등에 근거한 비용추계 유형화

□ 해외의 의안 비용추계 조직 프로세스 및 유형화 사례 검토

- 미국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의안 비용추계 프로세스 제시
 - － 의안-비용추계 프로세스 검토
- 미국 CBO의 비용추계서 검토
 - － 실제 비용추계서 사례를 제시하여 추계서에 제시된 유형화 방안 도출
-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의 조직, 업무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시
 - －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의 CBO 조직 구성 비교
 - －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의 수행 업무 및 분류 유형 비교
 - － 비교·분석에 따른 미국 CBO 조직의 시사점 제시

- 의안 비용추계 특성 분석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마련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의 통계량 분석
 - － 비용추계 유형 및 처리결과 특성 등
 - 비용추계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제시
 -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활용을 통한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방안 도출

2. 연구의 방법

-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함
 - 문헌조사에서는 기존의 관련 논문 및 자료를 토대로 비용추계에 대한 현실의 제도적 사항을 살펴보고 비용추계 운영 현황을 조사함
 - 미국 CBO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함
 - 문헌검토를 통한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현장에서의 비용추계 정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용추계 특성 분석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제 2 장 의안 비용추계 제도의 의의와 현황

제 1 절 의안 비용추계제도 개관

1. 비용추계의 의의

1) 비용추계의 개념

- 법안 비용추계¹⁾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 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 감소액을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임
 -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 및 세출 및 「국가재정법」 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함
 -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의미함
- 법안 비용추계는 소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과 유사하지만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화폐적, 회계적 비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과 차이가 있음
 -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과 경제학적 기회비용도 분석 대상임
- 입법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입법영향 분석과도 유사하나 입법에 따른 재정적 측면의 영향력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입법영향분석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재정, 비재정적 측면의 영향을 포괄하여 분석함

1) 「국회법」 제79조의 2는 비용추계의 대상을 법률안 등 외에도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의안 비용추계’라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의안은 법안이 대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법안 비용추계’를 ‘의안 비용추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 법안 비용추계는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이상경, 2017),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의의가 있음
 -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법률안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안 등의 시행으로 초래되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적으로 파악함
 -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법안 비용추계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입법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입법을 방지하고, 사전에 소요비용을 추계함으로써 법률과의 연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박재용, 2017)

2) 비용추계의 대상

(1) 비용추계의 대상

-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대상으로,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
 - 「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규정함
- 이때, ‘비용’의 개념²⁾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임
 - 다만, ‘세입’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의 통과여부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의 ‘감소’뿐만 아니라 세입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공함
- 단, 단순 회계 간 자금이동 같이 특정 회계상으로는 순지출 증가를 초래하지만 재정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도 추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출로 인한 공공기관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2) 「의안과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상 조치와 무관한 경우는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됨
 - 재정상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과 재정상 조치와 무관한 선출안, 의원징계안, 윤리 및 자격심사안 등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안은 자체가 재정적 추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한편,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도록 「국회법」 제79조의2 제4항 등에 규정³⁾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함(이영환·신영임, 2009)
 -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함
 -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총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함
- 비용추계는 회계연도(Fiscal Year)를 단위로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당해 의안의 시행 및 최초 지출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하되⁴⁾,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이는 법안 비용추계의 목적이 법안이 매 회계연도 국가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 단,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의안과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윤주철, 2022).

4) 「국가재정법」 제87조 제1항, 「의안과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3) 비용추계 작성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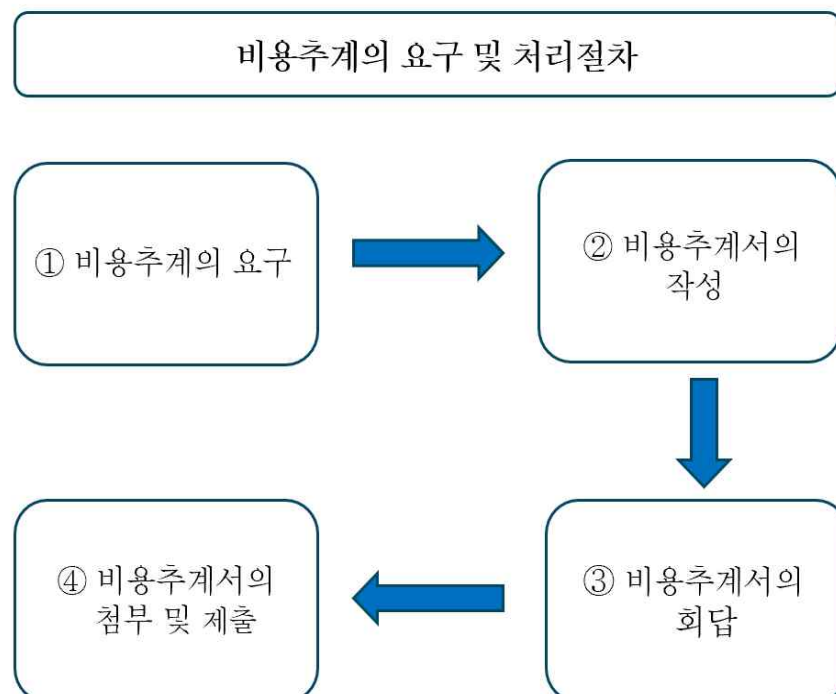
(1) 비용추계서 작성주체

-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의안, 위원회 제안의안(위원회안, 대안), 위원회 수정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함
 - 2014년 3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 수반법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단, 정부제출 의안의 경우 정부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함

(2)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

-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는 ①비용추계의 요구, ②비용추계서의 작성, ③비용추계서의 회답, ④비용추계서의 첨부 및 제출로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



- 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위원회의 의안 심사 시 활용됨
 - 이때, 위원회 제안 의안 및 위원회 수정안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제 2 절 비용추계제도 실적 및 현황

- 법률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은 17대 6,387건, 18대 12,220건, 19대 16,729건, 20대 23,047건, 21대 23,715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발의 법률안을 포함한 전체 법률안 중 의원 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대 85.3%, 18대 87.8%, 19대 93.9%, 20대 95.5%, 21대 96.9%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발현되며 국회 및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법률안 제출 추이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의원	6,387건 (85.3%)	12,220건 (87.8%)	16,729건 (93.9%)	23,047건 (95.5%)	23,715건 (96.9%)
정부	1,102건 (14.7%)	1,693건 (12.2%)	1,093건 (6.1%)	1,094건 (4.5%)	748건 (3.1%)

참고: 21대 법안은 2023년 10월 기준임

출처: 윤주철(2023)

- 비용추계서 첨부 건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는 건수는 17대 1,398건, 18대 3,906건, 19대 4,103건, 20대 4,475건, 21대 5,57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발의 법률안을 포함한 전체 법률안 중 의원 발의 법률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는 비중은 17대 21.9%, 18대 31.8%, 19대 24.9%, 20대 19.6%, 21대 30.6%로 나타나고 있음
- 자연스럽게 법률안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사용이 필수적인 법률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짐

[표 2] 비용추계서 첨부 추이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의원	1,398건 (85.1%)	3,906건 (88.2%)	4,103건 (92.6%)	4,475건 (94.7%)	5,574건 (97.3%)
정부	245건 (14.9%)	522건 (11.8%)	328건 (7.4%)	250건 (5.3%)	153건 (2.7%)

참고: 21대 법안은 2022년 12월 기준임

주: ‘비용추계서 첨부 추이’는 공식추계와 미첨부 사유서를 모두 더한 건수임.

재정수반 요인에 따라 공식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것을 의미함.

출처: 윤주철(2023)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 대상법률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결법률은 2017년 810건, 2018년 936건, 2019년 565건, 2020년 1,039건, 2021년 887건, 2022년 433건, 2023년 173건임(2023년은 2023년 1분기 기준)
- 재정수반법률은 2017년 228건, 2018년 225건, 2019년 182건, 2020년 302건, 2021년 283건, 2022년 154건, 2023년 60건임(2023년은 2023년 1분기 기준)
- 가결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8.1%, 2018년 24.0%, 2019년 32.2%, 2020년 29.1%, 2021년 31.9%, 2022년 26.2%, 2023년 34.7%임(2023년은 2023년 1분기 기준)

[표 3]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 대상법률안

가결 년도	법률							재정수반요인					
	가결법 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소계		지출		수입		소계		지출		수입	
		전체	추계	전체	추계	전체	추계	전체	추계	전체	추계	전체	추계
2017	810	228	112	208	94	22	18	436	213	338	129	98	84
2018	936	225	150	197	123	35	30	477	294	345	172	132	122
2019	565	182	101	159	85	31	16	506	205	336	132	170	73
2020	1039	302	163	258	138	62	27	796	335	511	195	287	142
2021	887	283	153	246	133	49	21	849	361	587	212	262	149
2022	433	154	110	118	88	38	22	399	221	228	123	171	98
2023	173	60	27	48	24	13	3	-	86	-	42	-	44

참고: 2023년 자료는 법안은 2023년 1분기 기준임

출처: 이정은(2023), 예산정책처(2023)

-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 회답실적현황에서 전체 회답건수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유형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첨부 사유서는 2017년 1,264건, 2018년 990건, 2019년 1,019건, 2020년 1,919건, 2021년 1,474건, 2022년 654건, 2023년 380건임

[표 4]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 회답 실적

연도	비용추계 접수 건수	비용추계 회답건수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2017	3,407	931	1,264	1,212
2018	3,179	929	990	1,260
2019	2,779	751	1,019	1,009
2020	4,645	926	1,919	1,800
2021	4,910	1,152	1,474	2,284
2022	4,009	1,335	654	2,020
2023	2,393	541	380	1,094

참고: 2023년 자료는 법안은 2023년 5월 기준임
출처: 예산정책처(2023)

-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공식추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42.4%, 2018년 48.4%, 2019년 42.4%, 2020년 32.5%, 2021년 43.9%, 2022년 67.1%, 2023년 58.8%임

[표 5]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공식추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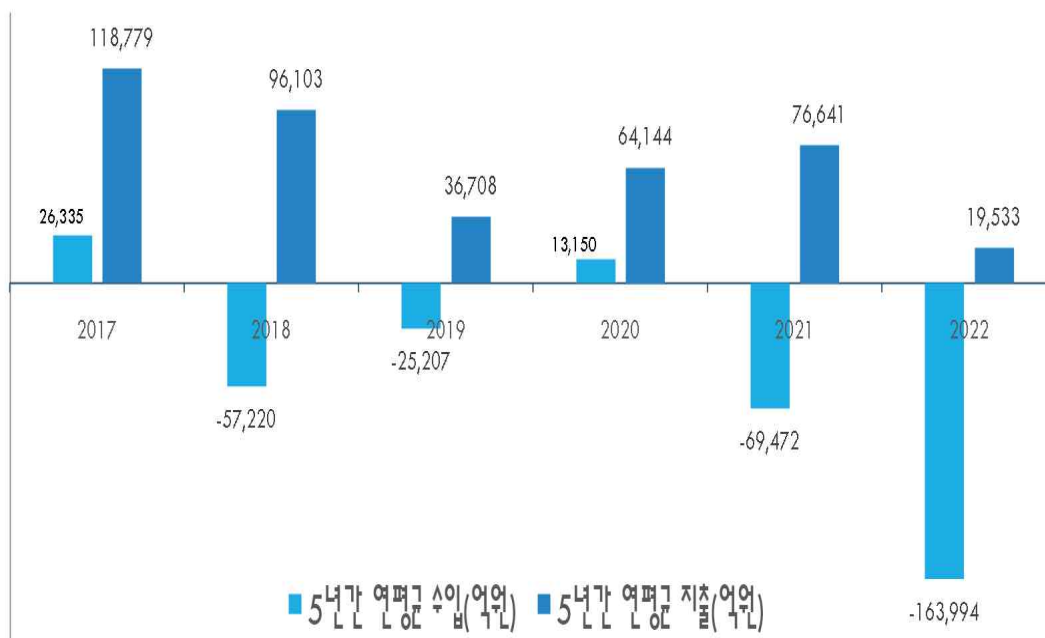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식 추계율	42.4%	48.4%	42.4%	32.5%	43.9%	67.1%	58.8%

참고: 2023년 자료는 법안은 2023년 5월 기준임
출처: 예산정책처(2023)

□ 재정소요점검에 따른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17년 수입은 26,335 억 원이었으나, 2018년 -57,220 억원, 2019년 -25,207 억원, 2020년 13,150 억 원, 2021년 -69,472 억원, 2022년 -163,994 억원, 2023년 - 21,906 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수입은 2017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음
 - 2023년은 5월말 기준 자료임
- 2017년 지출은 118,779 억원이었으나, 2018년 96,103 억원, 2019년 36,708 억 원, 2020년 64,144 억원, 2021년 76,641 억원, 2022년 19,533 억원, 2023년 695 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지출은 2017년에 비하여 줄어들었음
 - 2023년은 5월말 기준 자료임

[그림 2] 연도별 재정소요점검에 따른 수입, 지출 비용추이



주: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수입법률로 인한 재정감소 효과는 2022년 기준 연평균 12조 8,871억원으로 예상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3)

제 3 장 비용추계제도 정보 현황 및 한계

제 1 절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분석

1) 비용추계 처리결과 유형별 현황 분석

□ 비용추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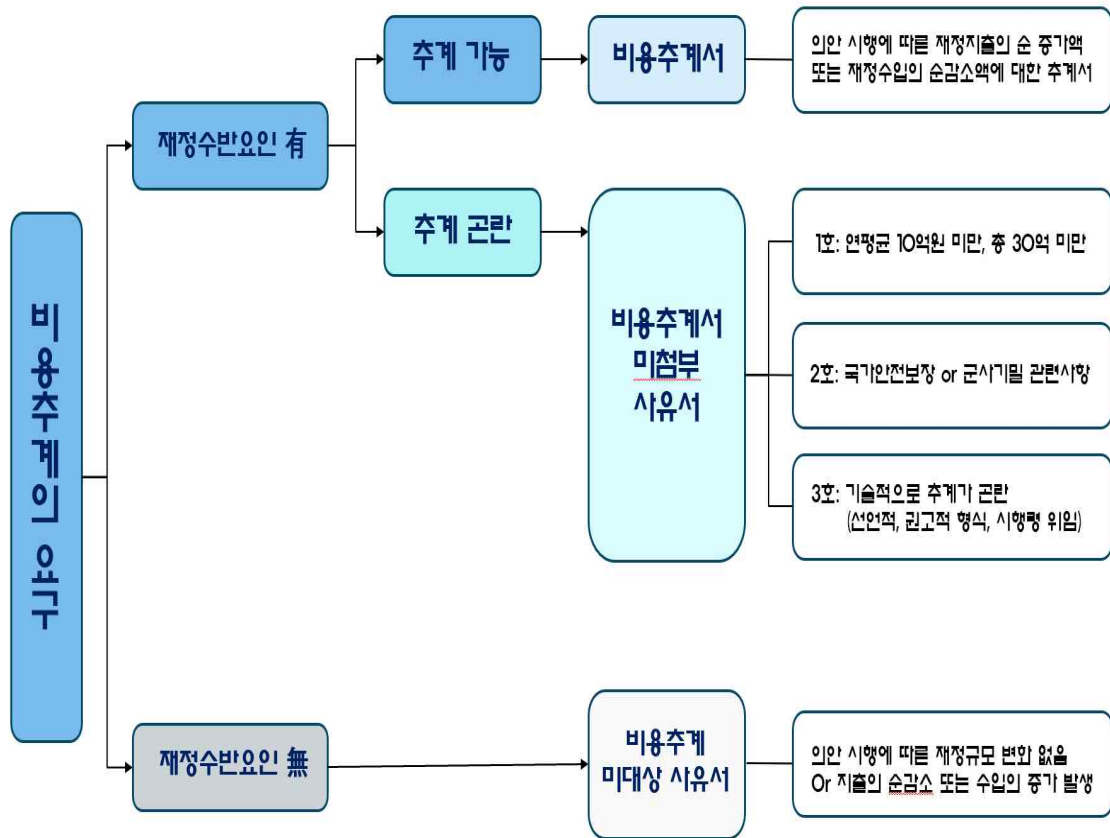
○ 비용추계유형은 3가지로 분류됨

- 첫 번째,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법안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증감액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가 제출됨
- 두 번째,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호 법안이 수반되는 비용이 적어 재정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호 법안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경우’, ‘3호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됨
- 세 번째, 미대상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안을 시행하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해당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증가하지만 해당 증가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 비용추계서의 미첨부사유 또는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 의안비용추계 정보에 대하여 비용추계 유형 별로 분석하고자 함

○ 비용추계의 요구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의 유, 무, 추계가능의 여부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분류됨.

○ [그림 3]은 이러한 분류를 그림으로 상세히 표시한 내용임

[그림 3] 비용추계요구의 처리



출처: 이정은(2023)

2) 국회 소관위원회 현황 파악

□ 국회 소관위원회 현황

-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각 17개로 구성됨
 - －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이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함
 - －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 소관 사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상임위의 유형은 소관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반기에 들어서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없어지며 위원회 수는 동일함

-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비용추계 의뢰서는 각각 소관에 의한 분류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음

[표 6] 제20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분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			
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7	윤리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	외교통일위원회			
9	국방위원회			
10	행정안전위원회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	보건복지위원회			
14	환경노동위원회			
15	국토교통위원회			
16	정보위원회			
17	여성가족위원회			

3)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조사 결과 파악

□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조사 현황

- 2023년 4월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시행하였음

(1) 의안 비용추계 제도 인지 및 의뢰경험

- 응답자 813명 중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93.4%(759명)로 국회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비용추계 의뢰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90.4%(686명)로 나타남
-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47.8%(363명)가 의안 비용추계 의뢰 경험이 연간 1~5회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간 의뢰 건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감소하였음

(2) 의안 발의 시 고려사항과 비용추계서 첨부

- 의안발의 시 고려사항은 정책적 필요성과 정치적 필요성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에 대한 영향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자 기준으로 의안발의 시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정책적 필요성(76.1%), 정치적 필요성(14.2%), 정책적 부작용(3.2%), 통과 가능성(2.7%), 정치적 반대(2.5%), 재정에 대한 영향(1.4%) 순서임
 -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는 정책적 필요성(46.1%), 정치적 필요성(24.7%), 정책적 부작용(17.8%), 통과 가능성(4.5%), 재정에 대한 영향(3.4%), 정치적 반대(3.4%) 순서임
 - 재정에 대한 영향은 2순위까지 고려하는 경우 1.4%에서 3.4%로 고려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나 여전히 의안발의 고려사항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편임
-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발의 시에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5)에 따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요구서 중 비용추계요구서 첨부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5)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79조의2제2항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 요구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률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은 64.7%(491명)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 선호 비율 29.8%(226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률 선호하는 이유로는 시간 단축(79.4%), 번거로운 비용추계서 첨부 절차(13.4%), 의안 통과율의 유리함(6.3%)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볼 때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로 인한 불편이나 번거로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로 인한 불편이나 번거로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216명)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 34.1%(259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5%(262명)임

(3) 의안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 경험

-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가 언급되거나 의안심사 결과에 중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경험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국회의원이 질의 또는 언급한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68.6%(521명)임.
 - 국회 근무경력 기간 전체에서 1~2회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257명)로 나타나며, 경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감소함
 - 비용추계 결과가 의안심사 결과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63.5%(482명)임
 - 국회 근무경력 기간 전체에서 1~2회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257명)로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경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감소함
- 비용추계 결과 의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의안발의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인 383명(50.5%)을 차지함

- 의안 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역시 과반인 463명(61.0%)으로 나타남
 - 추가재정소요가 큰 비용추계 결과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의안발의 단계 및 의안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4) 의안 비용추계 활용에 대한 인식

-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의안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71.7%(544명)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4%(26명)로, 의안 비용추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의안 비용추계의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41.6%(316명)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33.2%(252명)가 긍정적으로, 21.1%(160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활용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결과가 잘 활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에 대해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 등에 동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point scale)⁶⁾에 따른 평균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3.77),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3.76),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3.73), 비용추계 제공 정보 부족(3.36), 늦은 비용추계 회답(3.1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의안 비용추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3.42),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3.34), 비용추

6) 리커트 5점 척도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제시된 설문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 수치 간 순서(혹은 서열)가 의미가 있는 서열척도(ordinal scale)의 특성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측정 수치 간 간격이 같은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간주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는 편임’-‘보통’-‘동의하는 편임’-‘매우 동의함’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함

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3.30)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의안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른 평균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4.02),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3.95),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3.85), 비용추계 제공 정보 확대(3.77),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작성 인원 확대(3.71), 비용추계서 양식의 간소화(3.69), 더욱 적극적인 비용추계(3.6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 의안 비용추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3.92),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3.90), 비용추계의 제공 정보 확대(3.89), 자료 요구권 강화(3.83), 비용추계서 양식의 간소화(3.76), 더욱 적극적인 비용추계(3.71),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작성 인원 확대(3.66)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의안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국회법」 제79조의2 개정으로 의원발의 및 위원회제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을 전담하고 있음
- 비용추계 결과 의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원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의안심사 과정에서는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설문조사 결과, 의안 비용추계 결과가 잘 활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 등으로 나타났음

-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활용도를 제고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을 중심으로 비용추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 비용추계의 전문성 강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 등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의안발의 건수의 증가추세와 한정된 비용추계 업무 담당 인력을 고려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 업무의 효율적 개선과 비용추계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및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입법과정의 개선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제 2 절 의안 비용추계 정보의 한계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한계 분석

1) 의안 발의의 급격한 증가세

-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 의안정보시스템 활용에 있어 의안 발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비용추계 연간 접수 건수가 2015년 1,994건이었던 현황과 비교할 때 2016년 3,020건, 2017년 3,407건, 2018년 3,179건, 2019년 2,779건, 2020년 4,645건, 2021년 4,910건, 2022년 3,98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이처럼, 의안발의가 양적으로 큰 폭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용추계 분석에 한계점이 발생함
- 낮은 비용추계서 활용도 원인
 - ① 법안내용의 포괄성·추상성에 따른 공식 비용추계서 작성 곤란
 - ② 비용추계 작성에 부여된 시간의 부족에 따른 비용추계서 적시 제공 문제

- ③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비용추계서가 핵심적 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
- ④상임위에서 법안 내용 수정 시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존재
- ⑤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보다 행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법안 심사 관행

- 비용추계 관련 통계 자료 산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수반 요인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의안비용추계 특성 정보(유형별 분류)

- 재정수반법안은 추계접근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①법률안의 내용 및 성격, ②법률안을 통한 지출의 성격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
 -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는 ①보장, ②보상, ③조직, ④사업 등으로 분류됨
 - 첫 번째 보장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탈북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급부인 ①공적부조, 사회취약계층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급부인 ②사회복지서비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③사회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
 - 두 번째 보상 유형은 국가정책으로 재산 또는 재산 외의 손실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수용에 대한 보상(토지매수/이주정착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각종 직불제)인 ①손실보상,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인 ②공로보상, 국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거사 본인/유족 보상),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범죄피해자 구조, 의사상자 구조)인 ③위로보상 등이 이에 해당됨

- 세 번째 조직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사무기구가 있는 경우만), 소속(산하)기관, 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해당하는 ①조직설립⁷⁾, 조직운영을 위한 소규모 정상적인 기본사업에 해당하는 ②조직운영 등이 이에 해당됨
- 네 번째 사업 유형은 교육 및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환경과 관련된 사업인 ①사회,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산업 및 기술,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과 관련된 사업인 ②산업(기획재정, 금융 포함),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사업인 ③행정 등이 이에 해당됨

7) 특정사업을 위한 추진단, 센터, 협회, 재단, 전시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업법안으로 분류

[표 7] 법률안 제출추이

유형	세부유형	구분 기준
보장	공적부조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탈북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급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취약계층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급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상	손실보상	국가정책으로 재산 또는 재산외의 손실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수용에 대한 보상(토지매수/이주정착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각종 직불제)
	공로보상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
	위로보상	국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거사 본인/유족 보상),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범죄피해자 구조, 의사상자 구조)
조직	조직설립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사무기구 있는 경우만), 소속(산하)기관, 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 단, 특정사업을 위한 추진단, 센터, 협회, 재단, 전시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업법안으로 분류
	조직운영	조직운동을 위한 소규모 경상적인 기본사업
사업	사회	교육 및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환경과 관련된 사업
	산업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산업 및 기술,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과 관련된 사업 (기획재정, 금융 포함)
	행정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사업

□ 법률안을 통한 지출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

- 지출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는 ①의무지출, ②재량지출 등으로 분류됨
- 첫 번째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에 해당됨

- 두 번째 재량지출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3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이 해당됨

[표 8] 재정수반법안의 지출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

지출의 성격	구분 기준
의무지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재량지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3)

- 기존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분류에서는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 수요의 복잡도가 향상됨에 따라 적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의안 정보의 포괄적 내용으로 인하여 미첨부 사유가 증가하는 등 유형 분류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유형 분류가 필요한 시점임

3) 기존 의안비용추계 유형 분류의 문제점

- 낮은 비용추계서 활용도 원인
 -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 의안정보시스템 등록 비율이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매년 하락하였음
 - 상임위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가 언급되는 비율도 20대 국회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를 보였음
 - 다음의 사항들이 낮은 비용추계서 활용도의 이유로 제시됨
 - ①법안내용의 포괄성·추상성에 따른 공식 비용추계서 작성 곤란
 - ②비용추계 작성에 부여된 시간의 부족에 따른 비용추계서 적시 제공 문제
 - ③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비용추계서가 핵심적 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
 - ④상임위에서 법안 내용 수정 시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존재

- ⑤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보다 행정부 제공 정보에 의존한 법안심사 관행
 - 기존 분류 유형 중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비용추계 관련 통계 자료 산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수반 요인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비용추계업무 / 방법의 일관성 및 효율화 방안의 부재

- 비용추계서 유형의 체계성 부족
- 유형의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추계서의 분류 불가
 - － 같은 유형 추계서임에도 유사한 방법론이나 자료가 적용되고 있지 못함
 - － 유형분류에 있어 분석관의 주관 개입으로 내용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됨
 - － 불필요한 노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어 업무 수행의 비효율성 발생

제 3 절 미국 의회예산처(CBO) 비용추계 제도

1. CBO⁸⁾

- CBO는 1975년부터 예산 및 경제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의회 예산 프로세스를 지원해오고 있음
 - 매년 CBO의 경제학자와 예산 분석가들은 수십 개의 보고서와 수백 건의 입법안에 대한 비용 추정을 하고 있음
 - CBO는 하원 또는 상원의 전체 위원회에서 승인한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한 비용 견적을 작성하고 있음

8) Since 1975, CBO has produced independent analyses of budgetary and economic issues to support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Each year, the agency's economists and budget analysts produce dozens of reports and hundreds of cost estimates for proposed legislation. CBO is strictly nonpartisan; conducts objective, impartial analysis; and hires its employees solely on the basis of professional competence without regard to political affiliation. CBO does not make policy recommendations, and each report and cost estimate summarizes the methodology underlying the analysis. CBO's work follows processes specified in 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which established the agency) or developed by the agency in concert with the House and Senate Budget Committees and the Congressional leadership(CBO, 2023a).

- CBO는 위임명령이 주정부, 지방정부, 자치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추계하고 있음(1995년 자금지원 없는 위임명령개혁법(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 CBO는 비정당적,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소속에 관계없이 전문적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CBO는 정책 권고를 제공하지 않으며 각 보고서와 비용 추정은 분석을 기반을 요약하여 제공됨
 - 즉, 추계 비용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 규칙이나 목표를 시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CBO의 업무는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명시된 프로세스를 따르거나 CBO가 하원 및 상원 예산위원회 및 의회 지도부와 함께 협의하여 만든 절차를 따르고 있음
 - CBO의 주요 업무는 여덟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표 9]는 각각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 양원예산위원회 지원
 - 세출위원회 / 세입위원회/ 재정위원회 지원
 - 기타 위원회 및 의원 지원
 - 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파견
 - 연방지출삭감합동 위원회의 기능이관
 - 예산위원회에 대한 보고
 - 컴퓨터와 기타 기법의 사용
 - 연구

[표 9] CBO의 주요업무

업무	내용
양원예산위원회 지원	예산안 / 세출법안 / 새로운 예산권한이나 조세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정보

	수입 / 수입추계치 / 세입여건의 변경등에 관한 정보제공
	양원예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
세출위원회 / 세입위원회 / 재정위원회 지원	관련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
기타 위원회 및 의원 지원	다른 위원회 및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련정보 제공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민간부문 경우도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제공
	상, 하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파견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직원 파견
연방지출삭감합동 위원회의 기능이관	임무/기능/직원은 CBO로 이관되고 합동위원회는 폐지
예산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새 회계연도의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매년 2월15일까지)
	상, 하원 세출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시 자료 제출
	회계연도 중에 법규화 되지 못한 세출권한에 의한 사업과 새 회계연도에서 세출권한이 법규화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
컴퓨터와 기타 기법의 사용	최신 컴퓨터 시설 설치, 컴퓨터 공학 전문가 지원 요청, 예산소 요액 평가를 위한 기법을 개발
연구	지속적인 연구와 연방위임명령에 대한 연구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2)

□ CBO는 아홉 개의 실(Division)로 구분⁹⁾되어 있고, 예산분석실(Budget Analysis

9) CBO Organization and Staffing(CBO, 2023b)

- 1) the Budget Analysis Division
- 2) the Financial Analysis Division
- 3) the Health Analysis Division
- 4) Labor, Income Security,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
- 5) Management, Business, and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 6) 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
- 7) Microeconomic Studies Division

Division)이 비용추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연방 지출의 기본 예측을 생성하고, 의회 위원회에서 승인한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제시하고, 위원회가 어떤 법안을 진행할지 고려하는 동안 수천 건의 기술 지원 요청을 이행하고 있음
- 비용 추계치에는 연방 예산에 대한 입법의 영향뿐만 아니라 주, 지방 및 부족 정부와 민간 부문에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음
- 예산분석실은 CBO의 많은 분석 보고서(대통령 예산의 연간 분석, 월간 예산 검토 등)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예산분석팀은 비용추계업무의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9개의 하부부서로 나누어져 담당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1) Defense, International Affairs, and Veterans' Affairs Cost Estimates Unit
- 2) Finance, Housing, and Education Cost Estimates Unit
- 3) Health Systems and Medicare Cost Estimates Unit
- 4) Income Security Cost Estimates Unit
- 5) Low-Income Health Programs and Prescription Drugs Cost Estimates Unit
- 6) Natural and Physical Resources Cost Estimates Unit
- 7) Projections Unit
- 8) Public and Private Mandates Unit
- 9) Scorekeeping Unit

□ 하단의 자료와 내용은 2023년 4월 미국 CBO에서 작성한 “CBO Describes its cost-estimating process”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여 CBO의 비용추계 프로세스를 정리한 내용임

□ CBO의 비용 추계치는 의회 의원이 법안에 대한 투표 방법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의회가 연방 예산에 영향을 미칠 법안을 고려할 때 규칙과 절차를 시

8) National Security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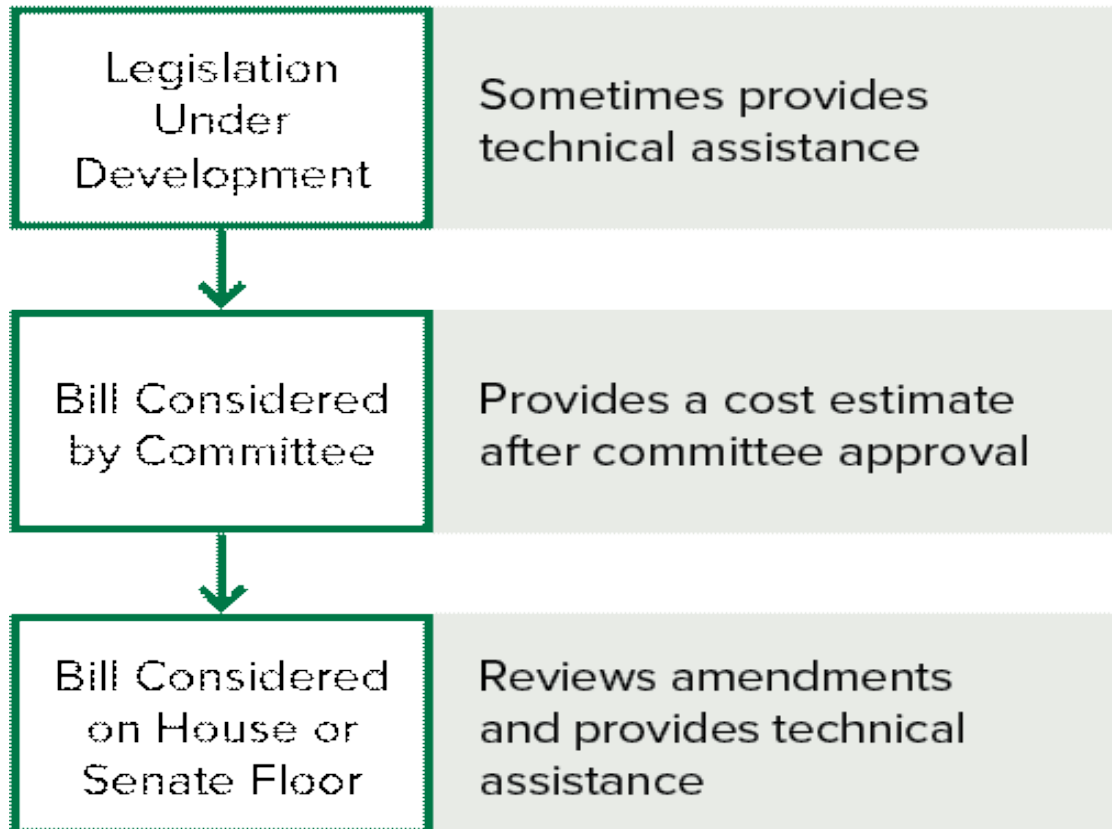
9) Tax Analysis Division

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CBO의 비용 추계치는 권고 사항에 불과함. 예산 규칙이나 목표를 시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CBO는 예산 규칙을 시행하지 않음
-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CBO는 비용추계나 기타 사안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지 않음
- 비용추계가 제공하는 정보
 - CBO의 추계치는 현행법(즉, 제안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과 비교하여 입법 제안이 연방 지출 및 수입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고 설명함. 특히, 비용추계치는 법률이 예산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함
 - (1) 연간 세출 법에 의해 통제되는 재량 지출
 - (2) 의무 (또는 직접) 지출은 법정 기준에 의해 규율되며 일반적으로 연간 세출 과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 (3) 재무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수한 세금, 수수료 및 벌금을 포함한 수입
 - 이때, 오랜 관례에 따라 비용 추정치에는 연방 부채 상환 비용에 대한 법안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음
 - 재량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법안(후속 입법에서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법안)의 경우 비용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예산법에 명시된 대로 5년 동안의 예산 정보를 제공함
 - 다른 법률의 조항은 의무 지출 또는 수입에 영향을 미칠 법안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됨
 - 예산위원회와 법률의 지시에 따라 추계치는 법안 제정이 장기적인 예산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에 더해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 또는 민간 부문 단체에 명령을 부과할지 여부를 식별함. 의회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양한 예산 질서를 시행할 수 있음
- CBO의 비용추계 산출 시기
 -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안서의 복잡성, 데이터 가용성 및 의회 우선 순위에 따라 상이해 짐

- 추계서가 CBO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 기관의 공식 분석으로 간주됨
- 하단의 그림에서 CBO가 입법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술지원과 비용추계의 현황을 볼 수 있음

[그림 4] 입법 절차 단계에서 **CBO**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지원 및 비용추계안



출처: CBO(202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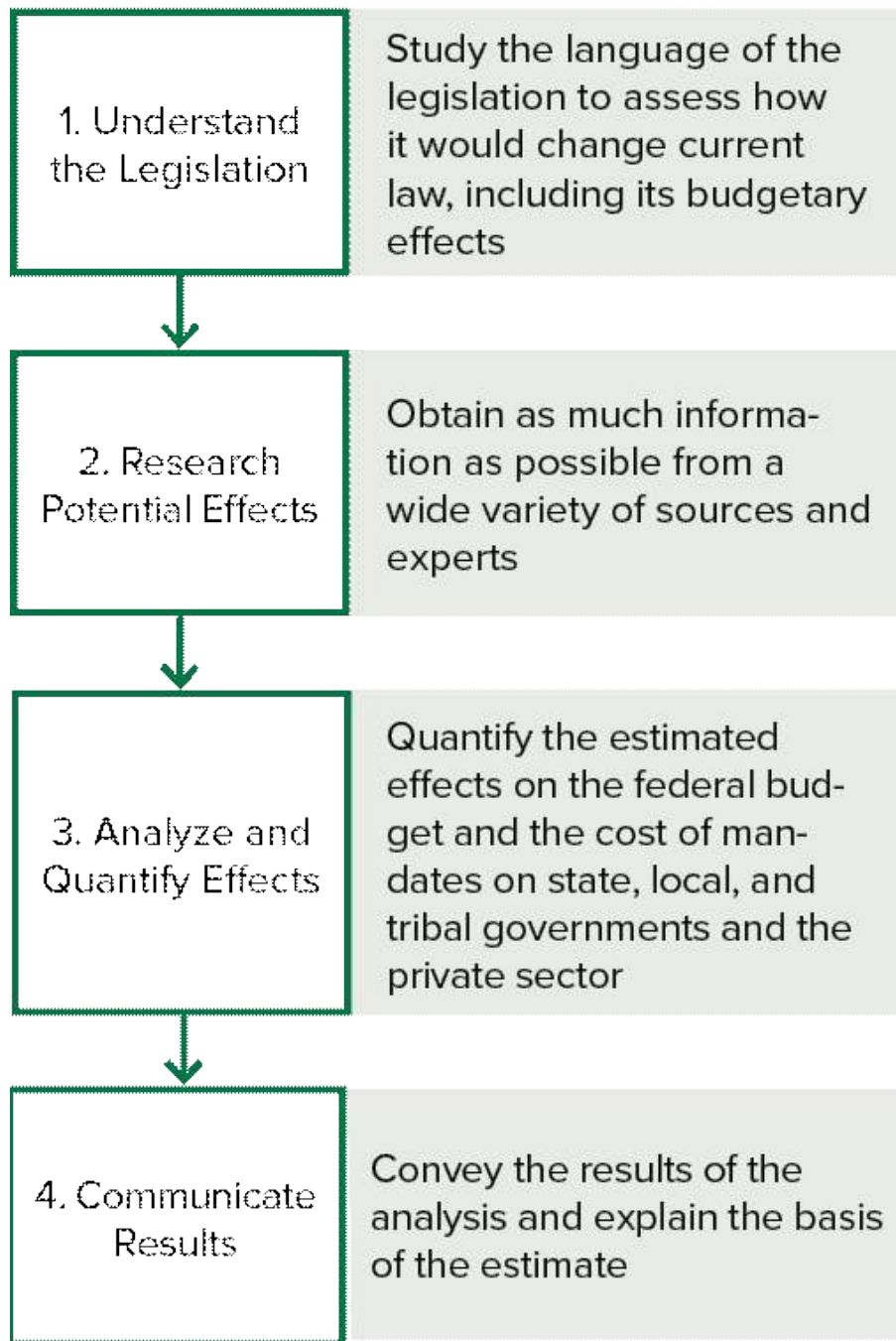
- 예산법은 CBO가 위원회, 특히 하원 및 상원 예산 위원회에 우선권이 부여됨
-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은 CBO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에 대한 추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설계됨
- 개별 의회 의원 또한, CBO에 법안의 가능한 예산 효과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CBO의 분석관은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직접 지출에 대한 법안의 영향에 대한 예비적 피드백을 해당 의원에 제공
- 분석관이 이러한 개별 의원의 요청에 대해 즉시 작업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비용추계 지원 여부와 시기에 대해 제공하게 됨

□ CBO의 비용 추계치 개발방안

- 비용추계를 작성할 때 CBO는 적자관리법 제257조와 1997년 균형예산법 회의 보고서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채택된 일련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음
- 그들의 목적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그리고 시간에 걸쳐 지출 권한과 지출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임
- 또한, UMRA 제424조는 보고된 법안에 대한 모든 비용추계에 정부 간 및 민간부문의 의무에 관한 성명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성명서는 지난 20년간 발전해 온 일련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 CBO의 분석관은 일반적으로 각 비용 추정치를 준비할 때 네 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음
 - － (1) 법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함
 - － (2) 법안 제정의 잠재적 효과를 조사함
 - － (3) 이러한 효과를 분석하고 정량화함
 - － (4) 결과를 전달함

[그림 5] 비용추계 준비를 위한 CBO의 4단계 프로세스



출처: CBO(2023a)

2. 비용추계분석 유형

- CBO는 의회의 법안유형이나 지출유형에 따라 비용추계를 유형화하고 있음
 - 비추계기 또는 추계 방식의 차이가 아닌 통제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있음
- 즉, CBO는 비용부담 주체, 비용추계 대상법안과 그에 따른 지출 성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
 - 비용부담 주체에 따라
 - － 1) 연방정부 부담
 - － 2) 지방정부 부담
 - － 3) 민감부담 비용추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상법안과 그에 따른 지출 성격에 따라
 - － 1) 정규비용추계¹⁰⁾
 - － 2) 수입지출균형추계¹¹⁾

10) 정규비용추계는정규비용추계는 연례적인 12개의 재량지출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미하며, Budget Analysis Division의 Scorekeeping Unit에서 추계하고 있음. 대부분의 세출승인은 한도액이 표시되며 예산권한은 한 회계연도별로 정해진다. 따라서 재량지출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세출 승인법안에서 정해진 예산권한에 대한 지출액을 추계함. CBO와 세출위원회는 지출율(outlay rate or spendout rate: 각각의 연도에 지출되는 예산권한의 비율)에 기초하여 추계한다. 지출율은 계 정별로 다르며 과거 기록에 기초하고 있음.

11) 수입지출균형추계는 수입지출균형추계는 「균형재정 및 긴급적자통제법(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및 「예산집행법(the Budget Enforcement Act)」에 따라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의 변동을 추계(수입이 상계된 지출규모)하는 것으로서 의무지출에 대한 추계 시 활용되는 방식임. 수입지출균형요건(Pay-as-you-go)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출승인법안과 달리 수입 및 지출의 변화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Pay-as-you-go의 영향에 따른 순증가 또는 순감소를 명시하게됨. Pay-as-you-go 요건을 따르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특별한 상원 규칙하에서는 10년) 수입의 증감을 추계하며, 납세자의 행태, 경제상황, 기타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게 됨.

□ 비용추계서 구성

- 비용추계서는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같이 각 페이지별로 유형화된 양식을 갖고 있음
- 첫 번째 페이지인 “At a Glance” 파트는 전체 비용추계의 내용을 주요 요소만 정리하여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음([그림 6] 참고)
 - － 연방 예산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법안의 영향에 대한 CBO의 추정치를 간략하게 요약함
- 주요 구성요소는 General Information, Budgetary Information, Procedural Information, Highlights의 네 가지로 구성됨
 - － General Information은 법안 번호, 제목, 입법 상태와 같은 일반 정보와 예산 및 절차 정보가 포함됨
 - － Budgetary Information은 직접 지출, 세입, 적자, 세출 대상 지출 등이 포함됨
 - － Procedural Information은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유형화함
 - 2010년 PAYGO(Pratial PayAs-You-Go)법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
 - 법안의 장기적인 예산 적자의 증가여부
 - 법안에 UMRA(Unfunded Commands Reform Act)에 정의된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 － Highlights는 핵심 포인트, 법안이 연방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강조함
- 그 외에, The Bill Summary 단계에서는 법안의 주요 조항을 나열하고, 현행법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며, 비용 추계치의 다양한 요소와 결과를 요약함

[그림 6] 비용추계서 구성요소 1

At a Glance

The first page summarizes CBO's estimate of the bill's effects on major components of the federal budget.

Budgetary Information.

Components of the federal budget (explained more fully on the next page) include direct spending, revenues, the deficit, and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Totals for the bill's estimated effects on each component are provided for the current year and subsequent years in the budget window.

General Information. The bill number, title, and legislative status are shown. Most estimates are for bills that have been ordered reported by a full committee. The same bill number may appear on different estimates when a bill is considered by more than one committee or when CBO provides an estimate for legislation that has been passed by one chamber and is awaiting action in the other. The date in the upper right corner shows when CBO published the estimat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ost Estimate

September 18, 2019

At a Glance

H.R. 2328, Reauthorizing and Extending America's Community Health Act As ordered reported by the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on July 17, 2019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19	2019-2024	2019-2029
Direct Spending (Outlays)	0	40,394	41,027
Revenues	0	6,631	20,938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0	33,764	20,090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Outlays)	0	67	not estimated

Statutory pay-as-you-go procedures apply?	Yes	Mandate Effects
Increases on-budget deficits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0?	No	Contains intergovernmental mandate? Yes, Over Threshold
		Contains private-sector mandate? Yes, Over Threshold

The bill would

- Extend funding for public health programs including those that support health centers and health education
- Extend funding for several programs financed through the Medicare trust funds, change some other aspects of Medicare, and change supplemental coverage for some military retirees
- Reduce scheduled funding cuts to state allotments to hospitals that treat a disproportionate share of uninsured and Medicaid patients
- Protect patients from surprise medical billing and reduce payments to some health care providers working in facilities where surprise bills are likely
- Increase funding for Medicaid in the U.S. territories
- Impose intergovernmental and private-sector mandates by prohibiting surprise medical billing

Estimated budgetary effects would primarily stem from

- Increased funding for public health programs
- Changes to Medicare coverage and payment rules
- Increased Medicaid spending on payments to hospitals and to the U.S. territories
- Reduced federal subsidies for health care and health insurance

Areas of significant uncertainty include

- Estimating coverage choices for military retirees and trends in prostate cancer testing and treatment
- Accurately projecting how states would respond to scheduled reductions in funding for hospital payments
- Accurately anticipating the nature and effects of provider and insurer responses to the bill's provisions that address surprise bills
- Estimating what the U.S. territories would spend on Medicaid

Detailed estimate begins on the next page.

See also CBO's *Cost Estimates Explained*, www.cbo.gov/publication/54437;
How CBO Prepares Cost Estimates, www.cbo.gov/publication/53519; and Glossary, www.cbo.gov/publication/42904.

Procedural Information.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nswered:

- Do procedures specified under the Statutory Pay-As-You-Go (PAYGO) Act of 2010 apply?
- Will the bill increase long-term on-budget deficits?
- Does the bill contain any mandates as defined in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UMRA)?

Highlights. Key points are noted, including the ways that the bill would affect the federal budget and any uncertainties that might result in outcomes that are higher or lower than CBO's estimates.

-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추계된 연방비용(Estimated Federal Cost)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그림 7] 참고)
- 법안의 예산 효과에 대한 CBO의 추정치를 설명하며 직접 및 재량 지출, 수입 및 연방 적자에 대한 변경 사항을 나열하는 표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 연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추계한 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있음
- 새로운 법안일 경우에는 전체 변화분만을 추계하면 되나,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행 법률하에서의 소요액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합하여 전체 소요액을 추계하고 있음
 - ① 현행 법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정책상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추계함 (기준선)
 - ② 제 · 개정안에 따른 지출액
 - ③ 새 법안에 따른 총 지출액(기준선 + 변화분)의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그림 7] 비용추계서 구성요소 2

Direct Spending.

CBO's estimates are shown for increases or decreases in budget authority (authority for agencies to incur financial obligations) and outlays that would occur if the legislation was enacted. The benchmark is CBO's 10-year baseline, which generally reflects current law. Positive numbers represent costs; negative numbers indicate savings.

Estimated Federal Cost

This section notes which of the 20 broad budget functions (such as national defense, agriculture, health, and income security) would be affected by the bill. A table summarizes the bill's estimated effects on major components of the federal budget.

Estimated Federal Cost

The estimated budgetary effect of H.R. 2328 is shown in Table 1. The costs of the legislation fall within budget functions 500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550 (health), and 570 (Medicare).

Table 1.
Estimated Budgetary Effects of H.R. 2328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19-2024	2019-2029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Increases or Decreases (-) in Direct Spending														
Title I, Public Health Extenders														
Budget Authority	0	4,887	4,887	4,887	4,887	0	0	0	0	0	0	19,546	19,546	
Estimated Outlays	0	1,892	3,887	4,833	4,868	2,981	985	40	0	0	0	18,461	19,491	
Title II, Medicare Extenders														
Estimated Budget Authority	0	1,005	1,402	1,476	240	-6	-14	-7	9	11	-21	4,117	4,137	
Estimated Outlays	0	1,004	1,402	1,476	241	-6	-14	-7	9	11	-21	4,117	4,137	
Title III, Medicaid Provisions														
Estimated Budget Authority	0	1,385	3,201	1,790	0	0	0	0	0	0	0	6,375	6,375	
Estimated Outlays	0	1,385	3,201	1,790	0	0	0	0	0	0	0	6,375	6,375	
Title IV, No Surprises Act														
Estimated Budget Authority	0	1	-45	-91	-103	-106	-114	-122	-126	-131	-137	-345	-976	
Estimated Outlays	0	1	-45	-91	-103	-106	-114	-122	-126	-131	-137	-345	-976	
Title V, Territories Health Care Improvement Act														
Estimated Budget Authority	0	2,759	2,829	2,896	2,961	321	214	0	0	0	0	11,786	12,000	
Estimated Outlays	0	2,759	2,829	2,896	2,961	321	214	0	0	0	0	11,786	12,000	
Total Changes in Direct Spending														
Estimated Budget Authority	0	10,036	12,273	10,958	8,004	209	86	-129	-117	-120	-116	41,480	41,082	
Estimated Outlays	0	7,040	11,274	10,904	7,966	3,190	1,071	-89	-112	-120	-116	40,364	41,027	
Increases or Decreases (-) in Revenues														
Title IV, No Surprises Act														
Estimated Change in Revenues	0	-2	849	1,675	1,972	2,137	2,300	2,651	2,903	3,110	3,342	6,631	20,938	
On-budget revenues	0	-1	803	1,189	1,399	1,521	1,639	1,942	2,146	2,303	2,477	4,711	15,218	
Off-budget revenues	0	-1	246	486	572	616	661	709	757	807	865	1,920	5,719	
Net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from Changes in Direct Spending and Revenues														
Total Effect on the Deficit	0	7,042	10,425	9,230	6,915	1,052	-1,230	-2,741	-3,015	-3,230	-3,459	33,764	20,090	
On-budget deficits	0	7,042	10,671	9,716	6,587	1,668	-699	-2,031	-2,258	-2,423	-2,594	35,683	25,809	
Off-budget deficits	0	1	-246	-486	-572	-616	-681	-709	-757	-807	-865	-1,920	-5,719	
Increases in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Estimated Authorization	0	58	8	2	1	1	n.e.	n.e.	n.e.	n.e.	n.e.	70	n.e.	
Estimated Outlays	0	14	28	20	4	1	n.e.	n.e.	n.e.	n.e.	n.e.	67	n.e.	

For section-by-section estimates, see Supplemental Table 1.

Components may not sum to totals because of rounding. n.e. = not estimated.

Totals. The totals are for estimated budgetary effects over periods that are relevant for Congressional budget enforcement procedures. Estimates of changes in direct spending and revenues generally cover the current year and the subsequent 10 years; estimates of changes in authorized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often cover only the subsequent 5 years, as specified in 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The estimates reflect potential changes in discretionary spending that would result if the legislation was enacted and if future appropriations were provided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on's provisions. The benchmark is based on current authorization law (under which many programs are not authorized beyond the current year) and thus differs from CBO's 10-year baseline.

The Deficit.

The estimated effects on deficits reflect the net total of estimated changes to direct spending and revenues. Positive numbers represent deficit increases; negative numbers indicate deficit reductions.

출처: CBO(2023a)

- 세 번째 페이지인 The Basis of Estimate 단계에서는 법안의 내용 중 연방정부 재정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요인 및 추계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음([그림 8] 참고)
 - The Basis of Estimate
 - ① 분석에 사용된 전제들
 - ② 추계표의 각 비용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 ③ 추계치와 관련된 불확실성 가운데 유의미한 것들
 - ④ 분석관이 계량화할 수 없었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예산효과에 대해 설명함
- PAYGO 법(Pay-As-You-Go Considerations)은 직접 지출 또는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 예산 보고 및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PAYGO 법은 의무 예산 기관에서 전면적인 삭감(또는 격리)을 유발할 수 있음
 - PAYGO 법은 직접 지출 및 세입의 특정 변화를 예산 집행 절차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 섹션에 표시된 금액은 요약 표에 제시된 적자의 순 변화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A Increase in Long-Term Net Direct Spending and Deficits 섹션에서는 의회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기적인 영향(예산연도와 이후 4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간을 추계)을 식별하고 있음

[그림 8] 비용추계서 구성요소 3

Basis of Estimate

This section describes CBO's assumption about the timing of the bill's enactment and provides the following details about the basis of the agency's estimates:

- Provisions that would have budgetary effects,
- Sources of data and information that CBO considered,
- The reasoning and analytical methods that the agency used to develop its estimates, and
- Significant sources of uncertainty surrounding the estimates.

The section typically mirrors the organization of the table summarizing the estimated budgetary effects (shown on the previous page) and includes subsections on direct spending, revenues,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and uncertainty. For complicated legislation, additional tables may provide more details on the estimated effects of particular provisions.

Pay-As-You-Go Considerations

The PAYGO Act established budget-reporting and enforcement procedures for legislation that affects direct spending or revenues. That act can trigger across-the-board cuts (or sequestration) in mandatory budget authority. Because the act excludes certain changes in direct spending and revenues from budget enforcement procedures, the amounts shown in this section can differ from the estimated net changes in deficits presented in the summary table.

Basis of Estimate

For this estimate, CBO assumes that the bill will be enacted near the end of 2019 and that the specified and estimated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will be provided each year. Outlay estimates are based mainly on historical spending patterns for affected programs.

Direct Spending and Revenues

CBO and the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 estimate that enacting H.R. 2328 would increase direct spending by about \$41.0 billion and increase revenues by \$20.9 billion over the 2019-2029 period, for a net increase in the deficit of \$20.1 billion.

Title I, Public Health Extenders. Title I would extend funding for several federal health care programs. CBO estimates that over the 2019-2029 period, title I would increase direct spending by \$19.5 billion.

Section 101, Extension for Community Health Centers, the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and Teaching Health Centers That Operate Graduate Medical Education Programs. For each fiscal year from 2020 through 2023, section 101 would appropriate \$4.0 billion for community health centers, \$310 million for the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and \$126.5 million for Teaching Health Centers that operate graduate medical education programs. CBO estimates that enacting section 101 would increase direct spending by \$17.7 billion over the 2019-2029 period.

Pay-As-You-Go Considerations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establishes budget-reporting and enforcement procedures for legislation affecting on-budget direct spending or revenues. The net changes in outlays and revenues that are subject to those pay-as-you-go procedures are shown in Table 3.

Table 3.
CBO's Estimate of Pay-As-You-Go Effects of H.R. 2328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19- 2024	2011- 2022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Net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On-Budget Deficit													
Statutory Pay-As-You-Go Effect	0	7,042	10,671	9,716	6,587	1,668	-569	-2,031	-2,258	-2,423	-2,594	35,683	25,806	
Memorandum:														
Changes in Outlays	0	7,040	11,274	10,904	7,986	3,190	1,071	-89	-112	-120	-116	40,394	41,022	
Changes in Revenues	0	-1	603	1,189	1,399	1,521	1,639	1,942	2,146	2,303	2,477	4,711	15,212	

Increase in Long-Term Deficits

CBO estimates that enacting H.R. 2328 would not increase on-budget deficits by more than \$5 billion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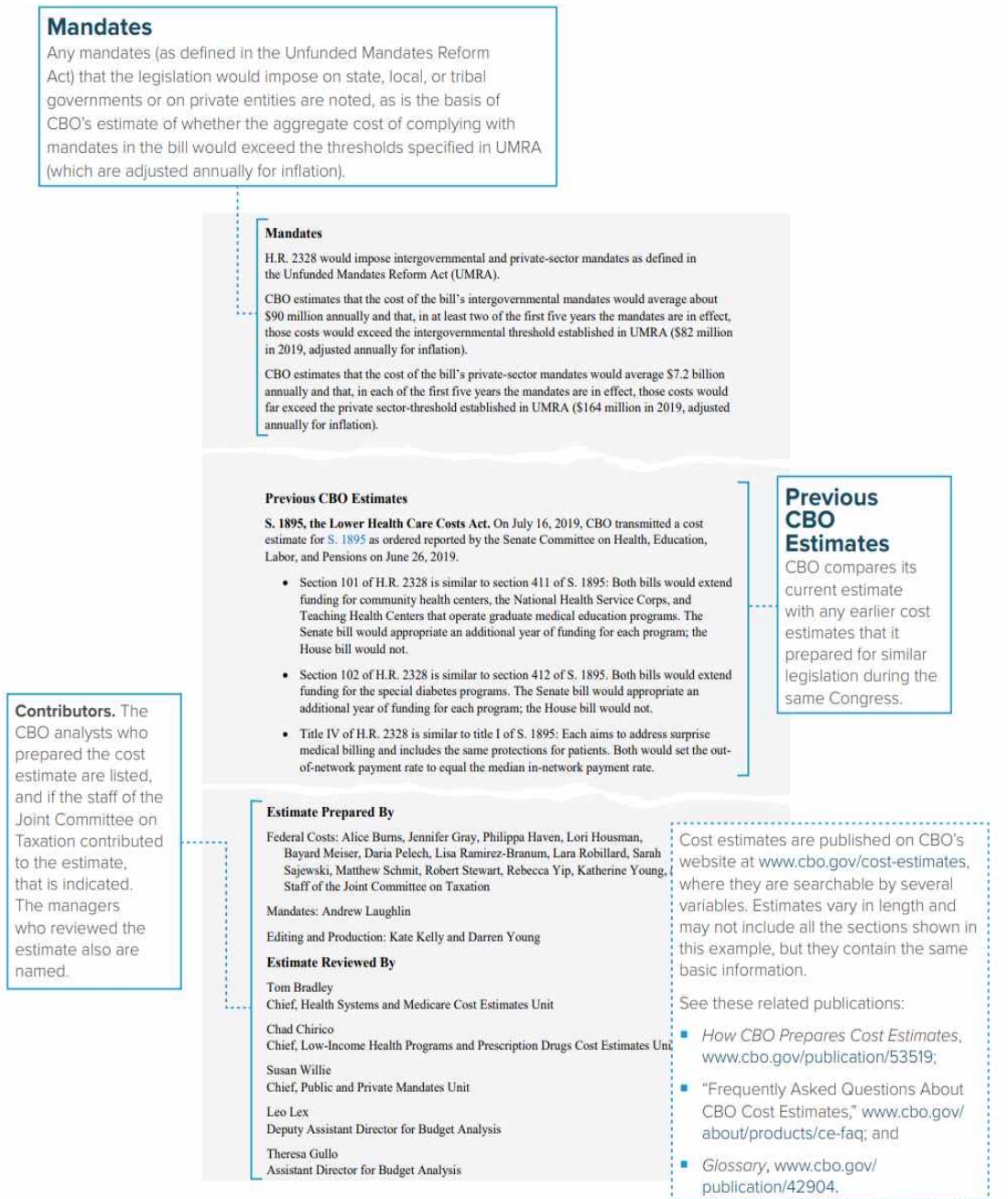
Increase in Long-Term Deficits

To help the House and Senate Budget Committees determine whether certain budgetary procedures apply to the legislation, this section states whether the bill is estimated to increase on-budget deficits in any of the four decades after the period covered by the cost estimate that exceed a specified threshold.

출처: CBO(2023a)

- 네 번째 페이지 Mandates 단계에서는 1995년 UMRA(Unfunded Commands Reform Act of 1995)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주, 지방, 부족 정부 또는 민간 부문에 대한 의무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식별하고 있음([그림 9] 참고)

[그림 9] 비용추계서 구성요소 4



출처: CBO(2023a)

□ 비용추계서 예시

- [그림 10] ~ [그림 16]은 2023년 9월, 10월, 11월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위의 비용추계서 구성에서 설명된 대로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 의회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접 순 지출의 측면과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일반적으로 제정 후 11년째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4개의 10년 기간 중 하나에 해당)을 미치는가의 여부,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여부, 민간 부문에의 영향 여부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그림 10]은 2023년 10월 20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화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는 시행되지 않았음
 -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 또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 지방, 자치정부에의 영향력도 드러나지 않았음
 -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S. 608, Deerfield River Wild and Scenic River Study Act of 2023			
As order reported by the 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on September 21, 2023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24	2024-2028	2024-2033
Direct Spending (Outlays)	0	0	0
Revenues	0	0	0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0	0	0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Outlays)	*	*	not estimated
Increases net direct spending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No	Statutory pay-as-you-go procedures apply? No	
		Mandate Effects	
Increases on-budget deficits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No	Contains intergovernmental mandate?	No
		Contains private-sector mandate?	No
* = between zero and \$500,000.			

S. 608 would direct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to study the Deerfield River in Massachusetts and Vermont for potential addition to the 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The study would encompass the entire river, including its major tributaries and the North, South, East, and West Branches. Under the bill, DOI would be required to complete the study and report to the Congress on its findings within three years of enactment.

Based on the costs of similar studies, CBO estimates that implementing the bill would cost less than \$500,000 over the 2024-2028 period; any spending would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d funds.

The CBO staff contact for this estimate is Kelly Durand. The estimate was reviewed by H. Samuel Papenfuss, Deputy Director of Budget Analysis.



Phillip L. Swagel
Director,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ee also
[CBO's Cost Estimates Explained](#), [CBO Describes Its Cost-Estimating Process](#), [Glossary](#)

- [그림 11]은 2023년 9월 14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음
 -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 25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④ 지방, 자치정부에의 영향력이 발생하며 다만, 임계치 내에서의 영향력이
발생하였음
 -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도 발생하며 동일하게 임계치 내에서의 영향력이
발생하였음

At a Glance

S. 1199, STOP CSAM Act of 2023

As reported by the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n May 15, 2023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23	2023-2028	2023-2033
Direct Spending (Outlays)	0	*	*
Revenues	0	*	*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0	*	*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Outlays)	0	327	not estimated

Increases *net direct spending*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 \$2.5 billion

Increases *on-budget deficits*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No

Statutory pay-as-you-go procedures apply?

Yes

Mandate Effects

Contains intergovernmental mandate?

Yes, Under Threshold

Contains private-sector mandate?

Yes, Under Threshold

* = between -\$500,000 and \$500,000.

The bill would

- Authorize appropriations to establish the Child Online Protection Board
- Authorize appropriations to expand court services for child victims and witnesses
- Require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providers to delete materials that depict or promote sexual and other forms of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to report their actions to the CyberTipline
- Require providers to submit annual reports demonstrating efforts to combat online exploitation of children
- Create new criminal and civil penalties for providers who fail to comply with reporting requirements
- Impose mandates o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providers

Estimated budgetary effects would mainly stem from

-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to establish the Child Online Protection Board
-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to the federal judiciary
- Administrative costs to process reports
- Additional collections of criminal and civil penalties and associated spending

Detailed estimate begins on the next page.

- [그림 12]는 2023년 9월 26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는 시행되지 않았음
 -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 또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력은 임계치 이내의 영향력이 발생하였음
 -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S. 910, a bill to amend the Grand Ronde Reservation Act, and for other purposes			
As ordered reported by the Senate Committee on Indian Affairs on July 19, 2023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23	2023-2028	2023-2033
Direct Spending (Outlays)	0	0	0
Revenues	0	0	0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0	0	0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Outlays)	0	*	not estimated
Increases <i>net direct spending</i>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No	Statutory pay-as-you-go procedures apply? No	
		Mandate Effects	
Increases <i>on-budget deficits</i>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No	Contains intergovernmental mandate?	Yes, Under Threshold
		Contains private-sector mandate?	No
* = between zero and \$500,000.			

S. 910 would revise the tribal land claims of the Confederated Tribes of the Grand Ronde Community in Oregon that were extinguished by the Grand Ronde Reservation Act. That act authorized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to provide 240 acres of land to the tribes. In exchange, the tribes relinquished their right to pursue claims to all other land within the state. S. 910 would lower the amount of relinquished land to a specific 84-acre parcel, which would allow the tribes to acquire additional land in Oregon to which they have a valid claim.

Using information from DOI, CBO estimates that the agency would incur insignificant administrative costs to update documents related to the affected land. Any spending would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d funds.

S. 910 would impose an intergovernmental mandate—as defined in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UMRA)—on the confederated tribes by prohibiting gaming on tribal land in Oregon. That prohibition would apply to land obtained by the tribe in a land claim settlement or purchased with funds from a settlement. Because gaming on such land is currently allowed under federal law, the proposed ban would be a mandate. However, because gaming does not occur now on the tribal land and the tribes have no plans to begin gaming activities

- [그림 13]은 2023년 10월 16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음
 -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 25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은 50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은 임계치 이내의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예측됨

At a Glance			
H.R. 3556, Increasing Financial Regulato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As ordered reported by the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on May 24, 2023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24	2024-2028	2024-2033
Direct Spending (Outlays)	3	14	29
Revenues	1	1	1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2	13	28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Outlays)	*	2	not estimated
Increases <i>net direct spending</i>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 \$2.5 billion	Statutory pay-as-you-go procedures apply?	Yes
		Mandate Effects	
Increases <i>on-budget deficits</i>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 \$5 billion	Contains intergovernmental mandate?	No
		Contains private-sector mandate?	Yes, Under Threshold
* = between zero and \$500,000.			
The bill would - Establish new requirements for several federal 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 Require the Federal Reserve to accelerate disclosures concerning certain programs and facilities - Cap assessments by the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and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Require additional audits, reports, and testimony related to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 Require financial regulators to notify the Congress before invoking the systemic risk exception or assisting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when severe financial conditions exist - Change the way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determines the least-cost approach to resolving bank failures - Impose a private-sector mandate as defined in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Estimated budgetary effects would mainly stem from Additiona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required for certain federal 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Areas of significant uncertainty include Projecting the effect of the least-cost approach for the FDIC resolving bank failures			
Detailed estimate begins on the next page.			

- [그림 14]는 2023년 11월 3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음
 -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 25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은 50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At a Glance

S. 3029, Honoring Civil Servants Killed in the Line of Duty Act

As ordered reported by the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on October 25, 2023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24	2024-2028	2024-2033
Direct Spending (Outlays)	*	1	3
Revenues	0	0	0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	1	3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Outlays)	1	16	37

Increases <i>net direct spending</i>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 \$2.5 billion	Statutory pay-as-you-go procedures apply?	Yes
	Mandate Effects	
Increases <i>on-budget deficits</i>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 \$5 billion	Contains intergovernmental mandate?	No
	Contains private-sector mandate?	No

* = between zero and \$500,000.

The bill would

- Increase payments to family (or another specified individual) of federal civilian employees killed in the line of duty to \$100,000
- Adjust those payments annually to account for inflation
- Increase the funeral benefits paid for federal employees
- Require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o report annually on payments made under the bill and to occasionally audit those payments

Estimated budgetary effects would mainly stem from

- Increased payments to families of federal civilian employees who died while on the job

Areas of significant uncertainty include

- The number of payments agencies would be required to make annually

Detailed estimate begins on the next page.

- [그림 15]는 2023년 11월 3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음
 -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 25억 달러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은 50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At a Glance			
H.R. 4619, AUKUS Submarine Transfer Authorization Act			
As ordered reported by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on July 26, 2023			
By Fiscal Year, Millions of Dollars	2024	2024-2028	2024-2033
Direct Spending (Outlays)	0	-1,423	-4,515
Revenues	0	0	0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0	-1,423	-4,515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Outlays)	*	1	2
Increases <i>net direct spending</i>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 \$2.5 billion	Statutory pay-as-you-go procedures apply?	Yes
		Mandate Effects	
Increases <i>on-budget deficits</i> in any of the four consecutive 10-year periods beginning in 2034?	< \$5 billion	Contains intergovernmental mandate?	No
		Contains private-sector mandate?	No
* = between zero and \$500,000.			
The bill would - Authorize the sale of as many as two Virginia-class submarines to the government of Australia - Permit the collection of foreign contributions to expand the United States' submarine industrial base - Authorize balances from foreign contributions to accrue Treasury interest and make that interest available for obligation - Require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lateral security partnership betwee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stimated budgetary effects would mainly stem from - Selling two Virginia-class submarines within 15 years of enactment - Accepting cash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spending those contributions to support the United States' submarine industrial base - Investing amounts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n U.S. Treasury securities			
Areas of significant uncertainty include - Estimating sales proceeds for the Virginia-class submarines and anticipating the timing of those sales - Anticipating the amount of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of Australia to support the United States' submarine industrial base - Projecting the accrual of Treasury interest on contributions from Australia			
Detailed estimate begins on the next page.			

- [그림 16]은 2023년 10월 30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그림 16]의 비용추계서는 ‘Short - Form’ 형식의 비용추계서임
 - Short - Form 비용 추계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산 효과가 나타나
는 복잡하지 않은 법안의 경우 작성됨
 - 이러한 추정치는 대개 한 두 페이지 길이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의 양과 동일한 순서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됨

[그림 16] 2023년 10월 30일 비용추계서 예시



October 30, 2023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eek of October 30, 2023

The Majority Lead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nounces bills that will be considered under suspension of the rules in that chamber. Under suspension, floor debate is limited, all floor amendments are prohibited, points of order against the bill are waived, and final passage requires a two-thirds majority vote.

At the request of the Majority Leader and the House Committee on the Budget, CBO estimates the effects of those bills on direct spending and revenues. CBO has limited time to review the legislation before consideration. Although it is possible in most cases to determine whether the legislation would affect direct spending or revenues, time may be insufficient to estimate the magnitude of those effects. If CBO has prepared estimates for similar or identical legislation, a more detailed assessment of budgetary effects, including effects on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may be included.

3. 미국 CBO와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비교분석

-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의 CBO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분석팀의 구성
 -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세제분석실에서 비용추계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6개의 하부부서로 나누어져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 1) 추계세제총괄과
 - － 2) 경제비용추계과
 - － 3) 사회비용추계과
 - － 4) 행정비용추계과
 - － 5) 세제분석1과
 - － 6) 세제분석2과
 - 미국 CBO의 예산분석팀은 비용추계업무의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9개의 하부부서로 나누어져 담당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 1) Defense, International Affairs, and Veterans' Affairs Cost Estimates Unit
 - － 2) Finance, Housing, and Education Cost Estimates Unit
 - － 3) Health Systems and Medicare Cost Estimates Unit
 - － 4) Income Security Cost Estimates Unit
 - － 5) Low-Income Health Programs and Prescription Drugs Cost Estimates Unit
 - － 6) Natural and Physical Resources Cost Estimates Unit
 - － 7) Projections Unit
 - － 8) Public and Private Mandates Unit
 - － 9) Scorekeeping Unit
 - 미국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분석 단위가 더욱 세분화 되어있으며, 그 분석의 단위가 한국은 추상적인데 반해 구체성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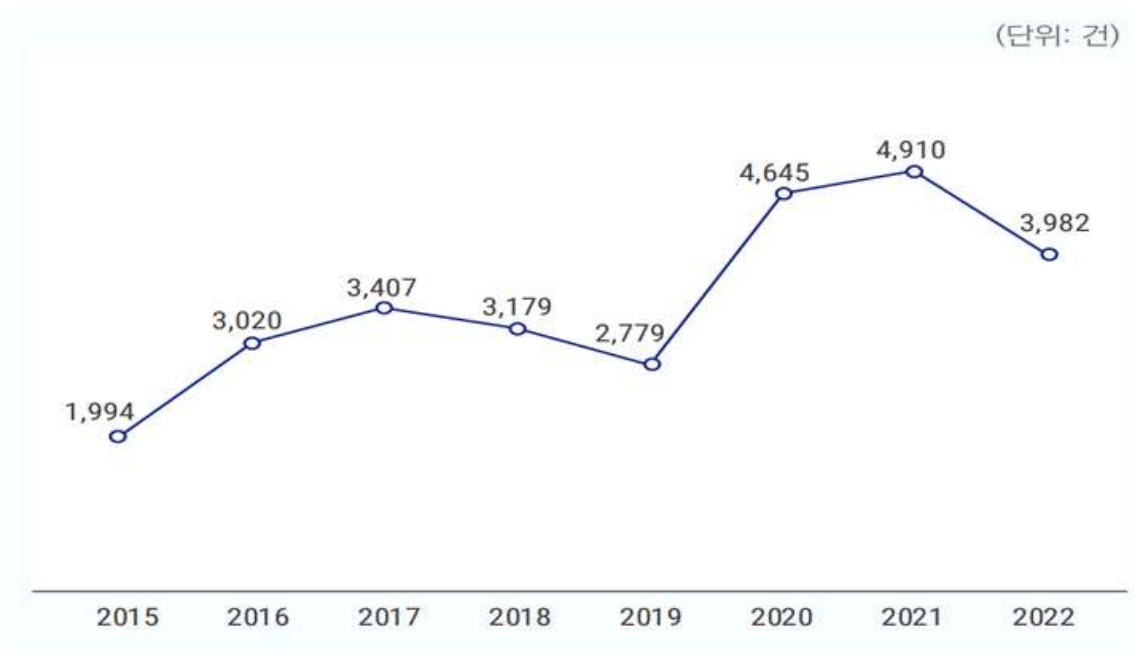
□ 분석팀 업무와 인원

- 한국 예산정책처의 조직편제에서 전체 인원은 175명이며, 비용추계분석을 수행하는 추계세제분석실의 총원은 49명임. 전체 조직 내 28%의 인원이 비용추계업무를 맡고 있음
 - － 1) 추계세제총괄과 8명(16.3%)
 - － 2) 경제비용추계과 7명(14.3%)
 - － 3) 사회비용추계과 8명(16.3%)
 - － 4) 행정비용추계과 7명(14.3%)
 - － 5) 세제분석1과 8명(16.3%)
 - － 6) 세제분석2과 7명(14.3%)
- 미국 CBO의 조직편제에서 전체 인원은 275명임. 비용추계분석을 수행하는 예산분석팀의 총원은 87명임. 전체 조직 내 33.9%의 인원이 비용추계업무를 맡고있음
 - － 1) Defense, International Affairs, and Veterans' Affairs Cost Estimates Unit 13명(14.9%)
 - － 2) Finance, Housing, and Education Cost Estimates Unit 9명(10.3%)
 - － 3) Health Systems and Medicare Cost Estimates Unit 7명(8.0%)
 - － 4) Income Security Cost Estimates Unit 9명(10.3%)
 - － 5) Low-Income Health Programs and Prescription Drugs Cost Estimates Unit 9명(10.3%)
 - － 6) Natural and Physical Resources Cost Estimates Unit 10명(11.5%)
 - － 7) Projections Unit 7명(8.0%)
 - － 8) Public and Private Mandates Unit 6명(6.9%)
 - － 9) Scorekeeping Unit 9명(10.3%)
 - － 10) 총괄임원 8명(9.2%)
- 미국은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분석원들의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연간 비용추계 분석 건수

- 한국 비용추계분석실의 경우 비용추계 건수는 최근 3년치(2020 ~ 2022) 평균 약 4,512건임
 - 49명의 인원이 업무 수행하며 산술적으로는 1인당 연간 약 92개의 분석 시행하고 있음

[그림 17]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연간 접수 건수



출처: 이정은 (2023)

- 미국 CBO의 경우 비용추계 건수는 700개(2023년 기준)로 87명의 인원이 수행하고 있음
 - 산술적으로는 1인당 연간 약 8개의 분석 시행
 - 특히, CBO의 분석 건수에는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건수도 일부 포함됨. 이에 실질적인 분석 건수는 700개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18] 미국 CBO 비용추계 연간 접수 건수

Type of Product	2022, Actual	2023, Estimate	2024, Estimate
Fulfilled Requests for Technical Assistance. Such requests typically come from committees and Members of Congress seeking a clear picture of the budgetary impact of proposals before they introduce or formally consider legislation.	Thousands	Thousands	Thousands
Cost Estimates. Most cost estimates include both estimates of federal costs and assessments of the cost of mandates imposed on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or the private sector.	760	700	700
Estimates for Suspension Bills. For bills considered under suspension of the rul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BO provides estimates of the bills' effects on mandatory spending and revenues.	390	300	300
Scorekeeping Tabulations. Those tabulations include account-level estimates for individual appropriation acts at all stages of the legislative process, as well as summary tables showing the status of discretionary appropriations (by appropriations subcommittee) and running totals on a year-to-date basis.	100	100	100
Reports, Working Papers, Testimonies, and Interactive Tools. CBO's publications are generally required by law or prepared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the Chairs and Ranking Members of key committees. They examine the outlook for the budget and the economy, major issues affecting that outlook under current law, the budgetary effects of policy proposals that could change that outlook, the details of the federal budget process, and a broad range of related budgetary and economic topics in such areas as health care, defense policy, Social Security, and climate change.	83	70 to 80	70 to 80

Data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출처: Swagel (2023)

- 미국과 한국의 연간 분석건수를 비교하면 연간 약 6.4배, 1인당 수행하는 연 평균 분석건수는 11.5배임
 -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분석 업무에 있어 상당한 제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 비용추계 현황 요약
 - 위에서 살펴본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 비용추계에 관하여 [표 10]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미국 CBO는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약 1.78배 더 많은 비용추계 분석인원이 있음
 - 한국은 49명, 미국은 97명임
 - 또한, 분석인원의 차이 이외에 분석건수와 업무의 효율성 부분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CBO보다 약 6.45배 더 많은 비용추계 분석을 하고 있음

- 비용추계분석 수행조직이 미국이 한국보다 비용추계관련 내용에 맞추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국방, 금융·주택·교육, 보건 등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비용추계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기에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인당 업무처리 건수는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CBO보다 약 11.5배 더 많은 비용추계 분석을 하고 있음
- 정리하면,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CBO에 비해 분석인원, 분석을 수행할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추계서를 어느 정도 유형화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다섯가지 사항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음
 -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
 -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의 장기적인 영향(일반적으로 제정 후 11년째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4개의 10년 기간 중 하나에 해당)을 미치는가 여부
 -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일반적으로 제정 후 11년째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4개의 10년 기간 중 하나에 해당)을 미치는가의 여부
 -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여부
 -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 여부
-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산효과가 나타나는 복잡하지 않은 법안의 경우 ‘Short-Form’ 형식으로 한, 두페이지 내외의 간단한 분석을 수행해도 됨
- 어느정도 유형화를 시도하여, 비용추계분석에 있어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0]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 비교

	한국	미국
분석인원	49명	87명
연간분석건수	약 4,512건	700건
1인당 연간 분석건수	약 92건	약 8건
조직 유형 수	6개	9개
추계서에서의 유형화	x	o

제 4 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안

제 1 절 의안 비용추계 체계화 방법론¹²⁾

1. 비용추계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검토

1) 비용추계서 유형 분류의 이론적 전제

- 비용추계서의 대상이 되는 법안에 수반되는 내용은 명시적인 정부정책(public policy) 외에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작동 및 정치과정(process)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조직(public organizations)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함
 - 예 : 「공직선거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Powell et al.(2015)의 정치재(political goods)[정책목적]와 정책산출(policy outputs)[정책수단] 유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안 유형 분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더 나아가 Salamon(2002), 윤주철(2021)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policy tools)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정책자원(policy resources)의 투입(input) 및 산출(outputs) 측면, 다원화된 정책주체[전달체계 : delivery system], 정책주체 간 관계를 고려한 비용추계서 유형 분류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 전달체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수행 외 제3자 정부(the 3rd party government) 현상의 강화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임

12) 비용추계 유형화에 관한 논의는 신헌태(2022)를 참조하였음

2) 정치재(political goods)와 정책산출(public outputs)의 유형¹³⁾

□ 정치재의 정의

- 민주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시민의 가치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Political goals that politicians seek to satisfy the values and aspirations of the citizens in democratic societies)

□ 정치재의 수준

- (1)체계수준(system level) 및 (2)과정(process) 수준은 정치체계의 유지, 시민의 정치 참여 및 의무 이행, 절차적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
- (3)정책(policy) 수준에서는 복지(welfare), 안보(security), 공정성(fairness), 자유(liberty)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정치재(policy goods)로 포괄되며, 정책산출(policy outputs) 논의의 대상이 됨

[표 11] Political Goods

Levels of Political Goods	Classes of Goods	Content and Examples
System level	System maintenance	The political system features regular, stable, and predictable decision-making processes
	System adaptation	The political system is able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 and challenges
Process level	Participation in political inputs	The political system is open and responsive to many forms of political speech and action
	Compliance and support	Citizen fulfill their obligations(e.g., military service and tax obligations) to the system and comply with public law and policy.
	Procedural justice	Legal and political procedures are orderly and fair (due process), and there is equality before the law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Political processes have their intended effects and are no more cumbersome, expensive, or intrusive than necessary

13) Powerll et al.(2015). Comparative Politics Today.

Policy level	Welfares	Citizens have access to health care, learning , and economic and environmental goods, which the government seeks to distribute broadly
	Security	The government provides safety tof person and property,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Faireness	Government policy is not discriminatory and recognizes individuals from different ethnic, linguistic, or religious groups; both genders are respected; vulnerable or disadvantaged citizens are protected
	Liberty	Citizen enjoy freedom from excessive regulation, protection of their privacy, and respect for their autonomy

□ 정책산출의 유형

- 정책산출은 정책수단(instruments of policy)으로 이해됨
- (1)추출(extraction) : 돈, 재화 및 서비스, 인적 자원의 국내외 환경으로부터의 추출(extraction of reousrces-money, goods, persons, and service-from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 (2)분배(distribution) : 돈, 재화 및 서비스의 민간에 대한 분배(distribution of money, goods, and services to citizens, residents, and clients of the state)
- (3)규제(regulation) : 강제 및 유인을 활용한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제(regulation of human behavior the use of compulsion and inducement to bring about desired behavior)
- (4)상징(symbol) : 시민에 대한 특정 행동 권장, 공동체 건설, 모범 행위 기념 독려(symbolic outputs used to exhort citizens to engage in desired forms of behavior, build community, or celebrate exemplary conduct)

□ 검토

- 법안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제 혹은 정책제는 결국 정치와 정책의 목적으로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로 구체화할 수 있음
- 정책산출 유형은 정책의 묘사 및 설명에 유용하나, 정책에 있어 정보제공 및 넛지(nudge)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의 정책자원 형성과 투입 측면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함
- 정책산출 유형은 제3자 정부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현 정치행정 및 정책환경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의 개념을 포괄하지 못함

□ 정보제공, 넛지 중요성, 정책자원 형성·투입 측면, 제3자 전달체계 등을 포함하지 못함

3)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policy tools)의 유형¹⁴⁾

□ 정책수단의 정의

- 전통적 정의 :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
- Salamon :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구조화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방법(an identifiable method through which collective action is structured to address a public problem)
- 윤주철(2021)의 검토 :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제3자’의 등장과 자발적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정책도구’라는 점은 제한적이며, ‘행정수단’이라는 표현이 적합함

14) Salamon(2002)을 재구성한 남궁근(2021)의 정책학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12] 정책수단의 분류

정책수단	정의	산출물/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
(1) 정부소비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인건비와 물품구매를 위한 소비	재화, 서비스	직접제공	공공기관
(2) 경제적 규제	가격, 산출량 또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 통제	가격	진입규제, 가격규제	규제기관
(3) 직접대출	정부가 개인 또는 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형식의 자금지원	현금	대출	공공기관
(4) 정보제공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행태변화를 유도	서비스	직접제공	정부, 공공기관
(5) 공기업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에 운영되는 준독립적 기업	재화, 서비스	직접제공, 대출	준공공기관
(6) 사회적 규제	안전, 건강, 복지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개인, 기업의 행위 규제	금지	규칙	공공기관, 피규제자
(7) 계약	민간 계약자와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	재화, 서비스	계약, 현금지급	기업, 비영리기관
(8) 보조금	조직과 개인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	재화, 서비스	보조금 제공, 현금지급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9) 대출보증	민간은행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정부가 보증	현금	대출	민간은행
(10) 공적보험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한 강제보험	보호	사회보험	공공기관
(11) 조세지출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집단에 조세체계에서 세제상 혜택 제공	현금, 유인기제	조세	조세기관
(12) 사용료·과징금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및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재정적 제재	조세	조세기관
(13) 불법 행위 책임법	물품 제조 또는 가공의 결함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규제	사회적 보호	손해배상법	사법제도
(14) 바우처	특정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증서 제공	재화, 서비스	소비자 보조	공공기관, 소비자

주: 정보제공은 남궁근(2021)에서 추가

자료: Salamon(2002)을 재구성한 남궁근, 정책학, 제4판, p. 96, 2021에서 재인용

□ 검토

- Salamon(2002)은 정책수단 유형 분류는 전달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제3자 정부 현상과 결부된 정책주체의 다원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나 정부 외 정책주체의 정책활동의 근거에 있는 정부와 정부 외 정책주체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음
- 전달수단-산출물/활동 간 매칭을 통해 정책수단의 투입-산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나 정책자원의 형성과 투입 측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2. 비용추계 유형화 고려사항

1) 재정수반요인을 고려하는 비용추계의 관점과 결부하여 검토

2) 정책목적: 기능별 분류

□ 정부기능분류(COFOG)

- UN
- (1)일반공공해정(general public services), (2)국방(defense), (3)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4)경제(economic affairs), (5)환경(environment protection), (6)주거(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7)보건(health), (8)문화 및 종교(culture and religion), (9)교육(education), (10)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 예산과목구조

-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예산과목구조는 정부 수행 업무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6개 장(분야), 69개관(부문)으로 구분됨
- 16개 분야 구분 : (1)일반공공행정, (2)공공질서 및 안전, (3)통일·외교, (4)국방, (5)교육, (6)문화 및 관광, (7)환경, (8)사회복지, (9)보건, (10)농림 수산, (11)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교통 및 물류, (13)통신, (14)국토 및 지역개발, (15)과학기술, (16)예비비

- 정부기능 혹은 정책기능은 통상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규제 및 정보제공, 정치체제 및 정치과정의 구성에도 적용 가능함(미대상 판단 관련)
 - 규제 및 정보제공 역시 정책목적 혹은 기능이 있으며, 규제 및 정보제공 결정, 집행 등을 위해서도 인력 및 조직 구성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
 - 정치체제 및 정치과정은 그 자체로 일반공공행정 측면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으며, 선거 실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및 조직 구성뿐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민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

3) 정책자원: 정책의 투입 측면

- 정책자원 : 정치 및 정부의 제반 활동의 토대
- 정책자원의 유형
 - 인력(人: personnel) 및 조직(織: organization)
 - 자산(物: asset) 및 자금(金: money)
 - 권한(權: authority) 및 정보(知: information)
- Salamon(2002)은 정책자원에 대한 명시적 고려 없이 이러한 요소들을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인 정책수단 유형에 포괄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주장
- 정책자원의 고려는 그동안 가시적인 논의가 없었던 정책산출의 전제인 정책투입과 정책투입을 위한 정책자원의 형성 측면을 부각하는 것임
- 예시로, 행정기관의 설치, 재정수입 변화, 행정자산 취득, 직제 개편 및 권한 조정,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책자원의 형성 및 투입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4) 정책산출

- 정책산출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 측면에서 크게 재정과 규제로 구분됨(posner, 1974)
 -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크게 양분되며, 각각 Almond et al.(2015)의 정책산출 유형인 추출과 분배에 대응됨
 - 규제는 Almond et al.(2015)의 정책산출 유형인 규제에 대응됨
- Almond et al.(2015)의 정책산출 유형 중 상징은 표면상 재정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상징 정책을 위해서도 인력 및 조직 구성뿐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민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미대상 판단 관련)

5) 전달체계: 다원화된 정책주체와 제3자 정부 활동 근거로서 정부

- Salamon(2002)은 정책수단을 전달체계관점에서도 검토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및 은행이 정책주체가 되는 제3자 정부 현상을 설명함
- 다만, Salamon(2002)은 이러한 제3자 정부의 정책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신 및 자금 제공, 권한 부여 및 정보제공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즉, 정책수단의 유형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정책자원이 어떠한 흐름과 방식으로 제3자 정부에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
-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사업(계약 역시 포괄)은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제3자 정부에 대한 지원, 시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정부지원 형태를 (1) 직접, (2) 출자, (3) 출연, (4) 보조, (5) 융자로 구분하고 있음(정부 사업설명자료의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참고)

- 제3자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결국 시민에 대한 정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3자 정부를 매개한(meidating) 시민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직접 지원 : 정부 → 시민
 - 정부 간접 지원 : 정부 → 제3자 정부 → 시민
- 동일한 논리에서 규제 및 교육,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

제 2 절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검토

1. 정책수단을 고려한 비용추계서 유형화 검토

1) 비용추계 유형의 이론적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수단에 따른 비용추계서 유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비용추계 실무에서의 일관성 및 효율성 강화 및 비용추계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지원사업’ 및 ‘기타’ 유형의 세부화 및 체계화를 위한 활용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 정책수단은 “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 정의되며, Salamon(2002)은 산출·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를 요소로 하여 정책수단을 분류함
 - 산출/활동은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 제한 또는 금지, 정보제공 등을 의미함
 - 전달수단은 산출/활동을 위한 대출, 전액 보조금, 바우처,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세금 제도 등의 전달수단을 의미함
 - 전달체계는 재화, 서비스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영리법인 등 단체를 의미함

-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12개 유형과 정책수단의 매칭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도출된 12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 (1)위원회설치, (2)행정기관설치, (3)공공기관설립, (4)협(의)회설립
 - － (5)계획수립, (6) 실태조사
 - － (7)시스템 구축·운영
 - － (8)지원사업, (10)배·보상, (11)특례
 - － (9)회계·기금 설치, (12)기타
 - ‘지원사업’ 유형은 정책수단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바우처’, ‘직접대출’ 및 ‘대출보증’ 등으로 세부 분류할 수 있음
 - ‘기타’ 유형은 미분류된 정책수단에 포섭되거나 추계기법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비용추계서 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표 13] 정책수단과 비용추계서 유형 매칭(안)

정책수단	비용추계서 유형
(1) 정부소비	(2) 행정기관 설치
	(1) 위원회 설치,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6) 실태조사
	(7) 시스템 구축·운영
(5) 공기업	(3) 공공기관 설립
(10) 공적보험	(8) 지원사업
(8) 보조금	
(14) 바우처 (및 현물, 서비스 직접 제공)	
(3) 직접대출, (9) 대출보증	
(11) 조세지출(등)	(11) 특례
(13) 불법행위 책임법	(10) 배·보상
(7) 계약	미분류
(12) 사용료·과징금	
(2) 경제적 규제, (6) 사회적 규제	
(4) 정보제공	(9) 회계·기금 설치
미분류	(12) 기타

2)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고려사항

- 재정수반요인을 고려하는 비용추계의 관점과 결합하여 검토
- 정책자원 : 정책의 투입 측면

- 정책자원은 정치 및 정부의 제반 활동의 토대를 의미함
- 정책자원의 유형
 - 인력 및 조직
 - 자산 및 자금
 - 권한 및 정보
- Salamon은 정책자원에 대한 요소들을 정부 소비라는 정책수단 유형에 포괄하고 있음
- 정책자원의 고려는 정책산출의 전제인 정책투입과 정책투입을 위한 정책자원의 형성 측면을 부각할 수 있음
- 행정기관 설치, 직제 개편 및 권한 조정,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산출

- 정책산출은 정부개입 측면에서 재정과 규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크게 분류되며, Almond et al.의 정책산출 유형인 추출과 분배에 대응함
 - 규제는 Almond et al.의 정책산출 유형인 규제에 대응함
- Almond et al.의 정책산출 유형 중 상징정책은 인력 및 조직 구성뿐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민간 대상 지원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

□ 전달체계 : 다원화된 정책주체와 제3자 정부의 활동 근거

- Salamon은 정책수단의 전달체계 관점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및 은행이 정책주체가 되는 제3자 정부 현상을 설명함
- 제3자 정부의 정책활동을 위해 정부의 자산 및 자금 제공, 권한 부여 및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정책수단의 유형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정책자원의 흐름과 방식으로 제3자 정부에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
- 정부의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제3자 정부에 대한 지원, 시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유형별 추계/미첨부3호 현황 및 지원사업 세부 유형화 검토

1) 유형별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요인 현황

- 정책수단에 따른 ‘정부소비’ 유형의 재정수반법안은 추계율이 높은 반면, ‘공적 보험’ 및 ‘보조금’ 등(‘지원사업’) 유형의 재정수반법안은 구성비율이 높으면서 추계율이 낮게 나타남

□ 분류 개요

- (분류 대상) 2022. 1. 1. ~ 2022. 8. 9. 의뢰일 기준, 법안 추계요청 중 처리 완료된 공식추계 및 미첨부사유서3호
 - 미대상, 미첨부사유서1호 및 2호는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
- (분류 방법)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12개 유형 적용

□ 유형별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요인 현황

- 703개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된 재정수반요인은 455개이며, 추계율은 64.7%로 나타남
- (구성비율) 12개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12) 기타(33.4), (8) 지원사업(28.4)이며, 다른 유형은 1.6~8.3를 차지함
- (추계율) 12개 유형에서 50 미만의 추계율(미첨부3호 비율)을 보이는 유형은 (8) 지원사업(42.5), (9) 회계·기금 설치(14.3), (10) 배·보상(40.0)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 유형은 구성비율이 높고 추계율은 낮다는 점에서 추계율뿐만 아니라 비용추계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

[표 14] 유형별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요인 현황

(단위: 개)

구분	(1) 위원회 설치	(2) 행정기관 설치	(3) 공공기관 설립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6) 실태조사
추계 (추계율)	52 89.7	10 66.7	21 72.4	10 90.9	28 80.0	37 75.5
미첨부3호 (미첨부3호)	6 10.3	5 33.3	8 27.6	1 9.1	7 20.0	12 24.5
합계 (총계대비)	58 8.3	15 2.1	29 4.1	11 1.6	35 5.0	49 7.0
구분	(7) 시스템 구축·운영	(8) 지원사업	(9) 회계·기금 설치	(10) 배·보상	(11) 특례	(12) 기타
추계 (추계율)	17 85.0	85 42.5	1 14.3	12 40.0	8 57.1	174 74.0
미첨부3호 (미첨부3호)	3 15.0	115 57.5	6 85.7	18 60.0	6 42.9	61 26.0
합계 (총계대비)	20 2.8	200 28.4	7 1.0	30 4.3	14 2.0	235 33.4
총계 (추계율)	전체: 703, 추계: 455, 미첨부3호: 248 64.7					

주: 재정수반법안 내 다른 유형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유형별 건수의 합계는 공식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법안의 합계보다 큼

자료: 신현태(2022)

□ 지원사업 유형 비용추계 일관성 및 효율성 강화방안

- ‘지원사업’ 유형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수단 분류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구조 상 기능별 재정지출 분류의 적용을 검토해야 함
- 정책수단별 분류
 - －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보조금, 바우처, 직접대출 및 대출보증 등 정책수단을 고려하는 지원사업 세부 유형화를 통해 비용추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능별 분류
 - －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예산과목구조는 정부 수행 업무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6개 장(분야), 69개관(부문)으로 구분됨

- 16개 분야 구분 :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3) 통일·외교, (4) 국방, (5) 교육, (6) 문화 및 관광, (7) 환경, (8) 사회복지, (9) 보건, (10) 농림수산,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5) 과학기술, (16) 예비비
- ‘2022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와 사례’ 구성 개편 및 ‘2022 가결 법률 제정소요점검’ 분석에서 정책수단 및 기능별 재정지출 분류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능별 재정지출 분류와 관련하여 의안비용추계시스템(COSTEM) 내에 제정소요점검에 분야, 부문을 입력하는 항목이 존재함
- 다만 추계율이 비교적 높은 유형에서도 벤치마크 사례 선정을 통해 비용추계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연구기관 설립에 있어 유사사례의 준용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도출

1) 비용추계 유형 분류 현황

- 정책수단을 고려한 비용추계서 유형화 검토 결과, 정책수단별 분류, 기능별 분류, 비용추계서 내용에 근거한 분류 등으로 방안이 제시됨
- 정책수단별 분류는 Salamon(2002)의 정책수단 12개 유형 분류와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12개 유형에 대한 매칭 방안이 제시되었음
- 기능별 분류는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한 정부 수행 업무의 기능별 분야를 16가지로 제시되었음
- 이처럼 기존 이론 및 법·제도 검토를 통해 유형 분류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가장 적합한 분류 방안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유형 분류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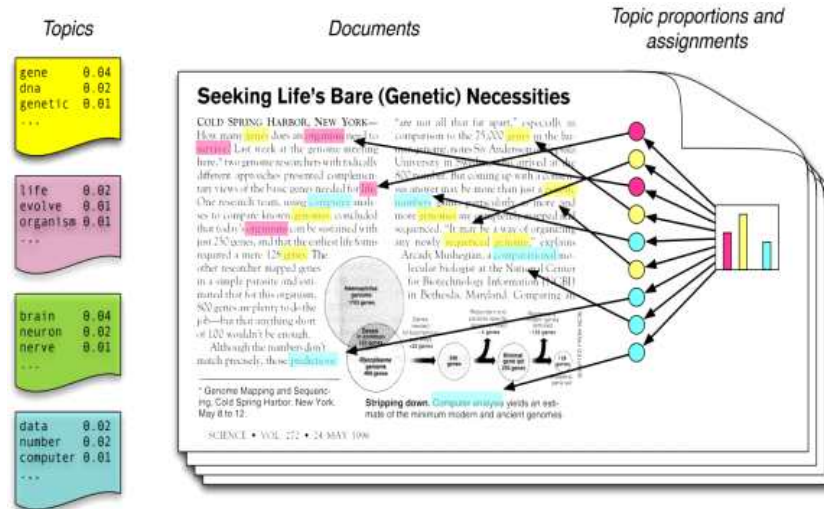
2) 비용추계 특성 정보분석 방안에 대한 논의

- 비용추계 유형 분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 내용 유형 분류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탐색해야 함
- 비용추계서는 추계유형에 따라 ①공식추계, ②미첨부1호, ③미첨부2호, ④미첨부3호, ⑤미대상 등으로 구분됨
- 비용추계서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 ①공식추계, ②미첨부3호 유형 의안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추계유형에 따른 특성 정보분석 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식추계 : 비용추계 결과, 산식 등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진행함
 - 미첨부3호 : 재정수반요인, 미첨부 사유 등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진행함
- 단, 기존 분류 방식과 같이 내용에 근거한 연구자들의 유형 분류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분석 방안 적용이 필요함

3) LDA 토픽모델링에 근거한 비용추계 특정 분석 방안

- LDA 토픽모델링
 -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전체 내용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여 본문의 의미 구조를 발견하는 데 유용함
 - 토픽 모델링은 방대한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토픽을 산출하는 특징이 있음
 - 토픽 모델링 결과 생성되는 주제를 연구자가 직접 평가하여 명명하고 의미 없는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관의 개입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토픽 모델링 결과 생성되는 주제에 대한 명명을 기존 정책 유형론의 분류와 정합성 분석을 적용한다면 주관 개입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음
 -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토픽을 산출한다는 특징으로, 의안 실체 규정을 통한 토픽에 대한 정책 유형 분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19] LDA 토픽모델링 분석



자료: Blei(2012)

- 정책유형론 및 LDA 토픽모델링에 근거한 정합성 분석 방안
 - 분석을 위해서 설정한 분석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2022. 1. 1. ~ 2022.12.31. 의뢰일 기준, 법안 추계 요청 중 처리 완료된 공식추계 및 미첨부사유서3호
 - 미대상, 미첨부사유서1호 및 2호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는 특례가 많아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분석방법) 공식추계 의안의 결과 및 산식, 미첨부사유서3호의 재정수반요인 및 미첨부사유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진행
 -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통해 공식추계 및 미첨부사유서3호에 대한 토픽 유형을 도출할 수 있게 됨

4) LDA 토픽모델링에 근거한 유형 분류의 유용성

- 기존 의안의 유형별 분류에서는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 수요의 복잡도가 향상됨에 따라 적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포괄적인 의안 내용으로 인하여 미첨부 사유가 증가하는 등 기존 분류 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보다 세부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한 시점임

- 비용추계서의 대상이 되는 법안에 수반되는 내용은 정부정책 외에 정치체제의 작동 및 정치과정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공공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나, 기존 분류 유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나타난 12개 유형, 정부 수행 업무의 기능별 16개 분류 등의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비용추계 유형 분류에 적합한 체계를 선택하기에는 객관적 비교·분석 기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추계 특성 정보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유형 분류 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 LDA 토픽모델링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토픽을 산출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①의안명, ②비용추계결과, ③산식, ④재정수반요인, ⑤미첨부 사유 등 비용추계서 정보 특성에 근거한 유형 분류를 도출할 수 있음
- 재정수반요인을 고려한 비용추계 분류 체계와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유형화 간 정합성 분석을 통해 실체에 근접한 체계적인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자 함

[표 15] 비용추계 유형 분류와 LDA 토픽모델링

	비용추계 유형 분류	LDA 토픽모델링
장점	- 정책수단론, 정부업무기능별 분류에 근거하여 비용추계 유형 분류 제시 가능	- 문서 키워드의 출현확률 및 분포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 토픽 유형 추출 가능
단점	- 제시된 이론별 비용추계 분류 유형 중 적합한 체계를 판단하는데 한계 존재	- 토픽은 포함된 키워드 분포에 따라 유형명 및 의미를 판단하게 되며,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존재
연계방안	- ①의안명, ②결과, ③산출식, ④재정수반요인, ⑤미첨부사유 등에 대한 유형 분류 이론과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적합 유형 채택을 고려할 수 있음	

제 5 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분석

제 1 절 토픽 유형별 비용추계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 의안 대상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 전체 의안명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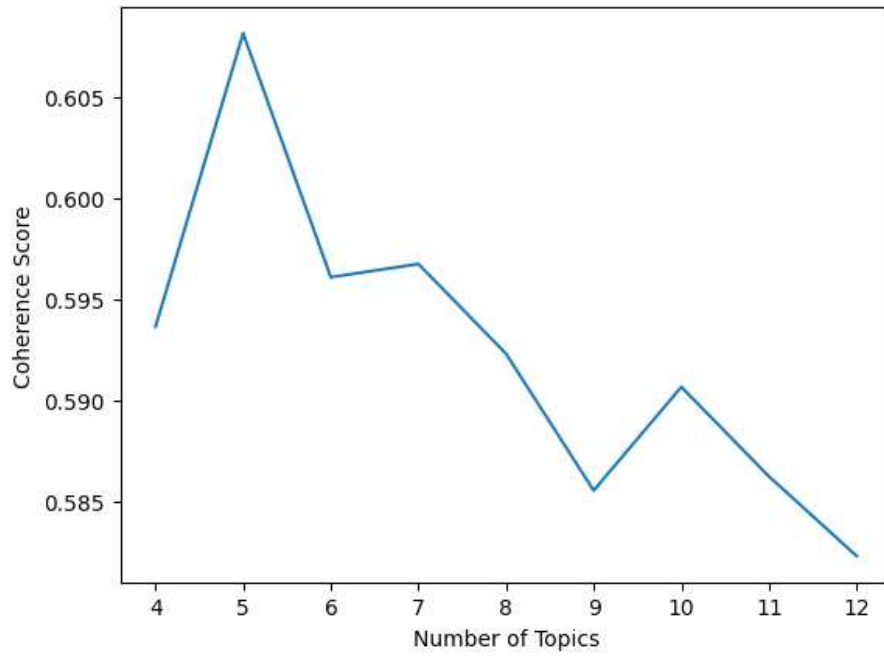
- 총 4,412개 의안명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전체 의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576건(13.9%), 행정안전위원회 558건(13.5%), 보건복지위원회 406건(9.8%)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의안 중 적은 수를 제출한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건(0.0%), 정보위원회 5건(0.1%) 순으로 나타남
- 담당과별 처리 의안 수는 법안 담당과 3,571건(86.2%), 세수 담당과 571건(13.8%) 순으로 나타남

[표 16] 전체 의안명 특성 분포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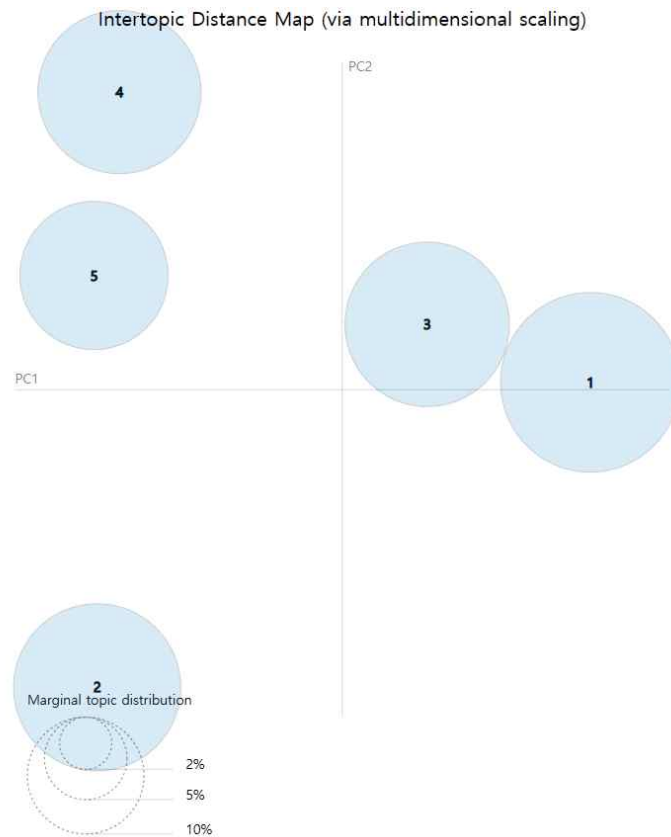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8(4.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0)
	교육위원회	190(4.6)
	국방위원회	115(2.8)
	국토교통위원회	386(9.3)
	국회운영위원회	59(1.4)
	기타 (폐지포함)	45(1.1)
	기획재정위원회	576(13.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7(6.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5(3.5)
	법제사법위원회	280(6.8)
	보건복지위원회	406(9.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3(5.9)
	여성가족위원회	56(1.4)
	외교통일위원회	34(0.8)
	정무위원회	252(6.1)
	정보위원회	5(0.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
	행정안전위원회	558(13.5)
	환경노동위원회	374(9.0)
담당 과별	법안 담당과	3,571(86.2)
	세수 담당과	571(13.8)
총계		4,142(100.0)

- 의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Coherence Score는 토픽 유형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값이 클수록 각 토픽이 유사 의미를 지닌 단어들로 구성되어, 의미론적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측정 결과, 의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605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DA 토픽 시각화 결과는 각 토픽의 크기와 상대적 거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토픽에 비해 크기가 클수록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의미함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많을수록 유사한 의미를 지닌 토픽으로 분류하게 됨
- 1번, 2번, 4번 토픽의 크기가 3번, 5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1번, 2번, 4번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1번, 3번 토픽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간 거리감을 살펴볼 수 있으나, 공유 영역이 없음을 통해 토픽 간 유형 분류가 적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의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5개로 나타남

[그림 20] 전체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21] 전체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전체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1,18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토픽 2유형이 606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문화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1,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2,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정 토픽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표 17] 위원회별 전체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2	9	26	29	12	16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0	1	0	0	1
교육위원회	30	25	56	36	43	190
국방위원회	26	16	22	41	10	115
국토교통위원회	42	57	88	62	137	386
국회운영위원회	3	3	3	34	16	59
기타 (폐지포함)	16	11	8	4	6	45
기획재정위원회	32	46	403	36	59	57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	33	40	92	43	24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	9	13	36	6	145
법제사법위원회	23	44	46	78	89	280
보건복지위원회	70	95	97	94	50	4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1	62	36	52	42	243
여성가족위원회	0	3	39	13	1	56
외교통일위원회	4	12	0	15	3	34
정부위원회	87	26	69	17	53	252
정보위원회	2	0	0	1	2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0	0	0	0	2
행정안전위원회	175	76	162	56	89	558
환경노동위원회	74	79	79	68	74	374
총계	849	606	1,188	764	735	4,142

2) 전체 법안명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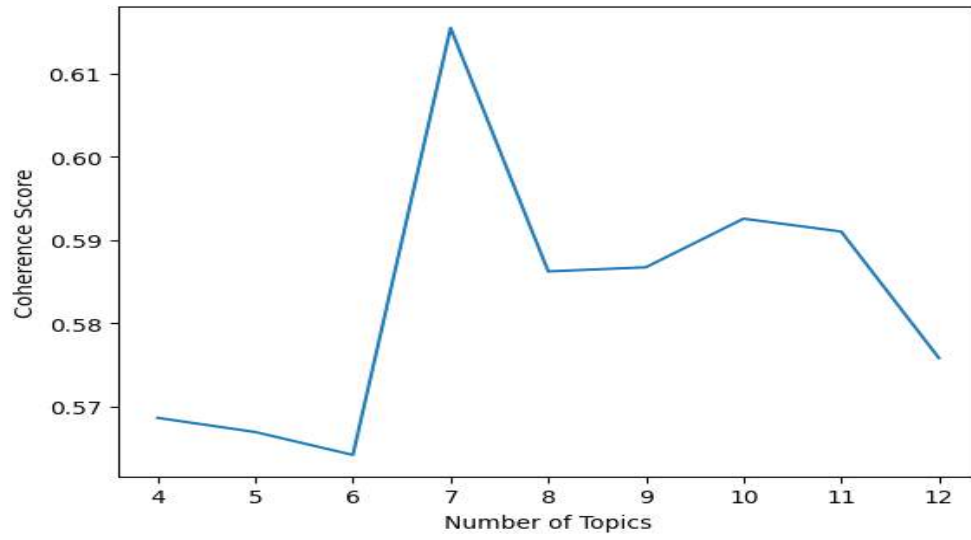
- 총 3,571개 법안명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전체 법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행정안전위원회 494건(13.8%), 보건복지위원회 406건(11.4%), 국토교통위원회 386건(10.8%)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건(0.0%), 정보위원회 5건(0.1%) 순으로 나타남

[표 18] 전체 법안명 특성 분포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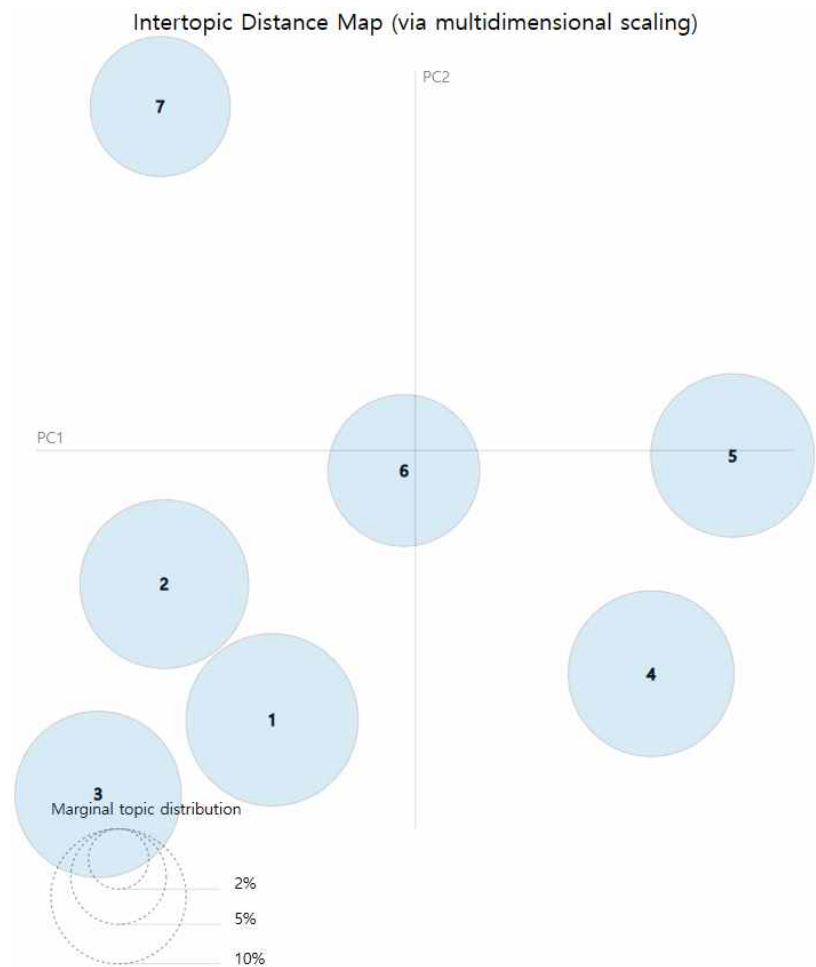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8(4.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0)
	교육위원회	190(5.3)
	국방위원회	115(3.2)
	국토교통위원회	386(10.8)
	국회운영위원회	59(1.7)
	기타 (폐지포함)	43(1.2)
	기획재정위원회	1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4(6.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5(4.1)
	법제사법위원회	280(7.8)
	보건복지위원회	406(1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3(6.8)
	여성가족위원회	56(1.6)
	외교통일위원회	34(1.0)
	정무위원회	221(6.2)
	정보위원회	5(0.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
	행정안전위원회	494(13.8)
	환경노동위원회	374(10.5)
총계		3,571(100.0)

- 법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Coherence Score는 토픽 유형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값이 클수록 각 토픽이 유사 의미를 지닌 단어들로 구성되어, 의미론적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측정 결과, 법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7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61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DA 토픽 시각화 결과는 각 토픽의 크기와 상대적 거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토픽에 비해 크기가 클수록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의미함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많을수록 유사한 의미를 지닌 토픽으로 분류하게 됨
- 1번, 2번, 4번, 5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크고,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해당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1번, 2번 토픽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간 거리감을 살펴볼 수 있으나, 공유 영역이 없음을 통해 토픽 간 유형 분류가 적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법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7개로 나타남

[그림 22] 전체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23] 전체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58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토픽 1유형이 420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정 토픽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표 19] 위원회별 전체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5	33	2	37	9	7	65	168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0	0	1	0	0	0	0	1
교육위원회	14	19	91	7	15	30	14	190
국방위원회	8	13	9	44	15	18	8	115
국토교통위원회	35	22	105	51	50	51	72	386
국회운영위원회	4	0	0	4	17	2	32	59
기타 (폐지포함)	6	6	4	6	7	5	9	43
기획재정위원회	37	22	16	1	6	19	4	10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8	64	30	47	27	36	32	24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	43	15	43	3	7	19	145
법제사법위원회	31	46	83	12	27	35	46	280
보건복지위원회	55	66	49	26	43	92	75	406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67	42	11	55	7	21	40	243
여성가족위원회	0	23	5	20	3	4	1	56
외교통일위원회	3	3	3	9	11	1	4	34
정부위원회	55	21	56	19	11	41	18	221
정보위원회	0	1	1	0	3	0	0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0	0	0	0	2	0	0	2
행정안전위원회	18	98	63	38	154	105	18	494
환경노동위원회	49	9	42	91	35	76	72	374
총계	420	531	586	510	445	550	529	3,571

2. 비용추계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 비용추계 대상 의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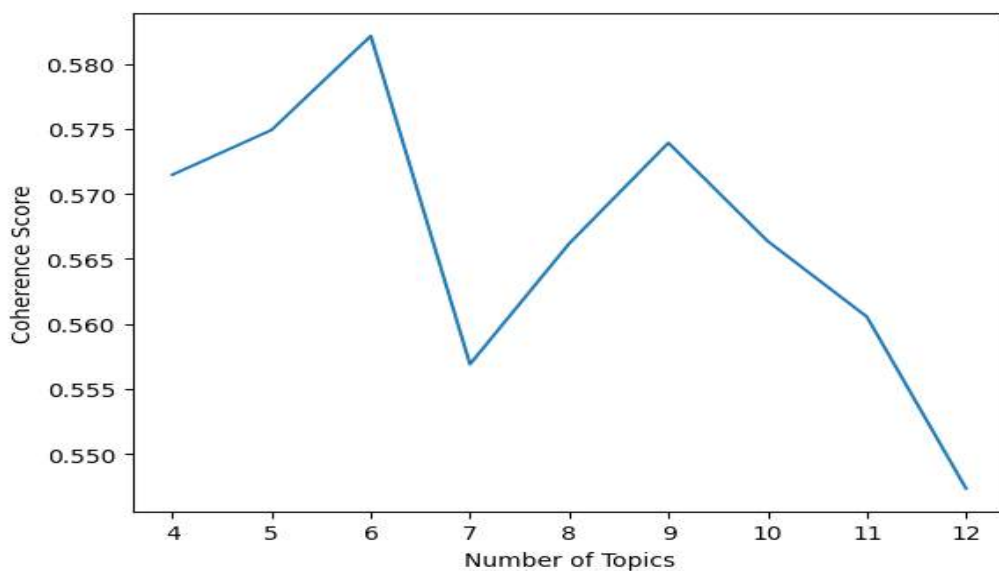
- 총 1,336개 비용추계 대상 의안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329건(24.6%), 행정안전위원회 202건(15.1%), 보건복지위원회 142건(10.6%)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정보위원회 2건(0.1%), 외교통일위원회 7건(0.5%), 국회운영위원회 9건(0.7%) 순으로 나타남
- 담당과별 처리 의안 수는 법안 담당과 946건(70.8%), 세수 담당과 390건(29.2%) 순으로 나타남

[표 20] 비용추계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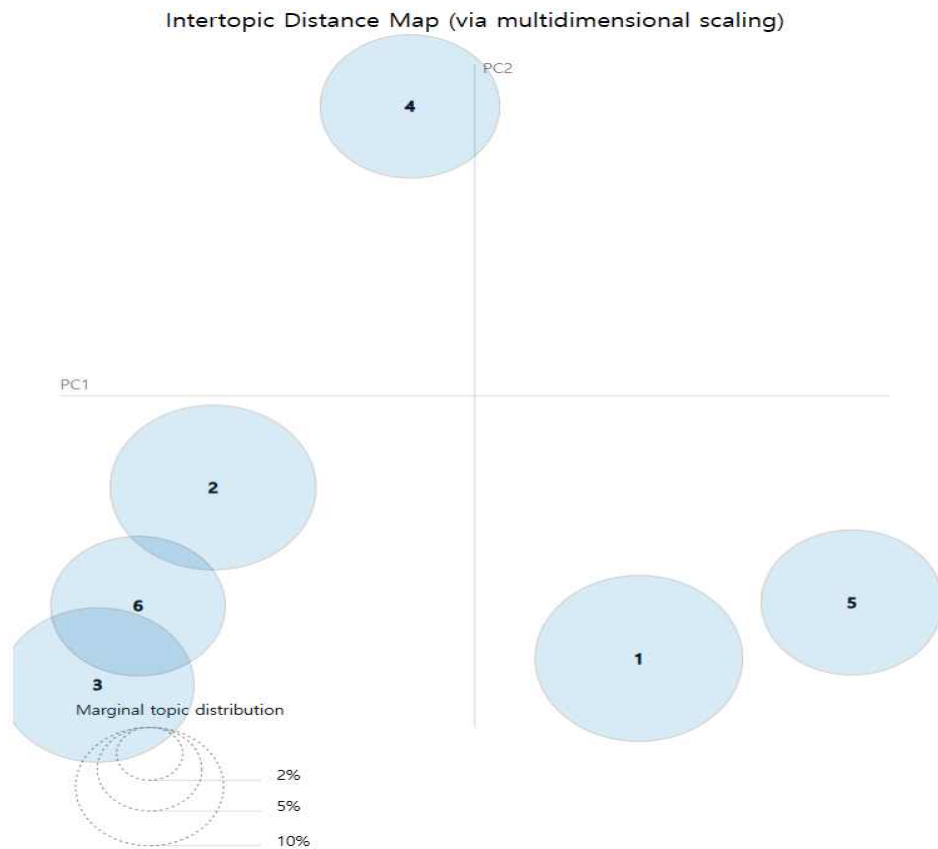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5(3.4)
	교육위원회	42(3.1)
	국방위원회	32(2.4)
	국토교통위원회	95(7.1)
	국회운영위원회	9(0.7)
	기타 (폐지포함)	17(1.2)
	기획재정위원회	329(2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6(5.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2.5)
	법제사법위원회	59(4.4)
	보건복지위원회	142(1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9(4.4)
	여성가족위원회	13(1.0)
	외교통일위원회	7(0.5)
	정무위원회	79(5.9)
	정보위원회	2(0.1)
	행정안전위원회	202(15.1)
	환경노동위원회	94(7.0)
담당 과별	법안 담당과	946(70.8)
	세수 담당과	390(29.2)
총계		1,336(100.0)

-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6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80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2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약간 크지만, 전반적인 크기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남
- 4번 토픽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간 거리감을 살펴볼 수 있으며, 2번, 3번, 6번 토픽은 서로 일정 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며, 1번 토픽과 5번 토픽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것을 확인함
- 실질적인 토픽 분류 유형은 1번, (2번, 3번, 6번), 4번, 5번 등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6개로 나타남

[그림 24]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25]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2유형이 33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5유형이 162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1,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1,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1,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정 토픽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표 21]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1	1	9	5	11	8	45
교육위원회	6	5	8	4	9	10	42
국방위원회	1	13	10	6	0	2	32
국토교통위원회	3	14	27	16	10	25	95
국회운영위원회	1	5	1	1	0	1	9
기타 (폐지포함)	2	1	3	4	3	4	17
기획재정위원회	61	209	0	17	30	12	3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0	4	19	16	13	14	7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11	2	13	4	4	34
법제사법위원회	7	5	6	13	11	17	59
보건복지위원회	23	18	17	21	39	24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12	4	18	13	4	8	59
여성가족위원회	8	3	2	0	0	0	13
외교통일위원회	2	1	1	2	0	1	7
정부위원회	8	8	6	36	19	2	79
정보위원회	1	0	0	0	1	0	2
행정안전위원회	11	10	41	67	4	69	202
환경노동위원회	26	25	14	10	4	15	94
총계	193	337	184	244	162	216	1,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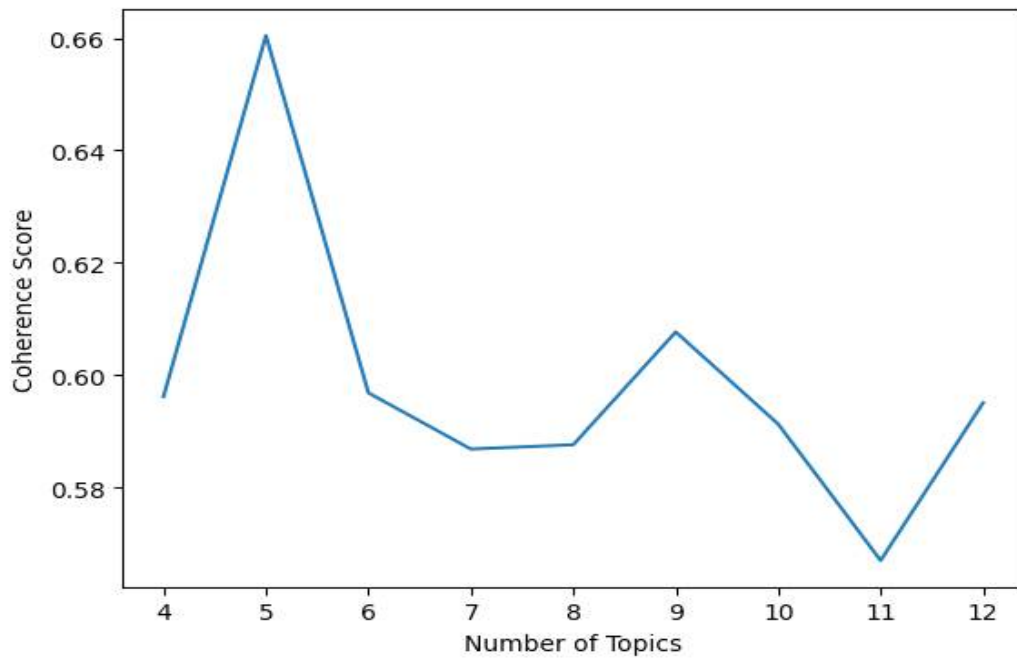
-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3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4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22]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128	128	184	166	133	207	946
세수 담당과	65	209	0	78	29	9	390
총계	193	337	184	244	162	216	1,336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66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3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2번 토픽은 서로 일정 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번, 4번, 5번 토픽은 거리감이 있는 것을 확인함
- 실질적인 토픽 분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등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5개로 나타남

[그림 26]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27]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4유형이 45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1유형이 116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3,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토픽 4유형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표 23] 위원회별 비용주제 대상 의안 주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0	0	15	29	45
교육위원회	0	0	1	29	12	42
국방위원회	12	0	6	8	6	32
국토교통위원회	3	0	7	42	43	95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국회운영위원회	2	0	0	6	1	9
기타 (폐지포함)	0	1	1	9	6	17
기획재정위원회	1	194	122	8	4	3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6	1	2	34	23	7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0	1	17	16	34
법제사법위원회	21	0	0	37	1	59
보건복지위원회	13	0	21	57	51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8	0	5	20	26	59
여성가족위원회	4	0	3	3	3	13
외교통일위원회	0	0	2	2	3	7
정부위원회	10	24	10	31	4	79
정보위원회	0	0	1	0	1	2
행정안전위원회	6	37	18	89	52	202
환경노동위원회	19	0	20	43	12	94
총계	116	257	220	450	293	1,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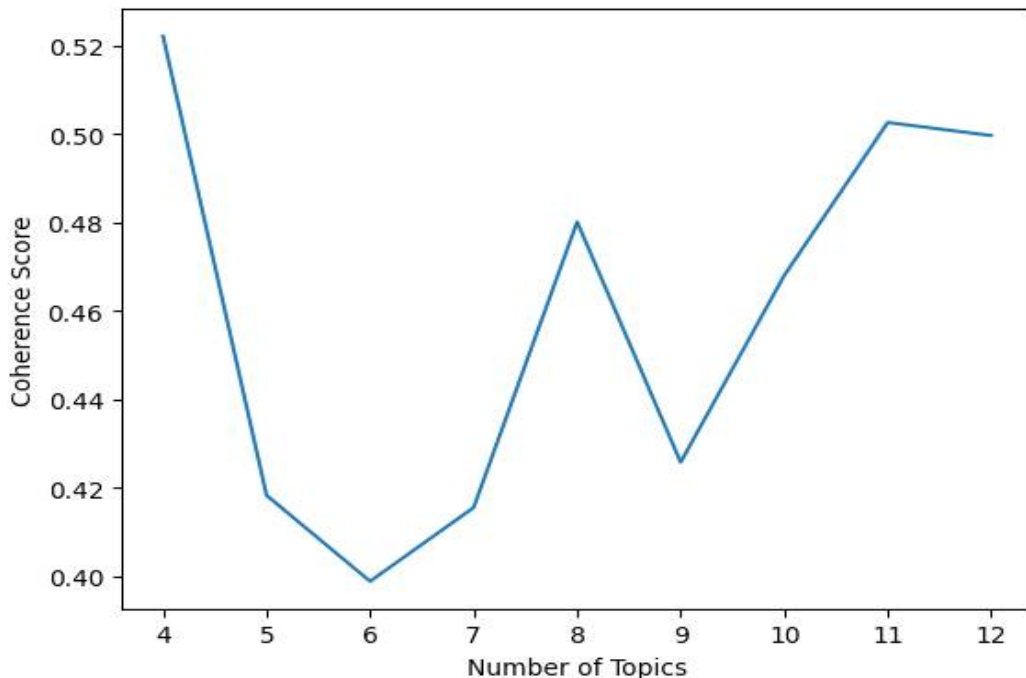
-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5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3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24]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115	0	90	450	291	946
세수 담당과	1	257	130	0	2	390
총계	116	257	220	450	293	1,336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 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2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없으며, 이를 통해 적합한 유형 분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4개로 나타남

[그림 28]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29]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74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2유형이 219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에서 토픽 3유형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표 25] 위원회별 비용주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4	0	39	2	45
교육위원회	4	0	35	3	42
국방위원회	9	0	22	1	32
국토교통위원회	23	0	68	4	95
국회운영위원회	0	0	9	0	9
기타 (폐지포함)	3	0	12	2	17
기획재정위원회	56	151	14	108	3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9	5	60	2	7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0	32	0	34
법제사법위원회	6	0	53	0	59
보건복지위원회	34	0	106	2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8	1	43	7	59
여성가족위원회	1	0	12	0	13
외교통일위원회	2	0	5	0	7
정부위원회	2	25	50	2	79
정보위원회	0	0	2	0	2
행정안전위원회	28	33	113	28	202
환경노동위원회	18	4	70	2	94
총계	209	219	745	163	1,336

-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1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4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26]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154	14	739	39	946
세수 담당과	55	205	6	124	390
총계	209	219	745	163	1,336

2) 비용추계 대상 법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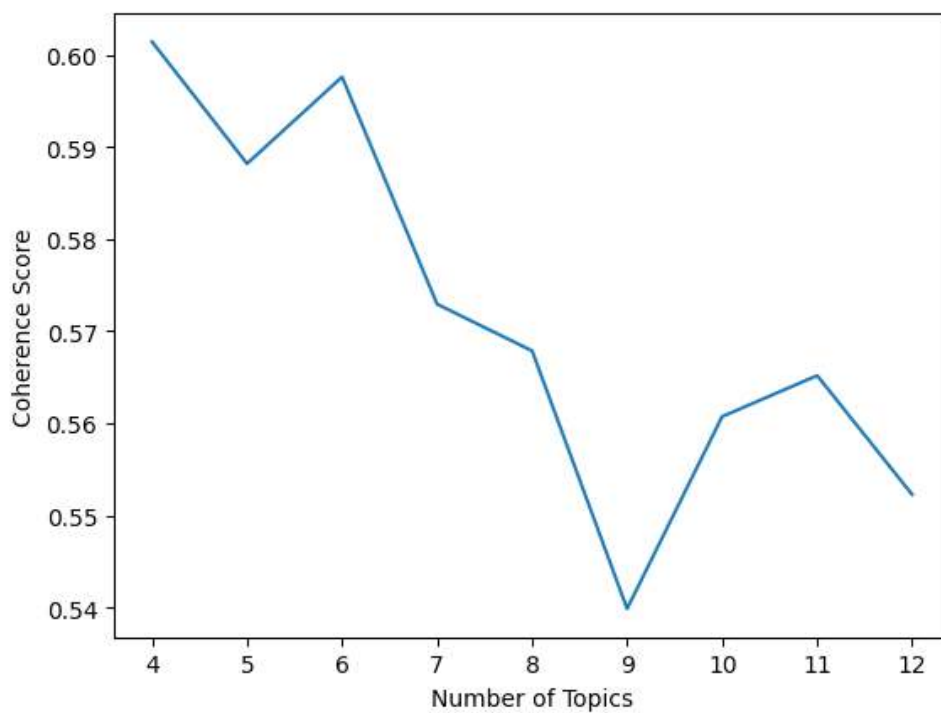
- 총 946개 비용추계 대상 법안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비용추계 대상 법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행정안전위원회 157건(16.6%), 보건복지위원회 142건(15.0%), 국토교통위원회 95건(10.0%)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정보위원회 2건(0.1%), 외교통일위원회 7건(0.5%), 국회운영위원회 9건(0.7%) 순으로 나타남

[표 27] 비용추계 대상 법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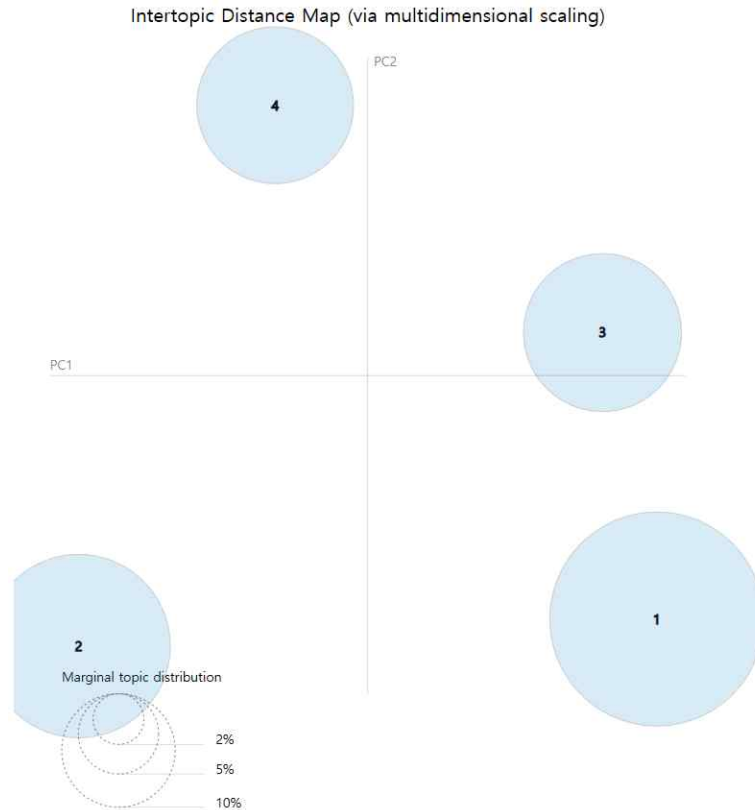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5(4.8)
	교육위원회	42(4.4)
	국방위원회	32(3.4)
	국토교통위원회	95(10.0)
	국회운영위원회	9(1.0)
	기타 (폐지포함)	16(1.7)
	기획재정위원회	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5(7.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3.6)
	법제사법위원회	59(6.2)
	보건복지위원회	142(1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9(6.2)
	여성가족위원회	13(1.4)
	외교통일위원회	7(0.7)
	정무위원회	55(5.8)
	정보위원회	2(0.2)
	행정안전위원회	157(16.6)
	환경노동위원회	94(9.9)
총계		946(100.0)

-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60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없으며, 이를 통해 적합한 유형 분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4개로 나타남

[그림 30]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31]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29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1유형이 165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1,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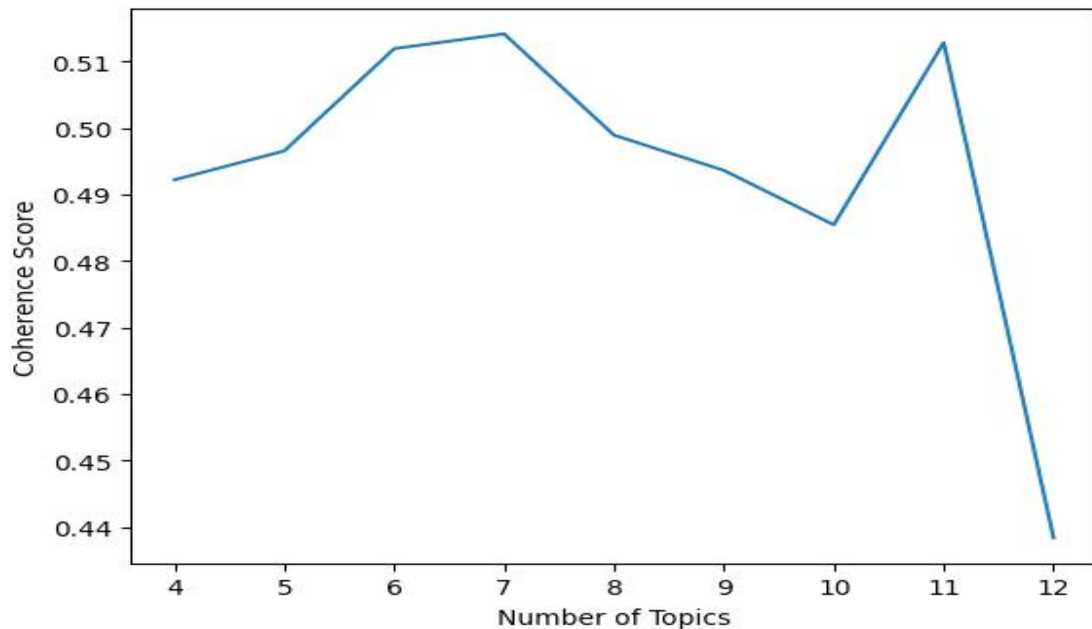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3,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에서 쏠리는 토픽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음

[표 28]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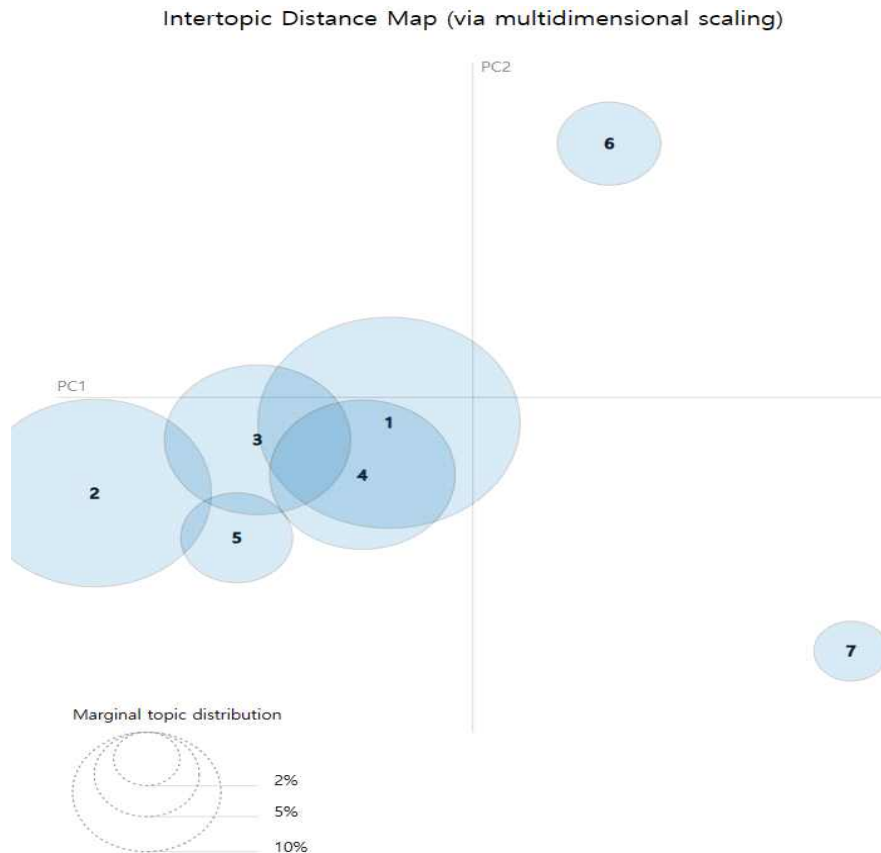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5	12	25	3	45
교육위원회	15	8	15	4	42
국방위원회	1	5	10	16	32
국토교통위원회	12	28	27	28	95
국회운영위원회	7	1	1	0	9
기타 (폐지포함)	2	5	4	5	16
기획재정위원회	2	1	3	4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8	17	31	19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5	15	8	34
법제사법위원회	8	5	18	28	59
보건복지위원회	46	51	13	32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6	8	24	21	59
여성가족위원회	0	0	9	4	13
외교통일위원회	0	0	6	1	7
정부위원회	21	15	12	7	55
정보위원회	2	0	0	0	2
행정안전위원회	13	17	49	78	157
환경노동위원회	11	13	35	35	94
총계	165	191	297	293	946

-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7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1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2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2번, 3번, 4번, 5번 토픽 간 서로 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토픽 유형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실질적 토픽 분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등 3가지로 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7개로 나타남

[그림 32]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33]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5유형이 30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1, 2, 6유형이 30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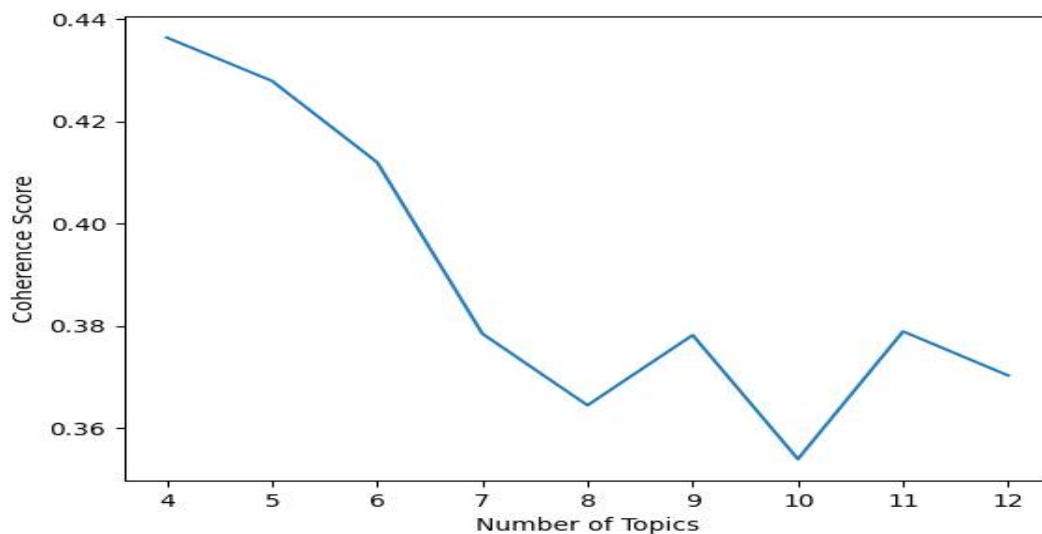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5,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회에서 토픽 5유형과 7유형으로
쏠리고 있었음

[표 29]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2	8	6	9	4	15	45
교육위원회	0	0	19	7	7	0	9	42
국방위원회	4	1	8	7	6	1	5	32
국토교통위원회	1	1	14	16	29	10	24	95
국회운영위원회	0	0	1	0	3	0	5	9
기타 (폐지포함)	0	0	6	2	5	0	3	16
기획재정위원회	0	0	4	0	5	0	1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	2	14	15	14	0	28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0	10	4	5	0	15	34
법제사법위원회	1	10	23	0	8	2	15	59
보건복지위원회	0	4	23	13	64	3	35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3	4	7	12	13	1	19	59
여성가족위원회	0	0	2	0	7	0	4	13
외교통일위원회	0	0	2	0	1	1	3	7
정부위원회	0	0	9	3	26	6	11	55
정보위원회	0	0	0	0	1	0	1	2
행정안전위원회	18	4	20	41	51	1	22	157
환경노동위원회	0	2	14	19	48	1	10	94
총계	30	30	184	145	302	30	225	946

-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 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44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4번 토픽 간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나, 토픽 간 공유 영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통해, 적합한 유형 분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4개로 나타남

[그림 34]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35]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34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4유형이 180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2,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0]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0	10	30	5	45
교육위원회	8	13	12	9	42
국방위원회	12	3	10	7	32
국토교통위원회	17	13	40	25	95
국회운영위원회	1	2	6	0	9
기타 (폐지포함)	2	2	12	0	16
기획재정위원회	1	2	3	4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6	19	23	7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9	24	1	34
법제사법위원회	0	5	25	29	59
보건복지위원회	44	24	46	28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8	9	31	11	59
여성가족위원회	6	2	2	3	13
외교통일위원회	1	2	4	0	7
정무위원회	18	14	20	3	55
정보위원회	0	1	1	0	2
행정안전위원회	16	69	41	31	157
환경노동위원회	41	22	14	17	94
총계	201	221	344	180	946

3. 미첨부3호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 미첨부3호 대상 의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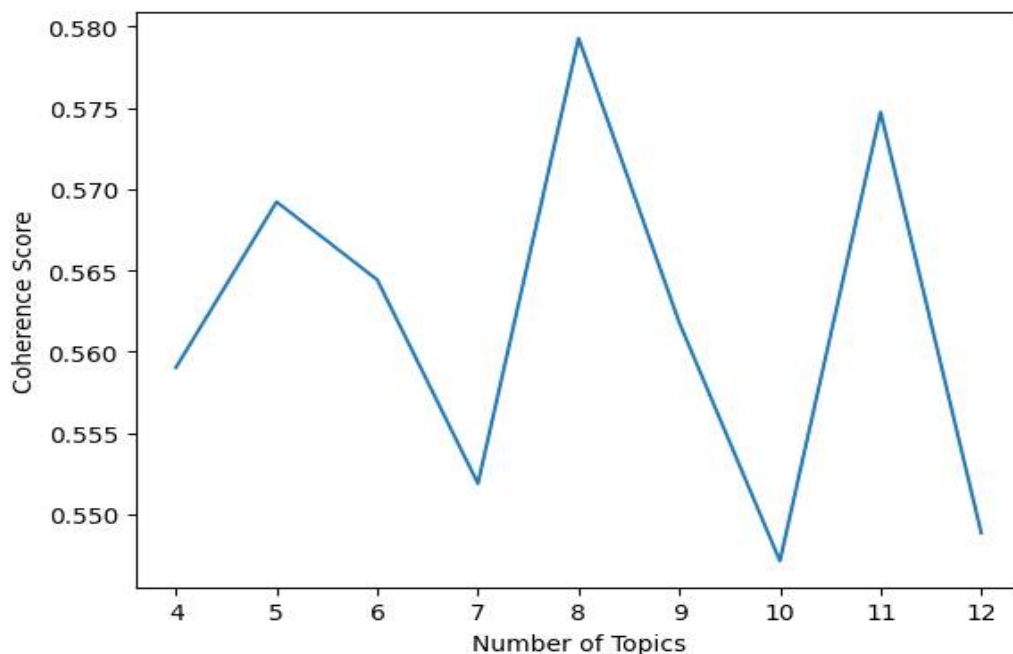
- 총 643개 미첨부3호 대상 의안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119건(18.5%), 보건복지위원회 80건(12.4%),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66건(10.3%)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2건(0.3%), 외교통일위원회 5건(0.8%),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10건(1.6%) 순으로 나타남
-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수는 법안 담당과 521건(81.0%), 세수 담당과 122건(19.0%)으로 나타남

[표 31] 미첨부3호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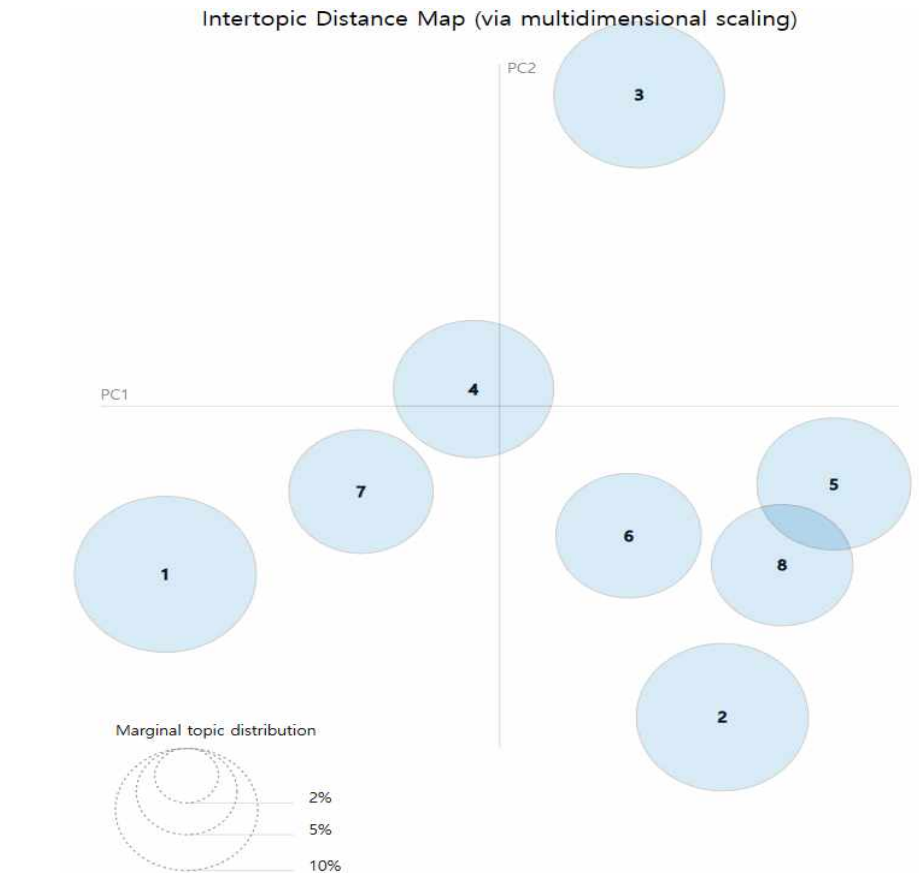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2.8)
	교육위원회	35(5.4)
	국방위원회	10(1.6)
	국토교통위원회	66(10.3)
	국회운영위원회	2(0.3)
	기타 (폐지포함)	9(1.4)
	기획재정위원회	119(18.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5(5.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6(5.6)
	법제사법위원회	18(2.8)
	보건복지위원회	80(1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0(9.3)
	여성가족위원회	10(1.6)
	외교통일위원회	5(0.8)
	정무위원회	20(3.1)
	행정안전위원회	66(10.3)
	환경노동위원회	54(8.4)
담당 과별	법안 담당과	521(81.0)
	세수 담당과	122(19.0)
총계		643(100.0)

-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8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8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DA 토픽 시각화 결과는 각 토픽의 크기와 상대적 거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토픽에 비해 크기가 클수록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의미함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많을수록 유사한 의미를 지닌 토픽으로 분류하게 됨
- 1번, 2번, 3번 토픽이 타 토픽들에 비해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각 토픽 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5번 토픽과 8번 토픽은 약간의 영역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5번, 8번) 유형이 결합한 7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8개로 나타남

[그림 36]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37]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5유형이 12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4유형이 52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2,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3,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위원회별 쏠리는 토픽 유형이 나타나고 있었음

[표 32]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7	0	3	0	2	3	2	18
교육위원회	5	3	4	1	4	6	7	5	35
국방위원회	1	0	3	2	1	2	1	0	10
국토교통위원회	11	3	3	5	10	7	14	13	66
국회운영위원회	0	1	0	0	0	0	0	1	2
기타 (폐지포함)	2	0	1	2	1	1	0	2	9
기획재정위원회	1	11	7	2	47	27	1	23	11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3	7	1	2	2	5	0	5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12	5	5	0	0	9	3	36
법제사법위원회	4	5	3	1	0	3	0	2	18
보건복지위원회	11	12	14	12	6	14	5	6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6	5	3	3	21	6	12	4	60
여성가족위원회	0	1	0	1	4	0	2	2	10
외교통일위원회	1	0	4	0	0	0	0	0	5
정부위원회	0	3	6	0	7	0	2	2	20
행정안전위원회	4	2	7	4	20	0	4	25	66
환경노동위원회	6	19	5	9	3	5	4	3	54
총계	68	91	66	52	126	78	64	98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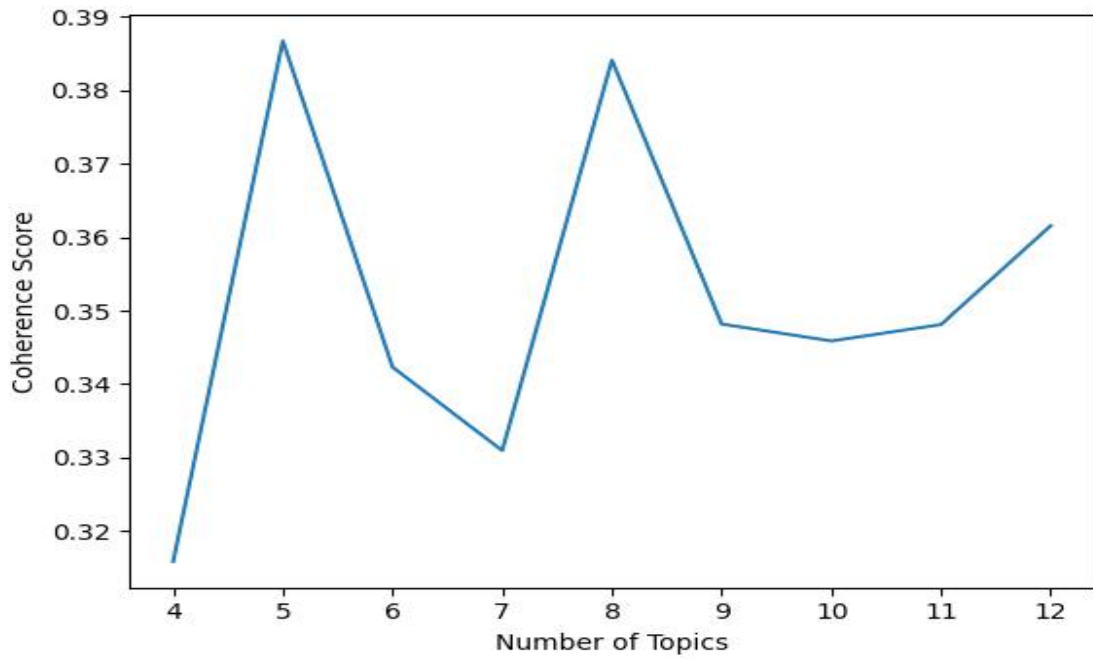
-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8유형, 2유형, 1유형, 5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5유형, 6유형, 8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었음

[표 33]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68	80	59	51	68	51	63	81	521
세수 담당과	0	11	7	1	58	27	1	17	122
총계	68	91	66	52	126	78	64	98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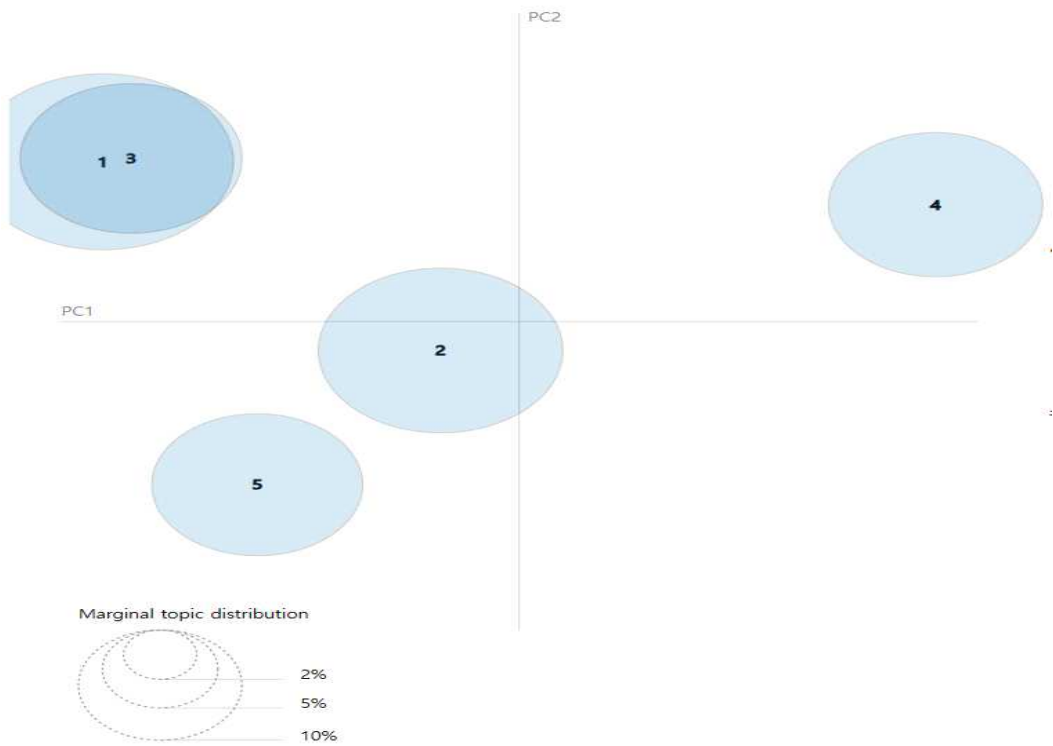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38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및 2번 토픽은 타 토픽들에 비해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토픽과 3번 토픽은 많은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의 재분류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1번, 3번) 유형이 결합한 4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5개로 나타남

[그림 38]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39]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LDA 토픽 시각화 결과

Intertopic Distance Map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2유형이 15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3유형이 89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2,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4]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3	6	0	3	6	18
교육위원회	3	6	1	11	14	35
국방위원회	6	1	0	2	1	10
국토교통위원회	4	32	9	12	9	66
국회운영위원회	2	0	0	0	0	2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기타 (폐지포함)	2	4	1	1	1	9
기획재정위원회	24	9	58	5	23	11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	8	2	12	11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12	0	9	5	36
법제사법위원회	1	3	1	9	4	18
보건복지위원회	14	16	2	25	23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	14	0	22	4	60
여성가족위원회	4	5	0	0	1	10
외교통일위원회	1	3	0	1	0	5
정부위원회	5	6	5	2	2	20
행정안전위원회	9	24	10	5	18	66
환경노동위원회	20	5	0	11	18	54
총계	130	154	89	130	140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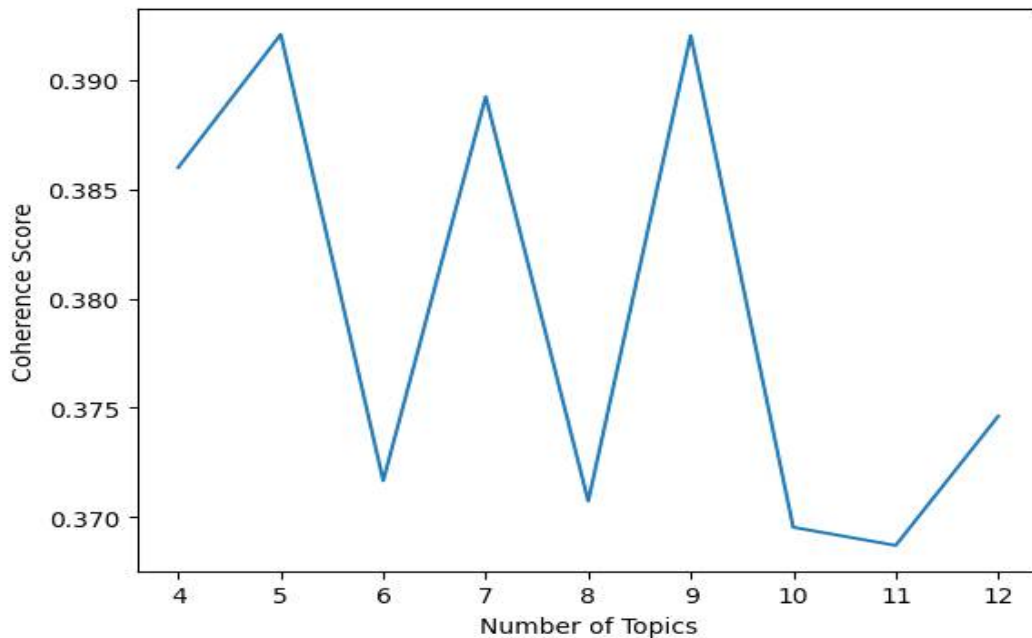
-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2유형, 4유형, 5유형, 1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 5유형, 1유형, 4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35]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112	144	25	124	116	521
세수 담당과	18	10	64	6	24	122
총계	130	154	89	130	140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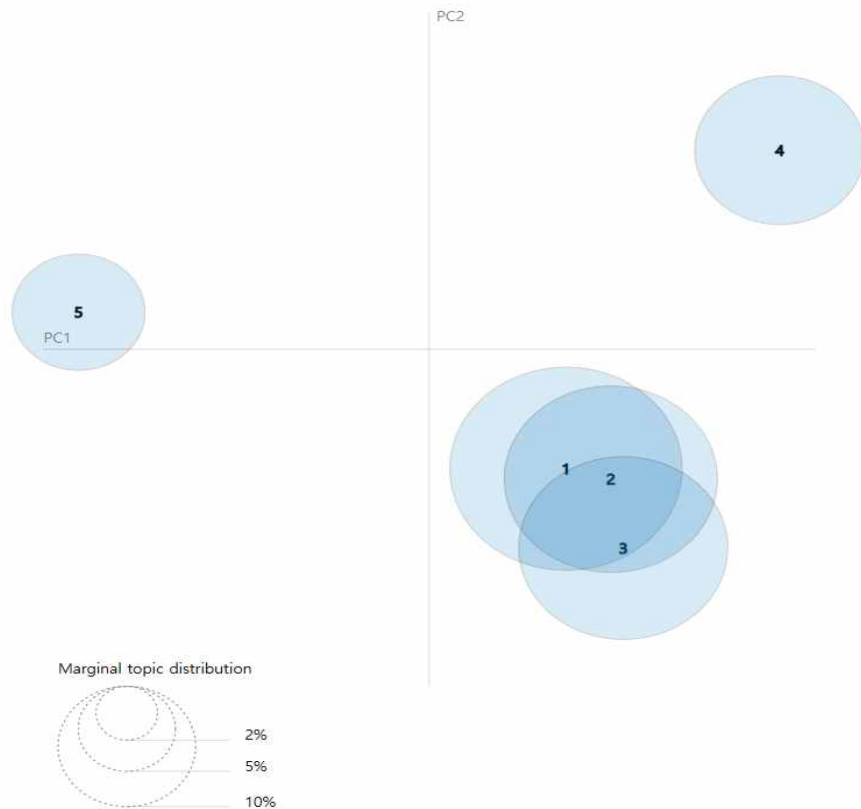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39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2번, 3번 토픽은 타 토픽들에 비해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2번, 3번 토픽은 많은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의 재분류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 토픽 유형 분류는 (1번, 2번, 3번) 유형이 결합한 3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유형 분류 적합 토픽 분류 수는 5개로 나타남

[그림 40]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41]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LDA 토픽 시각화 결과

Intertopic Distance Map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5유형이 21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2유형이 68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3,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6]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0	7	7	3	18
교육위원회	0	0	20	11	4	35
국방위원회	5	0	2	3	0	10
국토교통위원회	7	0	24	5	30	66
국회운영위원회	0	0	0	0	2	2
기타 (폐지포함)	0	0	1	3	5	9
기획재정위원회	1	61	13	8	36	11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0	0	2	10	13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0	0	12	23	36
법제사법위원회	1	1	4	10	2	18
보건복지위원회	5	1	17	41	16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8	0	9	9	34	60
여성가족위원회	0	0	2	6	2	10
외교통일위원회	1	0	0	0	4	5
정부위원회	1	0	6	3	10	20
행정안전위원회	30	4	10	5	17	66
환경노동위원회	4	1	21	14	14	54
총계	75	68	138	147	215	643

-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5유형, 4유형, 3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 5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37]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73	7	126	142	173	521
세수 담당과	2	61	12	5	42	122
총계	75	68	138	147	215	643

2) 미첨부3호 유형 대상 법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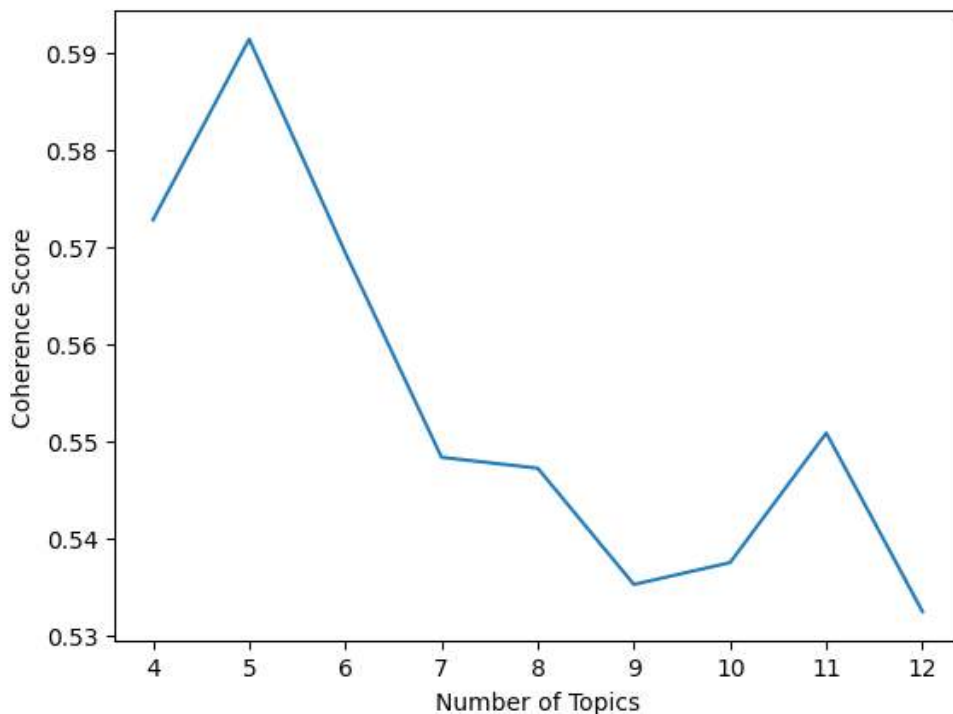
- 총 521개 미첨부3호 대상 법안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보건복지위원회 80건(15.4%), 국토교통위원회 66건(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0건(11.5%)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2건(0.4%), 외교통일위원회 5건(1.0%),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10건(1.9%) 순으로 나타남

[표 38] 미첨부3호 대상 법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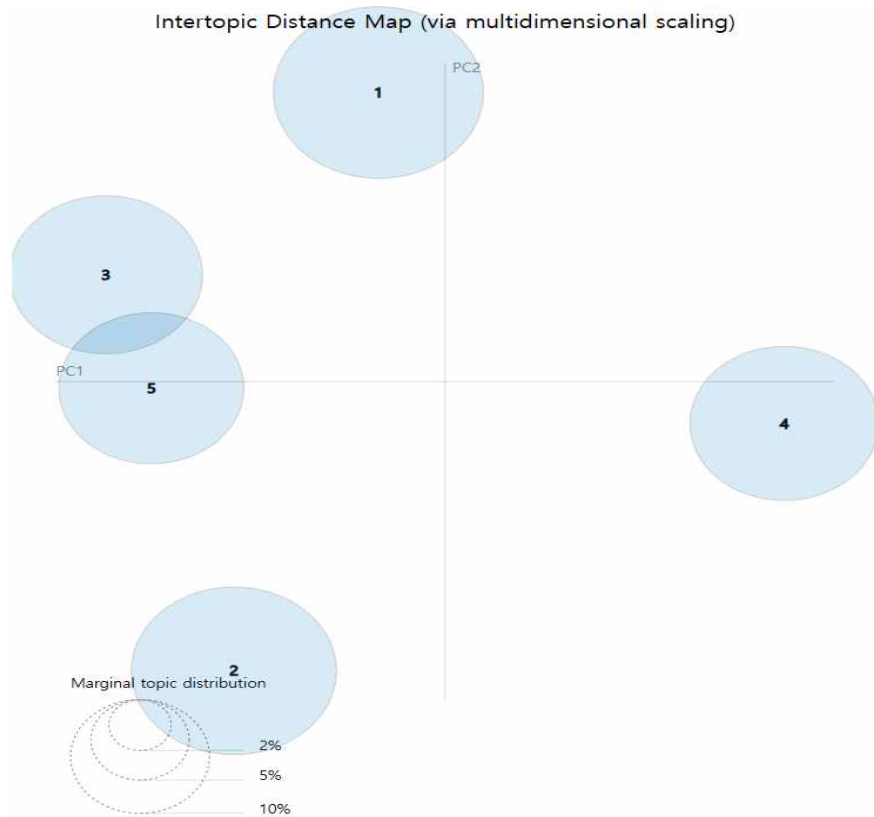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3.5)
	교육위원회	35(6.7)
	국방위원회	10(1.9)
	국토교통위원회	66(12.7)
	국회운영위원회	2(0.4)
	기타 (폐지포함)	9(1.8)
	기획재정위원회	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5(6.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6(6.9)
	법제사법위원회	18(3.5)
	보건복지위원회	80(15.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0(11.5)
	여성가족위원회	10(1.9)
	외교통일위원회	5(1.0)
	정무위원회	14(2.7)
	행정안전위원회	59(11.3)
	환경노동위원회	54(10.4)
총계		521(100.0)

-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9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및 2번 토픽은 타 토픽들에 비해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3번, 5번 토픽은 일정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의 재분류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3번, 5번) 유형이 결합한 4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한 토픽 분류 수는 5개로 나타남

[그림 42]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43]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2유형이 12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5유형이 74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3,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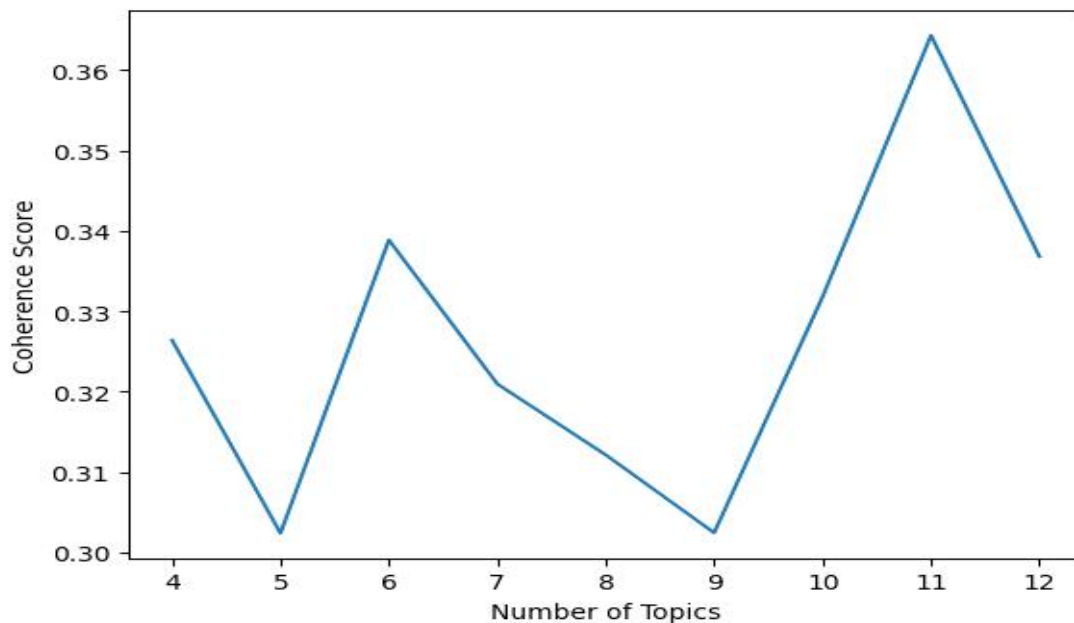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9]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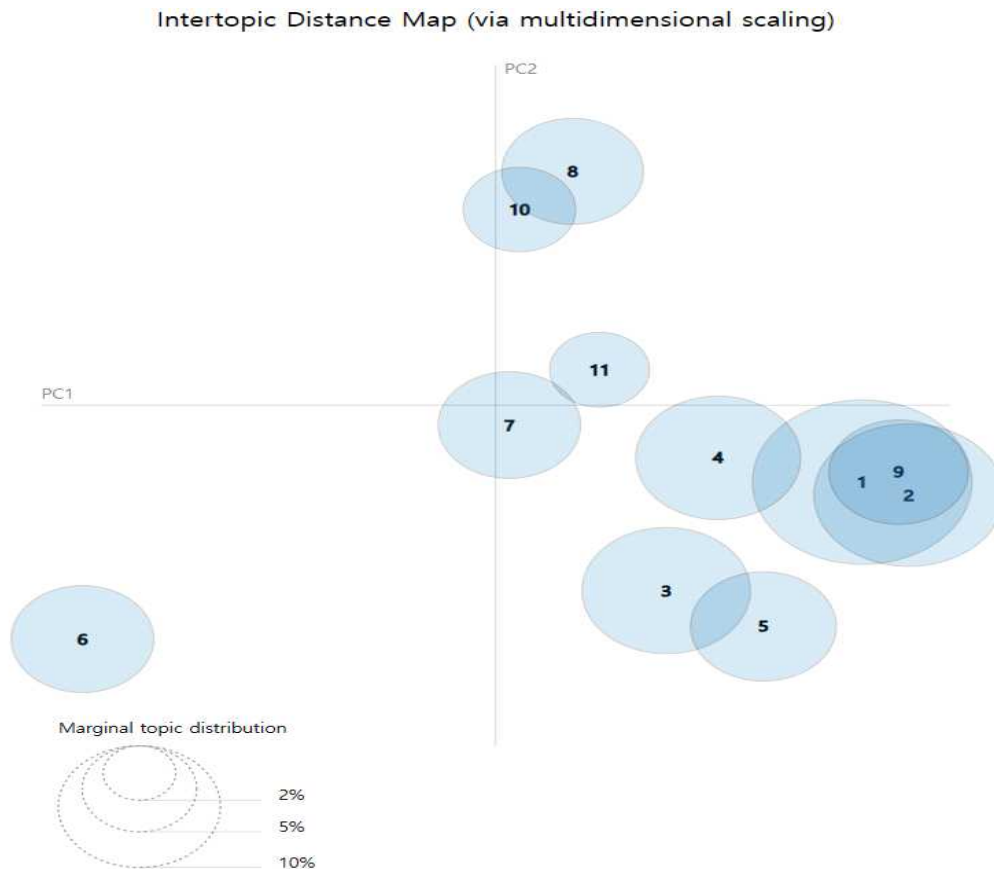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0	6	3	7	2	18
교육위원회	8	7	9	8	3	35
국방위원회	0	1	1	2	6	10
국토교통위원회	11	33	6	8	8	66
국회운영위원회	1	0	1	0	0	2
기타 (폐지포함)	0	3	2	1	3	9
기획재정위원회	2	7	1	0	0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6	6	8	7	8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10	3	15	5	36
법제사법위원회	2	2	3	4	7	18
보건복지위원회	13	9	12	35	11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18	14	14	6	8	60
여성가족위원회	2	4	2	1	1	10
외교통일위원회	4	0	1	0	0	5
정부위원회	1	12	0	1	0	14
행정안전위원회	2	7	35	8	7	59
환경노동위원회	11	7	11	20	5	54
총계	84	128	112	123	74	521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11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36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토픽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2번, 4번, 9번과 3번, 5번 그리고 7번과 11번 마지막으로 8번과 10번 토픽은 일정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의 재분류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1번, 2번, 4번, 9번), (3번, 5번), 6번, (7번, 11번), (8번, 10번) 유형이 결합한 5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유형 분류의 적합한 토픽 분류 수는 11개로 나타남

[그림 44]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45]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11유형이 10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3, 6유형이 25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 4, 8, 9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9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5,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10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2, 10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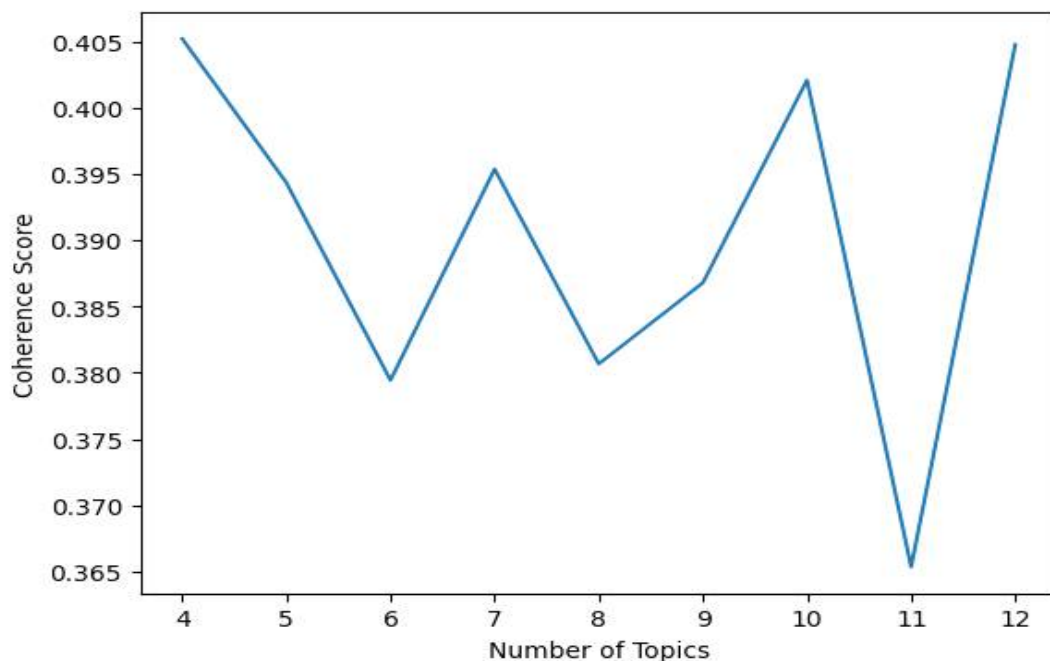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1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1,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1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0]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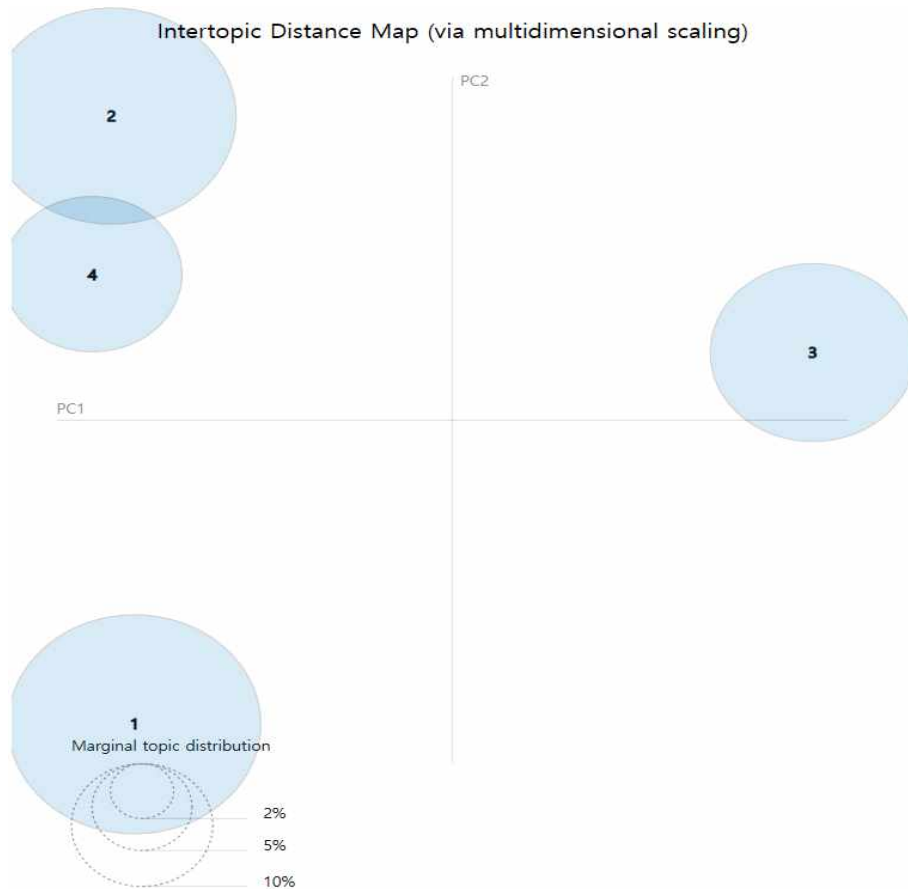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	10유형	11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0	1	3	0	2	1	6	3	0	0	2	18
교육위원회	1	5	4	1	1	0	7	9	1	0	6	35
국방위원회	2	0	0	2	0	1	0	2	2	0	1	10
국토교통위원회	10	3	3	6	4	1	1	1	20	2	15	66
국회운영위원회	0	0	0	0	1	0	1	0	0	0	0	2
기타 (폐지포함)	0	0	0	0	0	0	1	2	3	1	2	9
기획재정위원회	3	0	0	1	0	1	2	0	2	0	1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0	1	5	2	1	5	3	4	2	8	4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	0	0	1	2	4	13	1	4	8	36
법제사법위원회	0	6	0	2	0	0	2	1	0	6	1	18
보건복지위원회	8	12	0	10	10	4	4	15	2	5	10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3	1	0	2	5	4	9	4	8	2	22	60
여성가족위원회	3	0	0	0	0	0	1	3	1	0	2	10
외교통일위원회	0	0	1	0	1	0	2	0	0	0	1	5
정무위원회	3	1	0	0	0	3	4	0	1	2	0	14
행정안전위원회	5	3	6	1	1	2	7	3	7	1	23	59
환경노동위원회	2	7	3	10	10	1	5	8	4	2	2	54
총계	41	42	25	37	37	25	59	68	54	33	100	521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405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2번 토픽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2번 토픽과 4번 토픽은 일정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 재분류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1번, (2번, 4번), 3번 유형 등 3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유형 분류 적합 토픽 분류 수는 4개로 나타남

[그림 46]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47]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4유형이 17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1유형이 86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3,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1]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3	6	4	5	18
교육위원회	5	9	16	5	35
국방위원회	1	4	1	4	10
국토교통위원회	17	22	9	18	66
국회운영위원회	0	0	1	1	2
기타 (폐지포함)	1	6	1	1	9
기획재정위원회	0	4	1	5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3	6	3	23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22	1	10	36
법제사법위원회	3	4	1	10	18
보건복지위원회	12	25	8	35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18	19	4	19	60
여성가족위원회	1	4	1	4	10
외교통일위원회	4	0	1	0	5
정부위원회	3	4	1	6	14
행정안전위원회	7	19	25	8	59
환경노동위원회	5	13	14	22	54
총계	86	167	92	176	521

제 2 절 기존 분류 유형 및 토픽 분류 유형의 정합성 분석 결과

1. 전체 의안명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전체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 분석 결과, 위원회 설치 1유형, 행정기관 설치 5유형, 공공기관 설립 1유형과 5유형, 계획수립 5유형, 실태조사 1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3유형과 4유형, 지원사업 1유형과 4유형, 회계기금설치 5유형, 배·보상 3유형, 특례 3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법안명 분석결과 위원회 설치 2유형, 행정기관 설치 3유형, 공공기관 설립 3유형, 계획수립 7유형, 실태조사 4유형, 지원사업 1유형, 4유형, 6유형, 회계기금설치 3유형, 배·보상 6유형과 7유형, 특례 3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표 42]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책수단	의안명	법안명
1	위원회 설치	1(23)	2(17), 3(2), 5(1), 6(3)
2	행정기관 설치	1(1), 5(10)	1(2), 3(9)
3	공공기관 설립	1(31), 4(3), 5(21)	1(1), 2(8), 3(30), 4(2), 6(1), 7(7)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1(1), 4(1), 5(4)	1(1), 3(1), 7(5)
6	실태조사	1(11), 4(2), 5(1)	1(2), 4(9), 5(3)
7	시스템 구축·운영	3(3), 4(4)	4(1), 5(2)
8	지원사업	1(91), 2(76), 3(32), 4(88), 5(34)	1(54), 2(43), 3(36), 4(61), 5(18), 6(53), 7(42)
9	회계기금설치	1(8), 3(4), 4(7), 5(39)	2(3), 3(10), 4(3), 6(2), 7(1)
10	배·보상	1(4), 2(1), 3(29), 4(10), 5(9)	1(1), 2(10), 4(8), 6(18), 7(30)
11	특례	1(5), 2(5), 3(372), 4(2), 5(42)	1(10), 2(2), 3(27), 5(3), 6(13)
12	기타	2(1)	

2) 기능별 분류 및 전체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일반공공행정 1유형과 3유형, 공공질서 및 안전 4유형, 통일·외교 2유형과 4유형, 국방 4유형, 교육 3유형과 5유형, 문화 및 관광 1유형과 4유형, 환경 1~5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3유형과 4유형, 농림수산 4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1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과 5유형 등으로 매칭됨
- 법안명은 일반공공행정 5유형과 6유형, 공공질서 및 안전 7유형, 통일·외교 4유형과 5유형, 국방 4유형, 교육 2유형과 3유형, 문화 및 관광 2유형과 4유형, 환경 4유형, 6유형, 7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2유형, 6유형, 7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유형과 4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7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과 7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표 43] 기능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부업무기능	의안명	법안명
1	일반공공행정	1(175), 2(76), 3(162), 4(56), 5(89)	1(18), 2(98), 3(63), 4(38), 5(154), 6(105), 7(18)
2	공공질서 및 안전	1(3), 2(3), 3(3), 4(34), 5(16)	1(4), 4(4), 5(17), 6(2), 7(32)
3	통일·외교	1(4), 2(12), 4(15), 5(3)	1(3), 2(3), 3(3), 4(9), 5(11), 6(1), 7(4)
4	국방	1(26), 2(16), 3(22), 4(41), 5(10)	1(8), 2(13), 3(9), 4(44), 5(15), 6(18), 7(8)
5	교육	1(30), 2(25), 3(57), 4(36), 5(43)	1(29), 2(62), 3(106), 4(50), 5(18), 6(37), 7(33)
6	문화 및 관광	1(81), 2(9), 3(13), 4(36), 5(6)	1(15), 2(43), 3(16), 4(43), 5(3), 6(7), 7(19)
7	환경	1(74), 2(79), 3(79), 4(68), 5(74)	1(49), 2(9), 3(42), 4(91), 5(35), 6(76), 7(72)
8	사회복지	1(70), 2(98), 3(136), 4(107), 5(51)	1(55), 2(89), 3(54), 4(46), 5(46), 6(96), 7(76)
9	보건		
10	농림수산	1(39), 2(33), 3(40), 4(92), 5(43)	1(8), 2(64), 3(30), 4(47), 5(27), 6(36), 7(32)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1), 2(62), 3(36), 4(52), 5(42)	1(67), 2(42), 3(11), 4(55), 5(7), 6(21), 7(40)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94), 2(9), 3(26), 4(30), 5(14)	1(15), 2(34), 3(3), 4(37), 5(12), 6(7), 7(65)
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42), 2(57), 3(88), 4(62), 5(137)	1(35), 2(22), 3(105), 4(51), 5(50), 6(51), 7(72)
16	예비비		

2.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위원회 설치 1유형과 4유형, 행정기관 설치 4유형, 공공기관 설립 4유형과 5유형, 계획수립 3유형, 실태조사 3유형, 지원사업 1유형과 3유형, 배·보상 2유형, 특례 2유형 및 4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의안추계결과는 위원회 설치 4유형과 5유형, 행정기관 설치 4유형과 5유형, 공공기관 설립 4유형, 협의회 설립 4유형, 계획수립 4유형과 5유형, 실태조사 4유형과 5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4유형, 지원사업 4유형, 회계기금 2유형과 4유형, 배·보상 5유형, 특례 2유형과 3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의안산식은 위원회 설치 1유형과 3유형, 공공기관 설립 3유형, 협의회 설립 3유형, 계획수립 1유형, 2유형, 3유형, 실태조사 1유형, 3유형, 4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과 3유형, 지원사업 3유형, 회계기금 설치 1유형과 3유형, 특례 2유형과 4유형 등으로 매칭됨

[표 44]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책수단	의안명	의안추계결과	의안산식
1	위원회 설치	1(3), 2(1), 4(3), 5(2)	1(13), 3(2), 4(57), 5(132)	1(89), 2(9), 3(127), 4(9)
2	행정기관 설치	1(1), 4(7)	1(1), 3(1), 4(6), 5(5)	1(1), 3(6)
3	공공기관 설립	1(5), 2(3), 3(1) 4(16), 5(9), 6(2)	2(1), 3(1), 4(53)	2(3), 3(43)
4	협(의)회 설립		1(2), 4(21), 5(4)	2(6), 3(18), 4(3)
5	계획수립	2(1), 3(3)	1(5), 2(7), 3(2) 4(20), 5(89)	1(60), 2(43), 3(163), 4(15)
6	실태조사	1(1), 2(1), 3(2)	1(9), 2(1), 3(8) 4(31), 5(91)	1(44), 2(13), 3(199), 4(25)
7	시스템 구축·운영	1(1), 6(2)	1(4), 4(23), 5(12)	2(23), 3(70), 4(5)
8	지원사업	1(47), 2(7), 3(40) 4(5), 5(11), 6(2)	1(22), 2(25), 3(30) 4(169), 5(59)	1(20), 2(20), 3(214), 4(30)
9	회계기금설치	3(1)	1(2), 2(10), 4(14), 5(1)	1(45), 2(24), 3(92), 4(2)
10	배·보상	1(2), 2(14), 4(6), 6(1)	1(7), 3(4), 4(2), 5(12)	1(10), 2(3), 3(12), 4(7)
11	특례	1(4), 2(200), 4(78) 5(2), 6(10)	1(5), 2(76), 3(21) 4(10), 5(1)	1(15), 2(111), 3(2), 4(107)
12	기타			

- 법안명은 위원회 설치 3유형, 행정기관 설치 3유형, 공공기관 설립 1유형, 계획 수립 3유형, 실태조사 1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 지원사업 1유형과 4유형, 회계기금설치 2유형, 배·보상 3유형, 특례 4유형 등으로 매칭됨
- 법안추계결과는 위원회 설치 7유형, 행정기관 설치 5유형과 7유형, 협의회 설립 3유형, 계획수립 4유형과 7유형, 실태조사 4유형과 7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3유형과 7유형, 지원사업 5유형과 7유형, 회계기금 설치 5유형, 특례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법안산식은 위원회 설치 3유형, 공공기관 설립 3유형, 협의회 설립 2유형, 계획 수립 3유형, 실태조사 1유형과 3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 지원사업 1유형, 3유형, 4유형, 회계기금설치 3유형, 배·보상 1유형과 4유형 등으로 매칭됨

[표 45]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책수단	법안명	법안추계결과	법안산식
1	위원회 설치	3(9)	1(1), 2(1), 3(30), 4(32) 5(35), 6(5), 7(100)	1(5), 2(39), 3(147), 4(23)
2	행정기관 설치	1(5), 2(2), 3(36), 4(1)	1(1), 3(48), 4(34) 5(90), 6(8), 7(70)	2(3), 3(4)
3	공공기관 설립	1(18), 3(1)		2(1), 3(38), 4(4)
4	협(의)회 설립		3(12), 4(2), 5(5), 6(2), 7(3)	1(2), 2(10), 3(6), 4(1)
5	계획수립	2(1), 3(1)	1(3), 3(1), 4(28) 5(15), 6(1), 7(67)	1(1), 2(16), 3(77), 4(2)
6	실태조사	1(3), 2(1)	1(3), 3(5), 4(42) 5(14), 6(5), 7(70)	1(56), 2(28), 3(121), 4(12)
7	시스템 구축·운영	2(1)	3(13), 4(2), 5(4), 6(2), 7(18)	1(4), 2(42), 3(17), 4(8)
8	지원사업	1(21), 2(13), 3(14), 4(64)	1(5), 3(38), 4(47) 5(107), 6(13), 7(70)	1(68), 2(37), 3(72), 4(68)
9	회계기금설치	2(1)	4(2), 5(14), 7(1)	1(4), 2(13), 3(95), 4(25)
10	배·보상	1(1), 2(3), 3(16), 4(3)	2(1), 3(6), 4(1) 5(5), 6(4), 7(7)	1(8), 3(5), 4(8)
11	특례	4(7)	1(2), 3(5), 4(4), 5(12)	3(1), 4(1)
12	기타			

2) 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일반공공행정 4유형, 6유형, 7유형, 공공질서 및 안전 7유형, 통일·외교 7유형, 국방 2유형과 7유형, 교육 7유형, 문화 및 관광 7유형, 환경 1유형, 2유형, 7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5유형과 7유형, 농림수산 7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7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 6유형, 7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의안 추계결과는 일반공공행정 4유형과 6유형, 국방 1유형과 6유형, 교육 4유형과 6유형, 문화 및 관광 6유형, 환경 4유형과 6유형, 농림수산 4유형과 6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과 6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5유형과 6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4유형, 5유형 6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의안산식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침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통신 및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전반적 종류가 3유형과 5유형으로 매칭됨

[표 46] 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부업무기능	의안명	의안추계결과	의안산식
1	일반공공행정	1(11), 2(10), 3(41), 4(67), 5(4), 6(69), 7(202)	1(6), 2(37), 3(18), 4(89), 5(52), 6(202)	1(28), 2(33), 3(113), 4(28), 5(202)
2	공공질서 및 안전	1(1), 2(5), 3(1), 4(1), 6(1), 7(9)	1(2), 4(6), 5(1), 6(9)	3(9), 5(9)
3	통일·외교	1(2), 2(1), 3(1), 4(2), 6(1), 7(7)	3(2), 4(2), 5(3), 6(7)	1(2), 3(5), 5(7)
4	국방	1(1), 2(13), 3(10), 4(6), 6(2), 7(32)	1(12), 3(6), 4(8), 5(6), 6(32)	1(9), 3(22), 4(1), 5(32)
5	교육	1(6), 2(5), 3(8), 4(4), 5(9), 6(10), 7(42)	3(1), 4(29), 5(12), 6(42)	1(4), 3(35), 4(3), 5(42)
6	문화 및 관광	2(11), 3(2), 4(13), 5(4), 6(4), 7(34)	3(1), 4(17), 5(16), 6(34)	1(2), 3(32), 5(34)
7	환경	1(26), 2(25), 3(14), 4(10), 5(4), 6(15), 7(94)	1(19), 3(20), 4(43), 5(12), 6(94)	1(18), 2(4), 3(70), 4(2), 5(94)
8	사회복지	1(31), 2(21), 3(19), 4(21), 5(39), 6(24), 7(155)	1(17), 3(24), 4(60), 5(54), 6(155)	1(35), 3(118), 4(2), 5(155)
9	보건			
10	농림수산	1(10), 2(4), 3(19), 4(16), 5(13), 6(14), 7(76)	1(16), 2(1), 3(2), 4(34), 5(23), 6(76)	1(9), 2(5), 3(60), 4(2), 5(76)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2(4), 3(18), 4(13), 5(4), 6(8), 7(59)	1(8), 3(5), 4(20), 5(26), 6(59)	1(8), 2(1), 3(43), 4(7), 5(59)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12), 2(1), 3(9), 4(5), 5(12), 6(8), 7(47)	1(1), 3(1), 4(15), 5(30), 6(47)	1(4), 3(41), 4(2), 5(47)
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3), 2(14), 3(27), 4(16), 5(10), 6(25), 7(95)	1(3), 3(7), 4(42), 5(43), 6(95)	1(23), 3(68), 4(4), 5(95)
16	예비비			

- 법안명은 일반공공행정 4유형과 5유형, 공공질서 및 안전 1유형과 5유형, 통일·외교 3유형과 5유형, 국방 4유형과 5유형, 교육 1유형과 5유형, 문화 및 관광 5유형, 환경 3유형과 4유형, 5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2유형과 5유형, 농림수산 3유형과 5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유형, 4유형, 5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3유형과 5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2유형, 3유형, 4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법안추계결과는 일반공공행정 8유형, 국방 8유형, 교육 3유형과 8유형, 문화 및 관광 7유형과 8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5유형과 8유형, 농림수산 7유형과 8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8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8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법안산식은 일반공공행정 2유형과 5유형, 국방 5유형, 교육 5유형, 문화 및 관광 3유형과 5유형, 환경 2유형과 5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1유형, 3유형, 5유형, 농림수산 5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3유형과 5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과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표 47] 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부업무기능	법안명	법안추계결과	법안산식
1	일반공공행정	1(13), 2(17), 3(49), 4(78), 5(157)	1(18), 2(4), 3(20), 4(41), 5(51), 6(1), 7(22), 8(157)	1(16), 2(69), 3(41), 4(31), 5(157)
2	공공질서 및 안전	1(7), 2(1), 3(1), 5(9)	3(1), 5(3), 7(5), 8(9)	1(1), 2(2), 3(6), 5(9)
3	통일·외교	3(6), 4(1), 5(7)	3(2), 5(1), 6(1), 7(3), 8(7)	1(1), 2(2), 3(4), 5(7)
4	국방	1(1), 2(5), 3(10), 4(16), 5(32)	1(4), 2(1), 3(8), 4(7), 5(6), 6(1), 7(5), 8(32)	1(12), 2(3), 3(10), 4(7), 5(32)
5	교육	1(15), 2(8), 3(15), 4(4), 5(42)	3(19), 4(7), 5(7), 7(9), 8(42)	1(8), 2(13), 3(12), 4(9), 5(42)
6	문화 및 관광	1(6), 2(5), 3(15), 4(8), 5(34)	3(10), 4(4), 5(5), 7(15), 8(34)	2(9), 3(24), 4(1), 5(34)
7	환경	1(11), 2(13), 3(35), 4(35), 5(94)	2(2), 3(14), 4(19), 5(48), 6(1), 7(10), 8(94)	1(41), 2(22), 3(14), 4(17), 5(94)
8	사회복지	1(46), 2(51), 3(22), 4(36), 5(155)	2(4), 3(25), 4(13), 5(71), 6(3), 7(39), 8(155)	1(50), 2(26), 3(48), 4(31), 5(155)
9	보건			
10	농림수산	1(8), 2(17), 3(31), 4(19), 5(75)	1(2), 2(2), 3(14), 4(15), 5(14), 7(28), 8(75)	1(26), 2(19), 3(23), 4(7), 5(7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 2(8), 3(24), 4(21), 5(59)	1(3), 2(4), 3(7), 4(12), 5(13), 6(1), 7(19), 8(59)	1(8), 2(9), 3(31), 4(11), 5(59)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7), 2(12), 3(25), 4(3), 5(47)	1(1), 2(2), 3(8), 4(6), 5(10), 6(4), 7(16), 8(47)	2(11), 3(31), 4(5), 5(47)
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2), 2(28), 3(27), 4(28), 5(95)	1(1), 2(1), 3(14), 4(16), 5(29), 6(10), 7(24), 8(95)	1(17), 2(13), 3(40), 4(25), 5(95)
16	예비비			

3.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지원사업 2유형과 7유형, 특례는 5유형으로 매칭되었음
- 재정수반요인은 위원회 설치 1유형과 5유형, 행정기관 설치 2유형, 공공기관 설립 5유형, 계획수립 2유형과 4유형, 실태조사 1유형과 2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과 5유형, 지원사업 1유형, 2유형, 4유형, 5유형, 회계기금설치 4유형, 배·보상 1유형과 5유형, 특례 3유형과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사유는 위원회 설치 1유형과 3유형, 행정기관 설치 5유형, 공공기관 설립 3유형과 5유형, 계획수립 3유형과 5유형, 실태조사 3유형과 5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3유형과 4유형, 지원사업 4유형과 5유형, 회계기금설치 3유형, 배·보상 4유형, 특례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및 정책수단별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지원사업 유형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보다 넓은 의안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지원사업 매칭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유형은 공통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2유형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4유형은 산업 지원 방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5유형은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에 대한 지원 방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지원사업 매칭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음
 - 4유형은 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추계 곤란으로 나타남
 - 5유형은 추상적인 대상 기준 및 범위로 인한 규모 추정 곤란으로 나타남

[표 48]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책수단	의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1	위원회 설치	7(1)	1(10), 2(9), 3(8) 4(7), 5(19)	1(29), 2(6), 3(27) 4(26), 5(15)
2	행정기관 설치	3(1)	1(4), 2(10), 4(5), 5(6)	1(8), 3(5), 4(4), 5(13)
3	공공기관 설립	5(1)	1(1), 2(7), 3(1) 4(5), 5(14)	1(4), 2(2), 3(16) 4(8), 5(15)
4	협(의)회 설립		2(1), 4(1)	3(9), 4(3), 5(5)
5	계획수립		1(3), 2(37), 3(4) 4(12), 5(8)	1(44), 2(10), 3(50) 4(31), 5(63)
6	실태조사	4(2)	1(19), 2(26), 3(4) 4(7), 5(5)	1(24), 2(15), 3(37) 4(32), 5(47)
7	시스템 구축·운영		2(7), 3(1), 4(6), 5(7)	1(7), 2(11), 3(20) 4(14), 5(9)
8	지원사업	1(3), 2(21), 3(12) 4(8), 6(3), 7(16), 8(6)	1(62), 2(104), 3(5) 4(63), 5(44)	1(46), 2(4), 3(82) 4(106), 5(134)
9	회계기금설치	7(3)	1(2), 2(8), 4(15), 5(2)	1(9), 2(2), 3(29) 4(19), 5(19)
10	배·보상	1(2), 2(5), 3(2) 5(1), 6(1), 8(3)	1(17), 2(3), 3(1) 4(2), 5(11)	1(7), 2(2), 3(6) 4(23), 5(15)
11	특례	1(1), 5(58), 6(4), 8(1)	1(7), 2(11), 3(16) 4(6), 5(20)	1(12), 2(9), 3(9) 4(9), 5(25)
12	기타			

- 법안명은 지원사업 2유형, 배·보상 4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재정수반요인은 위원회 설치 7유형, 행정기관 설치 7유형, 계획수립 11유형, 실태조사 11유형, 지원사업 8유형과 11유형 등으로 매칭됨
- 미첨부사유는 위원회 설치 2유형과 4유형, 행정기관 설치 3유형, 계획수립 2유형과 3유형, 실태조사 2유형과 4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과 3유형, 지원사업 2유형과 4유형, 회계기금 설치 2유형과 4유형, 배·보상 4유형, 특례 1유형, 2유형, 4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및 정책수단별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지원사업 유형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보다 넓은 의안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지원사업 매칭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음
 - 8유형은 공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인한 지원 발생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11유형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지원사업 매칭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음
 - 2유형은 추가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나타남
 - 4유형은 기존 지급 대상 외 추가 대상에 대한 추계 불가로 나타남

[표 49]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책수단	법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1	위원회 설치	2(1)	1(3), 2(2), 3(2), 4(8), 5(2), 6(3), 7(18), 8(3), 9(1), 10(7), 11(4)	1(17), 2(26), 3(19), 4(33)
2	행정기관 설치	2(1)	1(2), 5(3), 7(13), 11(7)	1(8), 2(7), 3(13), 4(7)
3	공공기관 설립	2(1)	1(1), 2(2), 3(3), 4(2), 5(1), 6(1), 7(8), 8(1), 9(2), 10(1), 11(4)	1(9), 2(9), 3(9), 4(7)
4	협(의)회 설립		1(1), 7(1)	1(3), 2(8), 3(3), 4(1)
5	계획수립		1(8), 2(2), 5(3) 6(3), 7(4), 8(4) 9(9), 10(3), 11(23)	1(34), 2(66), 3(45), 4(36)
6	실태조사	2(2)	1(7), 2(5), 3(2), 4(3), 5(8), 6(4), 7(5), 8(5), 9(2), 10(6), 11(13)	1(21), 2(48), 3(23), 4(39)
7	시스템 구축·운영		1(2), 2(2), 3(2) 4(2), 6(3), 7(3) 9(1), 10(1), 11(5)	1(7), 2(24), 3(14), 4(5)
8	지원사업	1(11), 2(20), 3(15) 4(9), 5(14)	1(24), 2(17), 3(5) 4(11), 5(25), 6(14) 7(26), 8(49), 9(22) 10(15), 11(53)	1(59), 2(128) 3(72), 4(102)
9	회계기금설치	2(3)	5(6), 6(5), 7(5) 8(4), 9(4), 11(3)	1(8), 2(30) 3(19), 4(21)
10	배·보상	2(1), 3(1), 4(10), 5(2)	1(4), 2(5), 3(3), 4(5), 6(2), 7(1), 8(2), 9(3), 10(1), 11(8)	1(5), 2(6), 3(8), 4(34)
11	특례	1(3), 2(1), 3(1)	1(5), 2(3), 3(1), 5(1), 7(5), 8(1), 9(9), 11(6)	1(10), 2(10), 3(6), 4(12)
12	기타			

2) 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일반공공행정 5유형, 8유형, 9유형, 국방 9유형, 교육 9유형, 문화 및 관광 2유형과 9유형, 환경 2유형과 9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9유형, 농림수산 1유형과 9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과 9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9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7유형, 8유형, 9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재정수반요인은 일반공공행정 2유형과 6유형, 국방 6유형, 교육 5유형과 6유형, 문화 및 관광 2유형과 6유형, 환경 1유형과 6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4유형, 5유형, 6유형, 농림수산 6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유형, 4유형, 6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6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2유형과 6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사유는 일반공공행정 1유형과 6유형, 통일·외교 5유형과 6유형, 국방 6유형, 교육 3유형과 6유형, 문화 및 관광 5유형과 6유형, 환경 6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4유형과 6유형, 농림수산 6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과 6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6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 5유형, 6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표 50] 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부업무기능	의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1	일반공공행정	1(4), 2(2), 3(7), 4(4), 5(20), 7(4), 8(25), 9(66)	1(9), 2(24), 3(10), 4(5), 5(18), 6(66)	1(30), 2(4), 3(10), 4(5), 5(17), 6(66)
2	공공질서 및 안전	2(1), 8(1), 9(2)	1(2), 6(2)	5(2), 6(2)
3	통일·외교	1(1), 3(4), 9(5)	1(1), 2(3), 4(1), 6(5)	1(1), 5(4), 6(5)
4	국방	1(1), 3(3), 4(2), 5(1), 6(2), 7(1), 9(10)	1(6), 2(1), 4(2), 5(1), 6(10)	1(5), 3(2), 4(3), 6(10)
5	교육	1(5), 2(3), 3(4), 4(1), 5(4), 6(6), 7(7), 8(5), 9(35)	1(3), 2(6), 3(1), 4(11), 5(14), 6(35)	3(20), 4(11), 5(4), 6(35)
6	문화 및 관광	1(2), 2(12), 3(5), 4(5), 7(9), 8(3), 9(36)	1(10), 2(12), 4(9), 5(5), 6(36)	1(1), 4(12), 5(23), 6(36)
7	환경	1(6), 2(19), 3(5), 4(9), 5(3), 6(5), 7(4), 8(3), 9(54)	1(20), 2(5), 4(11), 5(18), 6(54)	1(4), 2(1), 3(21), 4(14), 5(14), 6(54)
8	사회복지	1(11), 2(13), 3(14), 4(13), 5(10), 6(14), 7(7), 8(8), 9(90)	1(18), 2(21), 3(2), 4(25), 5(24), 6(90)	1(5), 2(1), 3(19), 4(47), 5(18), 6(90)
9	보건			
10	농림수산	1(13), 2(7), 3(1), 4(2), 5(2), 6(5), 8(5), 9(35)	1(2), 2(8), 3(2), 4(12), 5(11), 6(35)	1(10), 3(2), 4(10), 5(13), 6(3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 2(5), 3(3), 4(3), 5(21), 6(6), 7(12), 8(4), 9(60)	1(20), 2(14), 4(22), 5(4), 6(60)	1(8), 3(9), 4(9), 5(34), 6(60)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1), 2(7), 4(3), 6(2), 7(3), 8(2), 9(18)	1(3), 2(6), 4(3), 5(6), 6(18)	1(1), 3(7), 4(7), 5(3), 6(18)
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1), 2(3), 3(3), 4(5), 5(10), 6(7), 7(14), 8(13), 9(66)	1(4), 2(32), 3(9), 4(12), 5(9), 6(66)	1(7), 3(24), 4(5), 5(30), 6(66)
16	예비비			

- 법안명은 일반공공행정 3유형과 6유형, 국방 6유형, 문화 및 관광 4유형과 6유형, 환경 4유형과 6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4유형과 6유형, 농림수산 6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6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2유형과 6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재정수반요인은 일반공공행정 11유형과 12유형, 국방 12유형, 교육 12유형, 문화 및 관광 8유형과 12유형, 환경 4유형, 5유형, 12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8유형과 12유형, 농림수산 12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유형과 12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12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9유형과 12유형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사유는 일반공공행정 3유형과 5유형, 국방 5유형, 교육 3유형과 5유형, 환경 4유형과 5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3유형, 4유형, 5유형, 농림수산 4유형과 5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5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2유형과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표 51] 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부업무기능	법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1	일반공공행정	1(2), 2(7), 3(35), 4(8), 5(7), 6(59)	1(5), 2(3), 3(6), 4(1), 5(1), 6(2), 7(7), 8(3), 9(7), 10(1), 11(23), 12(59)	1(7), 2(19), 3(25), 4(8), 5(59)
2	공공질서 및 안전	1(1), 3(1), 6(2)	5(1), 7(1), 12(2)	3(1), 4(1), 5(2)
3	통일·외교	1(4), 3(1), 6(5)	3(1), 5(1), 7(2), 11(1), 12(5)	1(4), 3(1), 5(5)
4	국방	2(1), 3(1), 4(2), 5(6), 6(10)	1(2), 4(2), 6(1), 8(2), 9(2), 11(1), 12(10)	1(1), 2(4), 3(1), 4(4), 5(10)
5	교육	1(8), 2(7), 3(9), 4(8), 5(3), 6(35)	1(1), 2(5), 3(4), 4(1), 5(1), 7(7), 8(9), 9(1), 11(6), 12(35)	1(5), 2(9), 3(16), 4(5), 5(35)
6	문화 및 관광	1(3), 2(10), 3(3), 4(15), 5(5), 6(36)	1(1), 2(2), 5(1), 6(2), 7(4), 8(13), 9(1), 10(4), 11(8), 12(36)	1(3), 2(22), 3(1), 4(10), 5(36)
7	환경	1(11), 2(7), 3(11), 4(20), 5(5), 6(54)	1(2), 2(7), 3(3), 4(10), 5(10), 6(1), 7(5), 8(8), 9(4), 10(2), 11(2), 12(54)	1(5), 2(13), 3(14), 4(22), 5(54)
8	사회복지	1(15), 2(13), 3(14), 4(36), 5(12), 6(90)	1(11), 2(12), 4(10), 5(10), 6(4), 7(5), 8(18), 9(3), 10(5), 11(12), 12(90)	1(13), 2(29), 3(9), 4(39), 5(90)
9	보건			
10	농림수산	1(6), 2(6), 3(8), 4(7), 5(8), 6(35)	2(1), 3(5), 4(2), 5(1), 6(5), 7(3), 8(4), 9(2), 10(8), 11(4), 12(35)	1(3), 2(6), 3(3), 4(23), 5(3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8), 2(14), 3(14), 4(6), 5(8), 6(60)	1(3), 2(1), 4(2), 5(5), 6(4), 7(9), 8(4), 9(8), 10(2), 11(22), 12(60)	1(18), 2(19), 3(4), 4(19), 5(60)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2(6), 3(3), 4(7), 5(2), 6(18)	2(1), 3(3), 5(2), 6(1), 7(6), 8(3), 11(2), 12(18)	1(3), 2(6), 3(4), 4(5), 5(18)
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1), 2(33), 3(6), 4(8), 5(8), 6(66)	1(10), 2(3), 3(3), 4(6), 5(4), 6(1), 7(1), 8(1), 9(20), 10(2), 11(15), 12(66)	1(17), 2(22), 3(9), 4(18), 5(66)
16	예비비			

제 6 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제 1 절 토픽 유형을 통한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1. 정책수단별 정합성 분석 결과

□ 정책수단별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위원회 설치, ②행정기관 설치, ③공공기관 설립, ④계획수립, ⑤실태조사, ⑥시스템 구축·운영, ⑦지원사업, ⑧회계기금 설치, ⑨배·보상, ⑩특례
- 분석 결과, 의안명과 법안명 정책수단별 분류 유형과 매칭되고 있음
- 하지만, 협의회 설립, 기타 등과의 매칭 유형은 찾아볼 수 없었음
- 정책수단별 분류의 경우 의안명 및 법안명에 대해서는 협의회 설립, 기타 유형 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52]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대상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비용추계T/F	의안명	법안명
1	위원회 설치	1	2
2	행정기관 설치	5	3
3	공공기관 설립	1, 5	3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5	7
6	실태조사	1	4
7	시스템 구축·운영	3, 4	
8	지원사업	1, 4	1, 4, 6
9	회계기금설치	5	3
10	배·보상	3	6, 7
11	특례	3	3
12	기타		

□ 정책수단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위원회 설치, ②행정기관 설치, ③공공기관 설립, ④협의회 설립,
 - ⑤계획수립, ⑥실태조사, ⑦시스템 구축·운영, ⑧지원사업, ⑨회계기금 설치,
 - ⑩배·보상, ⑪특례
- 분석 결과, 의안은 명칭, 결과, 산식을 통해 대부분의 유형이 매칭됨을 확인하였으며, 법안 또한 명칭, 결과, 산식 토픽이 비용추계 유형과 매칭됨을 확인함
- 각 분류에 매칭되는 유형 중 일부 중복되는 값이 있으나, 이는 정책수단 유형을 포괄하며, 해당 토픽 유형에 대한 재분류를 통해 정책수단별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표 53]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비용추계T/F	의안			법안		
		명칭	결과	산식	명칭	결과	산식
1	위원회 설치	1, 4	4, 5	1, 3	3	7	3
2	행정기관 설치	4	4, 5		3	5, 7	
3	공공기관 설립	4, 5	4	3	1		3
4	협(의)회 설립		4	3		3	2
5	계획수립	3	4, 5	1, 2, 3	3	4, 7	3
6	실태조사	3	4, 5	1, 3, 4	1	4, 7	1, 3
7	시스템 구축·운영		4	2, 3	2	3, 7	2
8	지원사업	1, 3	4	3	1, 4	5, 7	1, 3, 4
9	회계기금설치		2, 4	1, 3	2	5	3
10	배·보상	2	5		3		1, 4
11	특례	2, 4	2, 3	2, 4	4	5	
12	기타						

□ 정책수단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위원회 설치, ②행정기관 설치, ③공공기관 설립, ④계획수립, ⑤실태조사, ⑥시스템 구축·운영, ⑦지원사업, ⑧회계기금 설치, ⑨배·보상, ⑩특례
- 분석 결과, 의안의 경우 명칭은 지원사업, 특례 등 2가지 유형과의 매칭만 진행되었으나, 요인 및 사유의 경우 협의회 설립,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과 매칭되는 등 포괄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법안의 경우 명칭은 지원사업과 배·보상에 대한 매칭만 진행되었으나, 요인과 사유로 나아갈수록 많은 영역을 포괄함을 알 수 있었음
- 비용추계 대상과 마찬가지로 각 분류에 매칭되는 유형 중 일부 중복되는 값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정책수단 유형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첨부3호 유형 요인 및 사유에 대한 정책수단별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미첨부3호 대상은 정책수단별 분류 중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유형 분류 접근방식이 필요함

[표 54]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비용추계T/F	의안			법안		
		명칭	요인	사유	명칭	요인	사유
1	위원회 설치		1, 5	1, 3		7	2, 4
2	행정기관 설치		2	5		7	3
3	공공기관 설립		5	3, 5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2, 4	3, 5		11	2, 3
6	실태조사		1, 2	3, 5		11	2, 4
7	시스템 구축·운영		2, 5	3, 4			2, 3
8	지원사업	2, 7	1, 2, 4, 5	4, 5	2	8, 11	2, 4
9	회계기금설치		4	3			2, 4
10	배·보상		1, 5	4	4		4
11	특례	5	3, 5	5			1, 2, 4
12	기타						

2. 정부업무기능별 정합성 분석 결과

□ 정부업무기능별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일반공공행정, ②공공질서 및 안전, ③통일·외교, ④국방, ⑤교육,
 - ⑥문화 및 관광, ⑦환경, ⑧사회복지, ⑨보건, ⑩농림수산, ⑪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⑫교통 및 물류, ⑬통신, ⑭과학기술, ⑮국토 및 지역개발
- 분석 결과, 의안명, 법안명에서 대부분의 정부업무기능별 분류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정 토픽 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에 토픽으로 구성됨을 확인하는 등 정부업무기능별 분류는 의안명 분류와 정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함

[표 55]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대상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부업무기능	의안명	법안명
1	일반공공행정	1, 3	5, 6
2	공공질서 및 안전	4	7
3	통일·외교	2, 4	4, 5
4	국방	4	4
5	교육	3, 5	2, 3
6	문화 및 관광	1, 4	2, 4
7	환경	1, 2, 3, 4, 5	4, 6, 7
8	사회복지	3, 4	2, 6, 7
9	보건		
10	농림수산	4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	1, 4
12	교통 및 물류	1	
13	통신	1	7
14	과학기술		
15	국토 및 지역개발	3, 5	3, 7
16	예비비		

□ 정부업무기능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일반공공행정, ②공공질서 및 안전, ③통일·외교, ④국방, ⑤교육, ⑥문화 및 관광, ⑦환경, ⑧사회복지, ⑨보건, ⑩농림수산, ⑪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⑫통신, ⑬과학기술, ⑭국토 및 지역개발
- 분석 결과, 의안은 명칭, 결과, 산식 모두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식의 경우 전체 유형이 3, 5유형으로 통일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업무기능별 분류와 연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법안의 경우 명칭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결과, 산식으로 나아갈수록 포괄하는 영역이 좁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업무기능별 분류가 비용추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될수록 근거한 유형 분류와의 정합성이 낮아짐을 추측할 수 있음

[표 56]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부업무기능	의안			법안		
		명칭	결과	산식	명칭	결과	산식
1	일반공공행정	4, 6, 7	4, 6	3, 5	4, 5	8	2, 5
2	공공질서 및 안전	7		3, 5	1, 5		
3	통일·외교	7		3, 5	3, 5		
4	국방	2, 7	1, 6	3, 5	4, 5	8	5
5	교육	7	4, 6	3, 5	1, 5	3, 8	5
6	문화 및 관광	7	6	3, 5	5	7, 8	3, 5
7	환경	1, 2, 7	4, 6	3, 5	3, 4, 5		2, 5
8	사회복지	5, 7	6	3, 5	2, 5	5, 8	1, 3, 5
9	보건						
10	농림수산	7	4, 6	3, 5	3, 5	7, 8	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	5, 6	3, 5	3, 4, 5	8	5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7	5, 6	3, 5	3, 5	8	3, 5
14	과학기술						
15	국토 및 지역개발	3, 6, 7	4, 5, 6	3, 5	2, 3, 4	8	3, 5
16	예비비						

□ 정부업무기능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일반공공행정, ②통일·외교, ③국방, ④교육, ⑤문화 및 관광, ⑥환경, ⑦사회복지, ⑧보건, ⑨농림수산, ⑩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⑪통신, ⑫과학기술, ⑬국토 및 지역개발
- 분석 결과, 의안과 법안 모두 명칭, 요인, 사유 등에서 전반적인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유형과 매칭됨을 확인하였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예비비 유형은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7]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No	정부업무기능	의안			법안		
		명칭	요인	사유	명칭	요인	사유
1	일반공공행정	5, 8, 9	2, 6	1, 6	3, 6	11, 12	3, 5
2	공공질서 및 안전						
3	통일·외교			5, 6			
4	국방	9	6	6	6	12	5
5	교육		5, 6	3, 6		12	3, 5
6	문화 및 관광	2, 9	2, 6	5, 6	4, 6	8, 12	
7	환경	2, 9	1, 6	6	4, 6	4, 5, 12	4, 5
8	사회복지	9	4, 5, 6	4, 6	4, 6	8, 12	3, 4, 5
9	보건						
10	농림수산	1, 9	6	6	6	12	4, 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 9	1, 4, 6	5, 6		11, 12	5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9	6	6	6	12	5
14	과학기술						
15	국토 및 지역개발	7, 8, 9	2, 6	3, 5, 6	2, 6	9, 12	2, 5
16	예비비						

3. 토픽 유형을 통한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결과

- 분석 결과, 정책수단별 토픽 연계 유형은 등장하였으나, 정부업무기능별 유형의 경우, 동일 유형 내 의안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
- 정책수단별 분류는 의안 수행 방안에 관한 내용이 비용추계 결과와 산식, 재정수반요인과 미첨부사유 등 관련 키워드가 구체적 기술을 통해 등장하는 등 내용 근거 유형 분류에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수단 및 비용추계 대상 토픽 비교를 통해 다음 시사점을 도출함
 - 첫 번째, ‘①위원회 설치, ②행정기관 설치, ③공공기관 설립, ④협의회 설립’ 키워드의 동시 빈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위원회 설치, 협의회 설립’ 유형을 ‘위원회/협의회 설치/설립’으로, ‘행정기관 설치, 공공기관 설립’ 유형을 ‘공공/행정기관 설치/설립’으로 통합하였음
 - 두 번째, ‘⑤계획수립, ⑥실태조사’ 등은 동시 빈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추계 결과와 산식’, ‘재정수반요인과 미첨부사유’ 등 목적-수단의 관계로 연계되어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로 통합하였음
- 정책수단 및 미첨부3호 대상 토픽 비교를 통해 다음 시사점을 도출함
 - 첫 번째, 정책수단별 분류 중 지원사업 유형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함
 - 두 번째, 지원사업의 재정수반요인은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②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③산업지원, ④소득세 감면 및 세액공제, ⑤대통령령으로 인한 지원 발생, ⑥재난 및 안전 관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음
 - 세 번째, 지원사업 미첨부사유는 ①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②추상적인 대상의 기준 및 범위, ③추계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정책수단 및 미첨부3호 대상 토픽 비교를 통해 다음 시사점을 도출함
 - 비용추계 및 미첨부3호 분류 유형 모두 기술 정도가 구체적일수록 정책수단별 유형 포괄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용추계의 경우 협의회 설립, 시스템 구축·운영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수단별 분류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위원회와 협의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등 유형이 추계결과 및 산식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미첨부3호의 경우 지원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유형 중 공공기관 설립, 협의회 설립 유형 분포가 지나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음
- 정합성 비교·분석 결과, 비용추계는 일부 유형의 통합 후 적용이 가능하며, 미첨부3호는 지원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재분류 진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표 58] 비용추계 및 미첨부3호 대상 토픽 비교·분석 결과

	비용추계	미첨부3호
공통점	기술 정도가 구체적일수록 정책 수단별 분류 유형 포괄범위 확대	
특징	(위원회, 협의회), (행정기관, 공공기관), (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의 유형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음	지원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높은 분포도	위원회 설치, 행정기관 설치, 공공기관 설립,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특례	지원사업
낮은 분포도	협의회 설립, 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 설립, 협의회 설립
적용 방향	일부 유형 통합 후 적용 진행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재분류 진행

□ 위 과정을 진행한 결과,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는 다음과 같음

[표 59] 토픽 유형을 통한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결과

정책수단별 분류	비용추계 특성 분류	미첨부3호 특성 분류
①위원회 설치	①위원회/협의회 설치 및 설립	①시설의 설치·운영
④협의회 설립		
②행정기관 설치	②행정/공공기관 설치 및 설립	
③공공기관 설립		
⑤계획수립	③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⑥실태조사		
⑦시스템 구축·운영	④시스템 구축·운영	
⑧지원사업	⑤지원사업	미첨부사유 3요소 - 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 대상 기준 및 범위의 모호함 - 추계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
⑨회계기금 설치	⑥회계기금 설치	
⑩배·보상	⑦배·보상	
⑪특례	⑧특례	②산업지원 ③소득세 감면 ④세액공제
⑫기타	⑨기타	

제 2 절 유형별 의안 비용추계 방법론 적용 전략

- 분석 결과, 기존 의안 비용추계 유형 분류는 추계를 의뢰한 위원회에 따른 분류 방식인 정부업무기능별 분류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으나, 비용추계서와 미첨부 사유서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은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업무기능별 분류는 의안명 혹은 목적을 분류하기 위한 1차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비용추계 결과, 산식, 재정수반요인과 미첨부사유 등 구체적인 기술 단계로 갈수록 정책수단별 분류 유형의 적합도가 높아지며, 매칭된 동일 유형 내 의안 간의 유사한 키워드 및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함
- 의안명칭과 위원회별 분류는 의뢰한 의안의 대상 및 목적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 및 방법인 수단은 2개 이상이 포함되어 작성되는 등 정책수단 별 재분류를 진행한 뒤 비용추계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미첨부3호의 경우 지원사업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분류 진행 결과 재정수반요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의 설치 운영, 산업지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인한 지원, 재난 및 안전 관리 등으로 나타나 토 픽 모델링이 아닌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
- 미첨부3호의 지원사업 미첨부사유는 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추상적인 추계대상의 기준 및 범위, 추계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남
- 비용추계과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추계요구서 실질적 내용에 근거한 분류가 필요하며, 정책수단별 분류가 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단기 방안은 추계요구서를 통한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 방안임
- 비용추계서와 미첨부3호 모두 비용추계 결과와 산식, 재정수반요인 및 미첨부 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술될수록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 포괄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비용추계요구서는 ①의안명, ②제안취지, ③의안원문 등을 작성 및 첨부하고 있으나, 추가로 정책수단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등, 효율적 추계를 위해 요구 접수 초기 목적, 대상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정책수단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비용추계요구서에 예상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체크박스를 추가해야 하며, 필요시 선택한 정책수단의 규모를 작성할 수 있게 수정한다면, 추계담당관은 규모와 수단의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원활한 추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됨
- 추가로 발의자가 의안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추려 기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의안명칭을 통해 대상과 목적을 파악할 수 있으나, 요구서를 통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결과 동일 유형에 속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동일 유형의 정책수단들을 선택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구자가 생각하는 핵심 요인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핵심 키워드 작성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비용추계 DB 시스템 운영을 진행해야 함
- 비용추계서 유형화 및 효율화의 핵심은 적합 분류 체계의 발굴임
-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추계 내용은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와 좀 더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해당 분류 체계에 근거한 DB 분류를 진행해야 함
- 정책 수단별 유형 분류 가능성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도화가 진행된다면 기존 정부업무기능별 유형과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 등을 통한 기존 추계 DB와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주요 결과

- 본 연구는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를 통한 효율화 향상을 위한 선행요건인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석을 진행함
- 정보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 기존 사례인 미국 CBO의 의안-비용추계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으며, 유형화 분석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음
- 비용추계 특성 분석을 위해 법안을 대상으로 비용추계 여부(비용추계 대상/미첨부3호) 등 현황을 고려하여, 명칭, 비용추계 진행 시 결과와 산식, 미첨부3호 시 재정수반요인과 미첨부사유 등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음
- 세수는 특례가 많아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LDA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고려할 수 있는 총 유형에 대한 토픽 유형들이 추출되었으며, 도출된 유형들과 정부업무기능 및 정책수단별 분류와 비교·분석을 진행한 뒤 매칭여부를 통해 유형 분류의 정합성 여부를 파악하였음
- 분석 결과, 명칭에 대해서는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정합성이 높았으나, 비용추계 결과,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추계산식 등 구체적 기술 단계로 갈수록 정책수단별 분류 유형의 포괄도가 높아지는 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업무기능별 분류의 경우 유형 간의 매칭이 진행되더라도, 동일 유형 내 의안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음
- 이는 의안명은 목표 및 대상을 반영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및 방법은 정책수단을 통해 작성되는 등 목표-수단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기존 비용추계요구서는 법안명, 제안 취지, 의안 원문 등을 작성 및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방식에 해당되며, 정책수단별 분류 방식에 근거한 비용추계 DB 체계화가 진행되어야 함

- 미첨부3호는 지원사업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분류 진행 결과 재정 수반요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의 설치 운영, 산업지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인한 지원, 재난 및 안전 관리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
- 비용추계 대상 의안은 비용추계요구서를 정책수단 별 분류 유형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각 부처의 수립계획 참고, 기존 추계사례 적용, 추정 시나리오 기법 적용 등 원활한 추계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함
- 반면, 미첨부3호의 지원사업 미첨부사유는 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추상적인 추계대상의 기준 및 범위, 추계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이 나타났으며, 비용추계요구서 작성 시 추계대상에 대한 구체적 작성 방안이 필요함

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 비용추계정보 특성 분석 결과, 실질적인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은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기존 비용추계 방식은 요구서의 의안명, 취지, 원문을 분석한 뒤, 발의자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검토한 뒤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의뢰서는 목적 및 대상은 분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등 수단은 파악하기 어려워, 의안-비용추계 정보 간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방안으로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시 해당되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 도입 방안, 의뢰자가 생각하는 정책수단의 종류 및 규모 작성 진행, 의안을 대표할 수 있는 4~5개의 핵심 키워드 작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장기 방안으로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를 통한 비용추계 DB 체계화 및 고도화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정부업무기능별 유형과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추계 DB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가장 선행요인으로 추계결과 및 미첨부사유서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에 가장 근접한 체계인 정책수단에 근거하여 유형 분류를 진행해야 함

참고 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2004. 8.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2006. 12.
- 국회예산정책처.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성과보고서. 2008.
- 국회예산정책처. 2008 연차보고서. 2009. 3.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2012. 3.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지출편. 2012. 4.
- 국회예산정책처. 미국의회예산처. 2012. 7.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2012. 9.
- 국회예산정책처. 출장결과 보고 [미국 CBO]. 2014. 12.
- 권태일.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델파이기법과 AHP를 이용하여. 세종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8.
- 김영아. 선진입법입문서. 2009.
-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2012. 7.
- 김춘순.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의회학회·국회예산정책처 공동포럼 주제발표논문. 2012. 5.
- 남궁근. 정책학. 제4판. 2021.
- 박균성. 유럽연합과 프랑스에서의 입법영향평가. 유럽헌법연구, 2. 2007. 6.
- 박영도·장병일.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 한국법제연구원. 2007. 2.
-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III), 한국법제연구원. 2006. 2.
- 박재용. 지방자치단체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비용추계 금액과 예산편성금액 차이를 통해. 예산정책연구. 2017. 4.
- 손봉숙. 국회개혁의 핵심과제. 2005.
- 신헌태. 비용추계 유형화 논의. 제3차 회의.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업무개선 TF 발표자료. 2022.
- 신해룡·이남수. 예산부수법안의 법안비용추계에 관한 연구. 2000.
- 오현환.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경제성원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
- 이상경. 재정건전성 확보의 헌법 및 법제적 접근 방안-미국의 법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강원 법학, 50. 2017.
- 이영환·신영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6(3). 2009.
- 이우영.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학, 52(4). 2011.
- 이진국.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2009.
- 이정은. 입법의 재정위험과 제도적 대응.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23
- 임동완·윤주철.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2009. 4.
- 임명현.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2.
- 임명현.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예산현안분석. 2005.
- 임명현.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방안. 법제논단. 2005
- 윤주철. 비용추계 현황과 제도개선.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23
- 윤주철.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대 국회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2022.12
- 전주열 외. 외국의 비용추계 제도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2017. 12.
- 정문중. 비용추계의 법안 심사에 대한 영향 분석. 예산현안분석, 제28호. 2009. 9.
- 정영진.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의회학회. 2012. 12.
- 조근태·조용곤·강현수.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원출판사. 2005.

- 채수근. 의원입법과 법률안 비용추계. 행정법연구. 2005. 6.
- 최윤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연구보고서. 2005. 6.
-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서울: 다산출판사. 2010. 8.
- Blei.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2012. 4.
- Powerll et al. Comparative Politics Today. Pearson. 2015. 1.